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2002. 3. 31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태(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발 간 사

경제환경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세계화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 자본에 대한 과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세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본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시켜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자국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고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하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과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그 동안 법인세제와 관련하여 많은 개편 노력이 있어 왔다. 법인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려는 노력도 있었으며, 법인세와 관련한 감면제도도 많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은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서로 상충되는 여건 속에서 특정한 세제에 대한 세제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책의 순위를 설정하고 세계화·정보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수립이 중요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자본과 고급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 국가 국제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현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법인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개편에 관한 논의는 세제개편의 타당성에 관한 논리의 전개를 토대로 한 정성적인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계층별 소득분배와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효과, 자본 및 노동의 수요,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가능 일반균형(Kore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KOCGE)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인하가 25개 산업의 생산 및 국민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정량적인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시도하고 있다.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최초의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구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인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작년도 재정학자 사이에서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커다란 논쟁

거리로 등장한 우리나라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국민후생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원인 기업과 가계의 체력을 보강한 후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부채를 축소하고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본명제하에서 본 연구결과가 향후 법인세제를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를 수행한 청주대학교의 김성태 교수, 성균관대학교의 안종범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인실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정리에 많은 수고를 한 이한상 연구조교, 그리고 권수정 연구조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제 목 차 례>

I.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법인세의 본질	2
1.3. 연구방법론	4
1.4. 법인세 관련 국내외 연구	6
1.5. 보고서의 구성	8
II.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9
2.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9
2.2.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과 법인세 폐지 논의	1
2.3. 최근 독일의 법인세 개혁	1
2.4. 국제 조세 경쟁	91
III.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천 과정 및 개편 배경	2
3.1. 한국의 법인세제도 변천과정	2
3.2.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3
1.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23
2.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부담	29
3.3. 한국의 법인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3
3.4. 2001년 세계개편안 평가	7
3.5. 법인세 폐지 논의의 근거 및 현실적 제약	3
1.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	38
2. 법인세 폐지의 현실적 문제점	41
3.6. 법인세와 자본소득과의 관계	4
IV. 한국 응용일반균형(KOCGE) 모형	64
4.1. KOCGE(한국 계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개요	4

4.2. 모형	47
1. 모형의 구성	47
2. 생산부문	48
3. 가계부문	52
4. 정부부문	54
4.3. 모형의 균형	55
1. 재화시장 균형조건	56
2. 요소시장 균형조건	57
4.4. 모형의 균형 도출	75
4.5. 자료 및 기준측정	85
1. 생산부문 중간재 생산과 부가가치에 관한 자료	58
2.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거래 자료	63
3. 생산재와 소비재의 변환행렬: Z 행렬	64
4. 가계소득, 지출, 투자 및 기타 자료	64
5. 조세회피율 자료	70
4.6. KOCGE 모형의 기준측정과 균형 값의 도출	7
4.7. KOCGE 모형에서 사용한 알고리즘(algorithm) 및 프로그램	7

V.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1. 법인세 개편 방안	37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	73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	74
3.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77
4. 산업별 법인세 세율 동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80
5.2. 개별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	8
1. 법인세 개편에 의한 후생변화 측정	81
2.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득분배효과의 측정	82
3. 법인세 개편이 노동의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82
4. 법인세 개편이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83
5. 기타 법인세 개편이 생산요소소득에 미치는 효과	83
5.3. 모의실험 결과	38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의 모의실험 결과	83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의 모의실험 결과	86
3.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방안의 모의실험 결과	90
4.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종합	96
5.4. 법인세의 귀착	0

VI.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2
6.1. 법인세 개편 파급효과 분석의 중요성	101
6.2.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결과를 통한 정책시사점	101
6.3. 법인세 개편의 과제	103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104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105
3. 준조세 정비	105
4. 법인세율 인하와 이중과세조정	105
5.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106
6.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107
7.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107
6.4. 결론	108
VII. 맺음말	109
참고문헌	111
부록 A: KOCGE 방정식 체계	115
부록 B: 법인세 세율과 세후 자본가격의 관계	121

<표차례>

<표 2-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9
<표 2-2>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구간과 세율	10
<표 2-3> OECD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12
<표 2-4>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14
<표 2-5>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계획	14
<표 2-6> 독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인하 내용	15
<표 2-7>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7
<표 2-8>	20
<표 3-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24
<표 3-2>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화	25
<표 3-3> 법인세 징수 실적 추이	26
<표 3-4> 예산액 대비 조세수입 실적	27
<표 3-5> 주요관련지표 대비 법인세 징수실적	28
<표 3-6> GDP 및 총세입 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 (1998년 기준)	29
<표 3-7> 제조업 부문 주요 경영분석지표 추이	30
<표 3-8> 한계 유효세율의 가중평균	32
<표 3-9> 제조업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	33
<표 3-10> 자본이득세율의 국제비교	33
<표 3-11> 자본소득과세 과세방법의 국제비교	34
<표 3-12> 이중과세제도의 국제비교	36
<표 4-1> 26개 산업 분류	58
<표 4-2> 산업별 법인부문 대 비법인부문의 비중	59
<표 4-3> 산업별 자본소득의 구성	61
<표 4-4> 산업별 법인부문 자본소득의 구성요인	62
<표 4-5> 산업별 법인세세수 및 유효 법인세율	63
<표 4-6> 소득계층별 소득세 납부액(1993년)	67
<표 4-7>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득세(1993년)	68
<표 4-8> 소득계층별 가계소득의 처분(1993년)	69
<표 4-9> 산업별 비법인부문의 부가가치세 탈루율(a_{vi})	70
<표 4-10> 소득계층별 개인소득세 회피율	71
<표 5-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A)의 소득분배효과	84
<표 5-2>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84
<표 5-3>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85
<표 5-4>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의 후생효과	86

<표 5-5>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의 소득분배효과	87
<표 5-6>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88
<표 5-7> 방안 B와 방안 C의 소득계층별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88
<표 5-8>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89
<표 5-9>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	90
<표 5-10>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D, E)의 후생효과	91
<표 5-11>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D, E)의 소득분배효과	92
<표 5-12>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D, E)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93
<표 5-13> 방안 D와 방안 E가 소득계층별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94
<표 5-14>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D, E)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94
<표 5-15>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	95
<표 5-16>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의 세수에 미치는 효과	96
<표 5-17>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종합	96
<표 5-18> 법인세 개편 방안의 후생효과: 보상변화(CV)를 중심으로	97
<표 5-19> 법인세 개편 방안의 소득분배효과: Gini계수를 중심으로	98
<표 6-1> 결손금 공제제도 국제비교	107

<그림차례>

<그림 2-1> OECD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11
<그림 3-1>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 추이	31
<그림 3-2> 결정세액기준 유효세율추이	31
<그림 4-1> 모형의 소비 및 생산구조	52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상황변화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조세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제도 역시 경제·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및 정보·기술의 급격한 진전과 이로 인한 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출증대, 대북 지원 및 통일 관련 재정수요 증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세제는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체계가 복잡한 편이며 최고세율 등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세제 개혁에 대한 관심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되었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된 점이 없지 않다는 차원에서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여전히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세제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추세와는 거리가 멀다.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건전재정 확립 문제와 더불어 조세제도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는 세계화의 급진전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세계화는 주요 국가들의 자본에 대한 과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유발시키고 있다. 자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국제 조세경쟁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본의 수익(return)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시켜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각 나라마다 조세제도 개편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그 동안 법인세제와 관련하여 많은 개편 노력이 있어왔다. 법인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려는 노력도 있었으며 법인세와 관련한 감

면제도도 많이 정비되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되고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 전반적인 개편은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서로 상충되는 여건 속에서 특정한 세제에 대한 세제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¹⁾ 그러나 정책의 순위를 설정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수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가 국제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법인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세계화와 더불어 각국 조세정책의 초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최근 각국 조세개혁의 중심적 과제가 자본소득세이며 자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001년 미국의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언론의 관심을 모았고 우리나라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법인세의 폐지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본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어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원인 기업과 가계의 체력을 보강한 후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 부채를 축소하고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 하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1.2. 법인세의 본질

본 연구의 대상인 법인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법인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1) 우리 정부의 중장기 세계개편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이다. 2002년 재경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의 여건은 '복지지출 증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 및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세계시장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은 유리한 투자 및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각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외국보다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국가간 조세정책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낮은 세율 등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독자적으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는 소득세의 선납액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법인이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소득세와는 다른 종류의 독립적인 조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인세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소득세를 과세하고 남은 세후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었을 때에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해당하느냐 하는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법인이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자연인 또는 재산과는 별개의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즉, 법인의 본질에 대해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의 두 가지 견해로 나누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의 실제적인 구성원인 주주와 분리해 하나의 또 다른 법인격체(legal entity)이다. 따라서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법인의제설은 법인을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완전히 분리·독립된 법적 실체로 보는 것은 법적 사고의 편의적 허구(fiction)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corporate profit tax)를 부과하고 또 다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세(dividend tax)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법학에서는 법인실제설과 법인의제설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와 과세의 공정성 문제로 귀결된다. 경제적 실체의 관점에서 볼 때 오직 자연인만이 세금을 부담한다.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법인 그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 고객 또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거두어 납부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하지만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학자 사이에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부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합당하는 개념의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분적 통합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법률상으로 인격이 부여된 권리 및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원

천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과 더불어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우선 법인 중에는 개인기업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서 대규모법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소규모 법인은 자연인이 법인형태를 빌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로 볼 수 있어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반면에 대규모법인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고 주주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법인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채권자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논리이며 이 경우 이중과세가 아니라 독립과세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욱이 주식회사형태의 법인이 가장 큰 특징이 법제도에 의해 보호된 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기에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자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에 관해 재인식되어야 할 점은 법인세가 세수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또한 법인세에 있는 감면조항과 법인소득 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의 특혜조치나 사내유보이윤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해 정부는 유망산업 지원과 같은 각종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유용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3. 연구방법론

법인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법인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효율성 분석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형평성 분석 및 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및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분야 중 첫 번째는 법인세의 효율성 분석은 여타 조세의 효율성 분석과 같이 법인세에 의한 국민경제 총 후생의 감소분을 측정하는 법인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인세의 형평성 분석은 법인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 법인세의 실질부담이 경제주체간이나 경제부문별로 여하히 배분되는 가를 분석하는 법인세의 귀착(incidence)이라 한다. 법인세의 귀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²⁾

전통적으로 학계에서는 법인세의 귀착(incidence of corporation tax)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법인세의 귀착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는 이유는 소득분배에 상

2) ① 특히 법인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생산자, 소비자 및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여하히 배분되는가를 분석하는 것, ② 노동과 자본에 대한 기능적 분배, ③ 법인세 실질부담의 계층별(개인별) 분배(personal distribution): 법인세가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④ 기타 법인세의 지역별 귀착(regional incidence), 세대간 귀착(intergenerational incidence): 법인세가 개별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거나, 서로 다른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당히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도 큰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전체 후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법인세 귀착에 대한 분석은 크게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과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의 두 유형이 있다. 부분균형분석은 특정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가 생산요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고 분석가의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 경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한편 일반균형분석은 특정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단지 분석이 복잡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전산을 이용한 계산능력의 제고와 분석기법의 발달로 법인세 귀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일반균형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가장 유력한 분석방법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상하고 있는 것은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또는 응용일반균형모형(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다. 응용일반균형모형에 기초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매우 유력한 분석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GE 모형은 특정 경제를 가장 현실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조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채널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 부분균형분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일반균형모형이 적절하다. 셋째, 특히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나, 산업별 생산효과, 자본과 노동의 수요 및 시장균형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법인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세계개편의 타당성에 관한 논리의 전개를 토대로 한 다분히 定性的인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정성적 분석을 통한 세계개편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세율의 설정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 정교한 세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산업생산 및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후생 효과(welfare effect)를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방법에 의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김성태 외(1999a, 1999b)에 의해 개발된 한국계산가능일반균형(KOCGE: Kore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 모형에 의해 설정된 26개 산업의 생산 및 10개 소득계층에 법인세율의 변화로 인한 세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며 이들의 후생에 어느 정

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국제 조세경쟁과 선진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주요 국가의 법인세제도의 개편과 국제 조세경쟁의 동향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21세기 국제경제 환경에 맞는 최적의 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1.4. 법인세 관련 국내외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가장 선도적인 연구는 1962년 Harberger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Harberger(1962)는 가장 단순한 2개 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였다. 폐쇄경제 하에서 주요 경제환경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값을 갖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는 거의 자본에 그 부담이 귀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법인세의 부담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동에도 전가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특히 폐쇄경제의 가정이 개방경제의 가정으로 대체되어 자본은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반면 토지와 노동은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의 부담이 노동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³⁾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하에서는 법인세의 부담이 소규모 자국의 노동에 전가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1962년 논문에서는 법인세가 자본에 귀착된다고 밝혔던 Harberger가 1995년 논문에서는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는 노동에 100% 이상 그 부담이 귀착된다는 것이다.

응용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으로 Ballard et. al.(1985)이 있다. 이 연구는 1973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미국의 각종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된 분석으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 문제, 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이 있다.

3) 대표적인 연구로는 Bradford(1978), Kotlikoff and Summers(1987), Mutti and Grubert(1985), Gravelle and Kotlikoff(1989), Harberger(1995) 등이 있다.

최근 법인세 귀착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일치되는 부분은 단기에는 자본이 이동성이 작으므로 법인세가 거의 자본에 귀착되는 반면, 장기에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법인세 부담이 노동 등 여타 부문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Fuchs, Krueger, and Poterba(1997)는 40개 대학교 경제학자들에 대해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자본은 법인세 전체 부담의 40%만 지게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자본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정도가 국가마다 불완전하고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Slemrod(1995b)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National Tax Association 회원의 50% 이상이 법인세의 부담이 비자본 생산요소에 전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uerbach and Slemrod(1997)는 현재 Harberger(1962)의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결론은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법인세 관련 국내 연구는 거의가 유효세율의 추정에 관한 것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예로서 노현섭·김태우(1996), 원윤희(1996), 유명훈(1993) 및 조계근(199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동구(1995), 이우택(1999)과 유시권(1997)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 세율 인하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안종석(1996)은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세율인하가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김유찬(1995)은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타 법인세 관련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명훈(1993)은 법인세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김종웅(1996)은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관하여 다루었고, 이준규(1997)와 이두기·김영락(1998)은 법인세의 형평성과 부담 측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곽태원(1994)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납세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최근 박기백·이명현(2000)은 법인세의 세수 추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박정우·이현선(1998)은 이론적·실증적 분석에 의해 법인세 및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한 국내투자의 유효세율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주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 법인세가 계층별 소득분배와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효과 및 자본 및 노동의 수요 및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응용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와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므로 학구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인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최근 주요국의 법인세제 개편논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 추이와 최근의 논의 동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IV장에서는 한국응용일반균형모형에 대하여 소개한다. V장에서는 법인세 개편방안을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한 뒤 각 법인세 개편방안이 국민경제의 후생, 소득분배, 노동의 공급, 저축 및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VI장에서는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며, VII장은 본고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마무리짓는다.

Ⅱ.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2.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 같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도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의 발달 및 경제의 세계화 등 급격하게 변하는 대외 및 대내적 조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조세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행정비용의 축소 및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및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조세개혁을 시행하였거나 중이다. 특히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주요국의 법인세와 소득세율 경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5월 '2002년 감세조정안' 하·상원 통과 ▶ 11년간 1조3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9.6%→33%)하고 소득공제를 확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월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51%→42%) ▶ 법인세율 인하(40/30%→25%)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2003년까지 1천2억프랑 규모의 세금감면 ▶ 법인세율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7%→33.3%)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50%→37%) 및 기준금액 하향 조정(3000만 엔→1800만엔) ▶ 법인세율 인하 (34.5%→30%)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05년까지 세금감면계획 시행 ▶ 2005년까지 소득세 규모15%, 금액으로는 580억달러의 세금감면 ▶ 소득세 과표에 '물가연동제' 도입 ▶ 법인세율(기술 등의 주요산업)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28%→21%)

이러한 세계각국의 세율인하경쟁은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의 추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7.7%에서 1997년 36.7%, 1998년

35.5%, 1999년 34.8%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독일은 40%인 법인세율을 25%로 경감한 바 있으며 캐나다는 28%의 법인세율을 21%로 경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는 현행 39%의 법인세율을 30%로 또는 35%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2 회계연도부터 현행 25.5%의 법인세율을 24.5%로 인하하기로 확정하였다. 포르투갈은 현행 32%인 법인세율을 2002년에 30%, 2003년에 28%로 각각 인하하기로 확정하였다. 덴마크는 32%였던 법인세율을 2001년 회계연도부터 30%로 인하하였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는 1999년 발효된 재정법(Finance Act 1999)에 따라 사업소득(trading income)에 대한 표준 법인세율을 24%에서 2001년부터는 20%로 인하하였다. 나아가 아일랜드는 2002년에는 동 법인세율을 16%, 2003년부터는 12.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소득세율도 인하하여 연간 IEP 50,000 (US\$ 60,000)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동 세율을 12.5%로 인상하는 대신 대상소득을 IEP 200,000 (US\$ 240,000)으로 크게 상향조정하였다.

<표 2-2>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구간과 세율

	법인세 과세구간	법인세율(%)
한국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미국	5만달러 미만	15
	5만달러 ~ 7만5천달러	25
	7만5천달러 ~ 10만달러	34
	10만달러 ~ 33만 5천달러	39
	33만5천달러 ~ 1천만달러	34
	1천만달러 ~ 1500만달러	35
	1500만달러 ~ 1822만 3333달러	38
	1822만 3333달러 이상	35
일본	자본금 1억엔 이하, 연간소득 8백만엔 이하	22
	그 외의 법인	30
영국		30
독일	유보소득	40(실효세율 42.2 ¹⁾)
	배당소득	30(실효세율31.65)
프랑스 ²⁾		33.33
대만	5만NT달러 이하	면제
	5만NT달러 초과 10만NT달러 이하	15
	10만NT달러 초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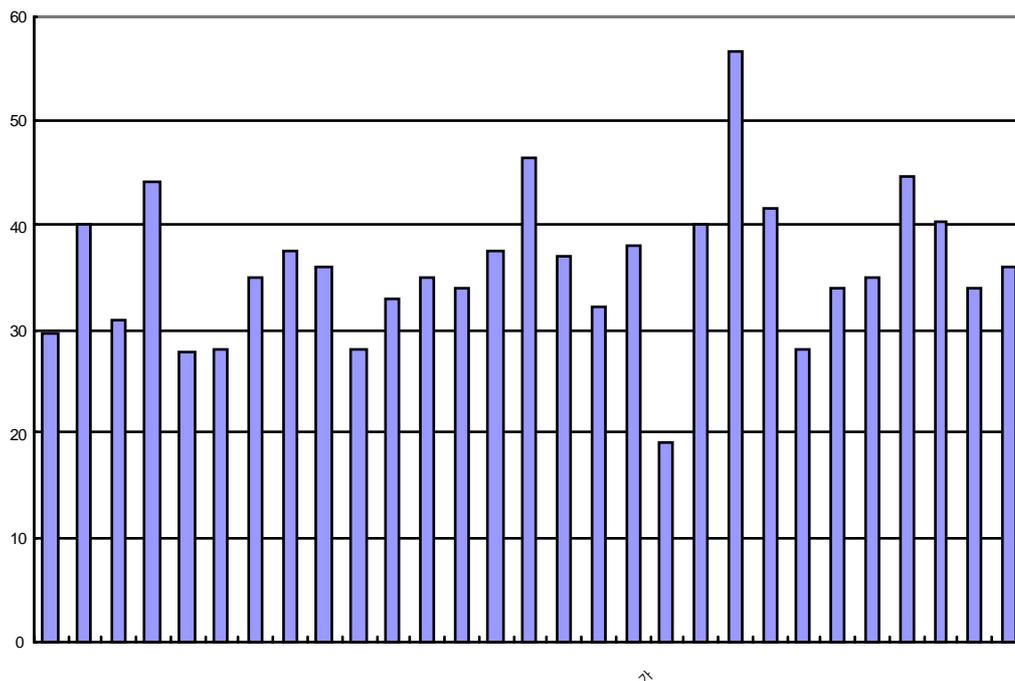
주: 1) 199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동 부가세율이 7.5%였음.

2) 매출액 5천프랑 초과법인은 15%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됨(1999년까지는 10%).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법인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보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며 개인의 배당소득은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2001년부터 재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요국의 세제개편의 방향이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경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뿐만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의 축소 등 과세 저변환경에 대한 변화추이를 감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림 2-1>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주: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한국은 2002년 기준이고 다른 국가는 1998년 기준임.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가 국가경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법인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 만큼 경기변동에 따르는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라 법인세수는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나 총조세대비 법인세비중을 시계열상으로 놓고 분석하는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예를 볼 때 일본의 OECD평균에 비해 법인세수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는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3> OECD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단위: %)

	총조세대비					GDP대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1970	13.2	8.7	5.7	26.3	8.7	3.5	3.2	1.9	5.3	2.4
1975	11.4	6.2	4.4	20.6	7.5	2.9	2.2	1.6	4.4	2.3
1980	10.8	8.4	5.5	21.8	7.7	2.8	3.0	2.1	5.6	2.7
1981	9.1	9.2	5.0	20.3	7.8	2.4	3.4	1.9	5.3	2.7
1982	7.4	9.7	5.1	19.8	7.8	2.0	3.8	1.9	5.2	2.8
1983	5.9	10.7	5.1	19.6	7.4	1.5	4.0	1.9	5.3	2.7
1984	7.6	11.5	5.4	21.1	7.9	1.9	4.3	2.0	5.7	2.8
1985	7.5	12.6	6.1	21.0	8.0	1.9	4.7	2.3	5.8	2.8
1986	7.4	10.6	6.0	20.7	7.8	1.9	4.0	2.3	5.8	2.9
1987	8.6	10.5	5.1	23.0	7.7	2.2	3.9	1.9	6.8	2.9
1988	8.9	10.9	5.3	24.7	7.8	2.3	4.0	2.0	7.4	2.9
1989	9.0	12.6	5.5	24.3	7.8	2.4	4.6	2.1	7.3	2.9
1990	7.7	11.6	4.8	21.6	7.9	2.0	4.2	1.8	6.6	2.8
1991	7.7	9.4	4.3	20.0	7.3	2.0	3.3	1.6	6.0	2.7
1992	7.6	7.7	4.0	17.3	6.8	2.0	2.7	1.5	4.9	2.8
1993	8.3	7.4	3.6	14.9	7.5	2.2	2.5	1.4	4.2	2.6
1994	9.0	8.0	2.9	14.8	7.6	2.4	2.7	1.1	4.0	2.8
1995	9.4	9.4	2.8	15.3	8.0	2.6	3.3	1.1	4.3	2.9
1996	9.6	10.7	3.8	16.4	8.3	2.6	3.7	1.4	4.6	3.0
1997	9.4	12.2	4.1	15.0	8.8	2.6	4.3	1.5	4.2	3.2
1998	9.0	10.9	4.4	13.7	8.9	2.5	4.1	1.6	3.7	3.3
1999	8.3	10.4	4.8	12.9	-	2.4	3.8	1.8	3.4	-
2000	-	9.8	4.8	12.8	-	-	3.7	1.8	3.5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2.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과 법인세 폐지 논의

1. 조세감면 정책

미국경제는 1970년 이후 1974년~75년, 1980년~82년, 1990년~91년 등 크게 세 번의 불경기를 경험하였다. 미국정부는 이 때마다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경제불황이 시작되었던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1974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2%에 달하였으며, 실업률 9%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16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 안을 제안하였고 의회는 이보다 많은 210억달러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감세정책과 일시적인 사회보장세 감세 등

은 개인들의 실질적인 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하반기부터 GNP성장률이 상승하였다.

두 번째 경제불황은 이란혁명으로 인하여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9년에 시작되었다. 1980년 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6%로 상승하였으며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물가상승률은 4%대로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이 11%대로 증가하는 경제불황을 겪게 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재정정책 보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선호하였으며 감세정책을 채택하여 개인에게 노동과 저축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기업에게도 감세를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총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레이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지만 본래의 목적인 총공급을 증가시키므로써 경기가 부양되었다기보다는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되고 이에 소비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경제학자들 사이에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레이건-부시 시절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 불황기였던 1990년대 클린턴 정부는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 위해 대폭적인 증세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노동력과 자본, 기술력의 개발에 비중을 두며 공급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경제는 '신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제4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정흑자의 사용이 선거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W.부시는 선거기간 중 핵심공약으로 전면적인 조세감면 정책(Across-the-Board Tax Cut)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부시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기본노선인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에 총액 1.6조달러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 GDP 대비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원을 감세정책비용으로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세 방식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아래의 <표 2-4>에서와 같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3.6%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 폭을 <표 2-5>에서와 같이 확대하며 자본이득세율도 인하하는 방식을 논의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논하

기 어려우나 부시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효과와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간접적 효과를 모두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총8,00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로 인해 개인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매년 0.2%의 GDP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4>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현행28%	현행31%	현행36%	현행39.6%
2001년~2003년	27%	30%	35%	38.6%
2004년~2005년	26%	29%	34%	37.6%
2006년 이후	25%	28%	33%	35%

<표 2-5>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계획

	현행	2001~2004	2005~2008	2009	2010~
자녀세액공제	500	600	700	800	1000

미국은 또한 상·하원의 최종합의 안에서는 최고 상속세율을 2002년에 50%로 낮추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45%까지 낮추기로 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2. 법인세 폐지 논의

최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에 의해 이 전부터 제기되어 온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의이다. 모든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두 번 과세를 금지하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주의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그 소득의 원천인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미국의 오닐(Paul O' Neill) 미국 재무부장관은 2001년 5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지(Financial Time)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소득세를 폐지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최고 세율이 35%인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개인소득세를 늘림으로써 보충한다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정책제안으로 주목

을 받았다. 법인세 폐지로 연간 2천억달러의 세금을 기업에 돌려주게 되면 기업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 및 자본의 미국진출이 붓물을 이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의 법인세 폐지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0년대 및 1970년대 경제학자들에 의한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1985년에는 미의회 예산처(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법인소득세 개편'(「Revising the Corporate Income Tax」)이란 보고서를 발간하고 1992년에 미국재무부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재무성보고서: 사업소득에 대한 한번의 과세' (「Report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n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 : Taxing Business Income Once」)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법인세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해 왔었다.

미국이 오랫동안 법인세폐지를 검토하였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도 거론되었지만 당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상태여서 구체화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흑자는 감세정책의 바탕이 되었으며 오늘 미재무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재정흑자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 장관의 발언이 외국언론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펴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미국으로서는 법인세 폐지가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는 비책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소득세의 통합을 유보해온 미국에서 법인소득세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법인소득세의 폐지와 통합이 동일한 경제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소득세의 통합론과 폐지론은 다같이 개인단계와 법인단계에서의 중복과세를 피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만 통합론은 기존의 조세체계 틀 속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반면 폐지론은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만약 미국의 법인소득세를 폐지하면 소득과세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은 자기자본에 대한 중복과세를 폐지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세제개혁이 세계적인 세제개편을 선도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조세정책 담당자들도 자본소득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부시진영은 소득과세에 기초한 현행 조세체도의 골

격을 직접세 형태의 누진적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미국 재무부의 법인소득세 폐지안은 부시행정부가 조세제도의 기본 축을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옮기는 야심적이지만 정치적 위험이 큰 정책전환보다는 이중과세 폐지로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획기적이지만 다소 제한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3. 최근 독일의 법인세 개혁

1998년 12월에 독일연방 재무성은 기업과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Bruehler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여러 가지모형을 통한 모의실험 과정을 거쳐 세계개혁안을 1999년 4월말 독일정부에 제시하였다. 동 세계개혁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안은 관련 연방부서와 주정부들, 기타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00년 5월 연방하원을 1차적으로 통과하였으나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상하원 합동의 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다소의 내용변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00년 7월 상원을 통과하였다. 또한 동 세계개혁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이었던 2000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늦추게 되었다.

이번의 세계개혁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의 인하이다. 법인세율은 지금까지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40%와 30%로 과세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별이 없이 모두 25%로 과세되도록 세율이 단일화되고 인하되었다. 소득세율은 2000년 현재에도 1999년에 비하여 세율이 인하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년에는 비과세구간 이후의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이 15%, 그리고 최고세율이 42%가 될 예정이다. 비과세구간도 계속 확대되어 현재의 DM 13,500에서 2001년에는 DM 14,000, 그리고 2005년에는 DM 15,000으로 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세계개혁에서 독일정부는 독일기업의 한계실효세율을 영업세 부담을 포함하여 48%에서 37.5%정도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럽국가들 중 중간수준으로 독일의 세계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독일의 경제적 입지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의 세율인하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모두 인하되어 모든 소득계층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나 특히 가족을 가진 납세자와 근로소득자, 그리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세계개혁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목표도 있었지만 응능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세제도를 실현한다는 또 다른 정책목표로 인해 감가상각률을 인하하고 사용연수를 연장하는 정책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세 부담 경감효과는 감가상각제도의 강화 때문에 상쇄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⁴⁾ 그렇지만 독일에서도 국제조세경쟁이라는 차원에서의 세율인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2-6> 독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인하 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예정)
법인세율(유보소득)	40%	40%	25%	25%
법인세율(배당소득)	30%	30%	25%	25%
소득세율(유보소득)	23.9%	22.9%	19.9%	15%
소득세율(최고세율)	53%	51%	48.5%	42%
비과세소득(DM)	13000	13500	14000	15000

독일은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법인세 체계의 변화도 시도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에 부응하고 응능의 원칙에 충실하며 기업의 법적형태에 중립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킨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 동안 독일은 법인세제에 있어 법인단계에서 과세부담을 이익을 받는 주주의 개인소득 과세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주는 완전전가제도(full integration system)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계개혁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동 제도가 독일 국내에 국한하여 세액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주장하는 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입지선택의 자유에 저촉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완전전가제도 대신에 배당의 절반을 개인단계에서 과세하게 되는 절반소득과세제도 (half income method)를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주주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배당소득이 주주단계에서 과세될 때 절반만 과세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개인의 저축공제액 효과는 배당에 대해 2배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이번 세계개혁에서 독일정부는 소득세에 의하여 과세되는 개인기업이나 합자 및 합명회사가 원하는 경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처럼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법적 형태에 중립적인 조세제도를 확보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4) 김유찬, '최근 독일의 세계개혁,'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이번 독일의 세제개혁에서 주목을 끄는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비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조치이다.⁵⁾ 기업이 보유한 타기업 주식 매각시의 양도세 부담으로 주식매각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어 기업구조 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선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세법상 다른 점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소득을 독립법인으로 보지 않고 동회사의 소득을 이 회사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나누어서 개인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사업자산과 사적자산의 구별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사적자산과 사업자산의 차이는 개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통하여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하는지, 혹은 개인 자연인의 이름으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독일정부는 개인이 얻게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지분을 사적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지분을 사업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처럼 절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표 2-7 참조).

<표 2-7>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지분소유자	개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1년 이하				1년 이상				1년 이하	1년 이상
보유기간	1% 이하		1% 이상		1% 이하		1% 이상		과세	비과세
지분	개인	사업	개인	사업	개인	사업	개인	사업		
자산의 성격	개인	사업	개인	사업	개인	사업	개인	사업	과세	비과세
과세여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절반과세	절반과세	절반과세		

결국 이번의 세제개혁에 의하면 배당소득은 기업이 유보하는 소득과 법인단계에서는 같은 25%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하였으나 법인에 유보되는 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절반이 다시 한 번 개인단계에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배당에 대한 최종적인

5) 이 조치가 1999년 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발표되면서 독일의 증권시장에서는 엄청난 DAX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세부담의 합계는 유보소득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인단계의 개인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유보소득에 비하여 무겁게 과세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의 세제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기업의 세부담은 줄이되 이로 인한 과세 혜택은 기업의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 영역에서 존재할 때에만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자국의 기업이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분 출자자가 1인인 유한회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도 최근 허용되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개인기업, 합자 및 합명회사 혹은 주식 및 유한회사 인가 등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른데 이들 법적 형태에 따르는 과세제도의 중립성은 중대한 관건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개인기업이나 합자 및 합명회사에 대해 이들이 원하는 경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처럼 과세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법적형태에 중립적인 조세제도를 확보하려 했었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을 우려한 반대의견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2.4. 국제조세경쟁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최근 세제개편 방향은 생산요소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본 및 노동의 유치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 폐지발언과 EU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현 상황에서 독일의 자본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는 주변국가들의 조세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폐쇄경제 또는 자본이동이 제한된 경제환경에서 국내 조세제도의 국제적인 측면은 자국민의 국외소득 및 외국인의 국내수입에 대한 과세로 그 영향력이 국한되며 이에 따라 국내조세가 여타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의 국제화진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 기술혁신 및 국제금융시장의 발달과 경제의 블럭화 등은 한 국가의 조세정책이 여타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한 세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투자의 이동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세에 대한 유효세율부담을 낮추면 그것이 주요 사회간접투자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를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비용을 여타 과세원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에도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개방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자본과세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소비과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같은 국내경제정책 또한 다른 나라의 자본소득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는 자본 및 유동적 서비스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일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세율 인하정책이 타국의 자본에 대한 유인효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제적 유동자본에 대한 조세경쟁에 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은행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로 하여금 세수확보를 위해 요소 및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조세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다음의 <표 2-8>에서 보듯이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에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유럽국가의 경우 잘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는 1985년 51~5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999년 28%로 낮추었다.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1985년 40~50%대에서 1999년 20~30%대로 대폭 낮추었다.

<표 2-8>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1985	1990	1995	1999
벨기엘	45	41	40.2	39
덴마크	50	50	34	32
핀란드	57	42	25	28
프랑스	50	37	33.3	33.3
그리스	49	40	40	40
아이슬랜드	51	48	33	30
아일랜드	50	40	40	28
이탈리아	46	46	52.2	37
네델란드	43	42	33	35
노르웨이	51	51	28	28
포르투갈	50	40	39.6	34
스페인	35	35	35	35
스웨덴	57	30	28	28
영국	45	35	33	31
터키	49	47	42.8	25
독일	56	50	58.9/46.1	40
미국	51	39	40	35
오스트리아	55	30	34	34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 1999

이러한 세계각국의 글로벌 경제하에서 조세경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조세경쟁은 경제의 자본배분에 왜곡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OECD는 유해조세관행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금융, 서비스 등 유동적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지나친 조세감면정책은 관련국 모두의 재정기반 잠식, 노동, 소비로의 세부담 이전, 자원배분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세감면제도의 합리적 판정기준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모니터링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OECD에서는 1998년 5월 각료 이사회에서 서비스, 금융분야의 조세감면제도를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승인되었는데 아울러 향후 제조업 등 실물활동에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비회원국을 연계시킬 것을 촉구하는데 까지 발전하였다. 다만, 절대적 bank secrecy 보호국가인 일부 회원국이 '금융정보의 과세당국간 교환'에 관한 권고를 문제삼아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초 기대가 완전한 공동보조 실현에는 차질이 빚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경쟁에 대한 OECD 내에서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에서는 금융, 서비스분야 조세피난처 및 유해감면제도와 관련하여 회원국 유해감면제도의 파악과 일정기한내 폐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와 유해감면제도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소득(법인)세 세원규모'이다. 즉, 국제적 조세경쟁의 대상이 될 소득세 세원 자체가 거의 없는 국가는 조세피난처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상당 규모의 소득세 세원을 보유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상당 규모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특정 감면제도는 유해감면제도에 해당될 수 있다. OECD는 조세피난처 리스트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대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OECD내 Forum 창설을 통한 가이드라인, 권고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Ⅲ.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천 과정 및 개편 배경

3.1. 한국의 법인세제도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 공포된 것은 1949년 11월이다. 동 법에 의하면 법인세에 대한 과세 의무자는 국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규정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35%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 때 금융조합 등 수리조합 등 공공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6.25 이후 1951년 이후 임시세제인 조세임시증감법 및 조세특례법 시행하였는데 법인세율이 비례세율에서 최저 25% 최고 45%,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54년 조세특례법 등이 폐지되면서 법인세법은 평시 세제로 환원되었고 초과누진세율제도를 탈피하여 일반법인 35%, 특별법인 30%의 비례세율 구조로 다시 환원되었다. 1961년에는 법인세에 대해 중간 예납 및 수시부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7%, 비공개법인 22% 등 세율적용 기업의 공개를 유도하였다.

1960~1970년대의 법인세제도는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조치들을 도입· 확대하는 한편, 성실신고와 자진납부의 유도,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1961년 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작되면서 법인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그 내용은 일반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없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기업공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 증자법인에 대해 5년간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963년 법인세율을 2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개편하였다. 1967년 법인세의 대대적 개정으로 현재의 법인세법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우선 세율구조를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일반법인과 공개법인에 차등을 두었다. '법령에 의한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도와', '투자세액동계제도'를 신설하였고 기업공개 촉진, 자본시장 육성·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69년에는 성실신고 유도 및 자진납부 기반조성을 위한 조치 취해졌는데 이 때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게 된다. 1977년 주식소유의 대중화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공개법인 세율을 대주주 비율이 35% 이하인 법인과 35% 초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신고납부제도의 도입 및 세부담 공평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각종 조세

납부제도를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1979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1980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고 성실신고법인제도는 폐지되었다. 1981년에는 녹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82년 법인간 세부담 공평을 위해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각종 조세지원에 관한 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으로 흡수되었고 전액 비과세이던 공공법인에 대하여 5%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1983년에는 법인세율 대폭 인하, 공개·비공개법인 간 세율차이를 없애고, 비상장법인에 대해 고율의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1988년 저율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기간비과세 하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주식양도차익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법인세제는 경제 개방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1990년에는 일반법인·비상장대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 적용되던 세율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방위세 폐지로 실질 부담액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4년에는 감가상각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를 개정하였다. 법인세율은 1996년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까지 확대되었다. 1991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96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3.2.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1.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의 과세대상, 즉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여러 가지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수입이나 비용이 훨씬 더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며 어떤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공공법인과 일반법인,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중에서도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

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물론 적정유보초과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 등에도 법인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표 3-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과세소득별 법인종류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 국 법 인	영 리 법 인	일반	국내외의 모든 소득	×	○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등 ¹⁾	국내외의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	×	
외 국 법 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	×	

주: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 등은 내국법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말함.

자료: 국세청, 2000.

법인세 세율은 현재 법인의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5%, 1억원 이상은 27%의 세율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국세 외에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의 <표 3-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상장여부, 영리·비영리, 공공법인 등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체계가 복잡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순화 및 세율 인하를 진행시켜왔다. 2001년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법인세율인하가 국회에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였다.

<표 3-2>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화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2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표 3-3>에서와 같이 법인세 세수실적은 1997년 9조 4,247억원, 1998년 10조 7,758억원, 1999년 9조 3,654억원, 2000년에는 17조 8,784억원으로 전년대비 90.8%나 증가하였다. 이로써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법인세수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로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3> 법인세 징수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총 국 세	699,277	7.6	677,977	-3.0	756,580	11.59	929,347	22.83
일 반 회 계	609,092	6.74	588,376	-3.4	650,671	10.5	819,846	26.0
○ 소득세	148,679	0.6	171,940	15.6	158,546	-7.7	175,089	10.4
○ 법인세	94,246	0.7	107,758	14.3	93,654	-13.0	178,784	90.8
○ 상속세	6,047	6.8	3,095	-48.8	4,807	55.3	4,487	-6.6
○ 증여세	5,565	38.8	3,701	-33.4	4,205	13.6	5,402	28.4
○ 재평가세	1,672	-22.8	4,572	173.4	10,173	122.5	5,372	-47.1
○ 부가가치세	194,880	16.0	157,068	-19.4	203,690	29.6	232,120	13.9
○ 특별소비세	30,364	-2.6	22,115	-27.1	27,133	22.6	29,846	10.0
○ 증권거래세	2,619	-9.5	2,425	-7.4	13,537	583.1	27,359	79.9
○ 인지세	3,901	9.5	3,035	-22.1	3,709	22.2	3,876	4.5
○ 과년도수입	7,760	33.0	9,228	18.9	11,771	27.5	14,525	23.3
○ 교통세	55,471	14.9	65,040	17.2	72,557	11.5	84,036	15.8
○ 관 세	57,976	9.1	38,360	-33.8	46,873	22.1	57,997	23.7
특별회계	90,186	14.1	89,601	-0.6	105,909	18.2	109,501	3.3
○ 주 세	17,898	7.3	18,145	1.3	20,780	14.5	18,644	-10.1
○ 전화세	7,886	19.3	9,219	16.9	11,914	29.2	14,574	22.3
○ 교통세	-		-		-		-	
○ 교육세	53,985	30.8	52,031	-3.6	52,969	1.8	57,983	9.4
○ 농특세	10,398	-30.0	10,154	-2.3	20,234	99.2	18,299	-9.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3-3>에서와 같이 법인세수가 예상외로 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최근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는 예산액대비 조세수입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무려 예산액 대비 57%나 증가한 세수실적을 기록하였다. 2000년도 세수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99년도의 경기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경기변동을 감안해 세수추계를 하여 실행한 예산액대비 세수입이 지나치게 증가한 데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 예산액 대비 조세수입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예산액 (A)	2000년 수납액 (B)	비율(%) B/A	구 성
1. 내 국 세	545,294	677,841	124.3	82.7
소득세	156,085	175,089	112.2	21.3
법인세	113,621	178,784	157.4	21.8
상속세	100,456	9,889	98.4	1.2
자산재평가세	5,079	5,372	105.8	0.7
부가가치세	216,695	232,120	107.1	28.3
특별소비세	17,815	29,846	167.5	3.6
주 세	1,211	981	81.0	0.1
증권거래세	8,385	27,359	326.3	3.3
인 지 세	4,284	3,876	90.5	0.5
기타내국세	12,072	14,525	120.3	1.8
2. 관 세	48,282	57,997	120.1	7.1
3. 방 위 세	-	△29	-	-
4. 교 통 세	94,420	84,036	89.0	10.3
합 계	688,001	819,846	119.2	100.0

자료: 재경부, www.mofe.go.kr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GDP 규모 혹은 총조세 규모, 법인소득 등과 대비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6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던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2%를 상회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이후 1999년의 경기호황을 바탕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약 3.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박기백(2001)은 지방세인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법인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⁶⁾ <표 3-5>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법인소득에 대비해 볼 때 법인세의 부담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경우 법인원천소득에서 35%를 상회하는 금액이 법인세로 징수되고 있다.

6) 박기백,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 9월호

<표 3-5> 주요관련지표 대비 법인세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법인세	국세대비	총조세대비	법인소득대비	GDP대비
1961	1,707	6.6	6.0	-	0.6
1965	5,695	9.8	8.2	-	0.7
1970	42,351	11.6	10.6	-	1.6
1975	130,480	9.4	8.4	26.1	1.3
1980	485,206	8.4	7.4	16.6	1.3
1981	594,062	8.2	7.3	17.2	1.3
1982	781,303	9.3	8.2	21.9	1.4
1983	863,691	8.6	7.5	16.1	1.4
1984	923,535	8.5	7.4	15.1	1.3
1985	1,126,731	9.5	8.3	16.2	1.4
1986	1,191,401	8.8	7.7	14.0	1.3
1987	1,682,444	10.3	9.1	15.3	1.5
1988	2,247,429	11.5	10.0	17.5	1.7
1989	3,107,894	14.6	11.9	25.1	2.1
1990	3,226,128	12.0	9.7	21.3	1.8
1991	4,585,547	15.1	12.0	27.2	2.1
1992	5,941,051	16.9	13.3	31.7	2.4
1993	5,862,329	14.9	11.7	25.4	2.1
1994	7,387,568	15.6	12.2	27.0	2.3
1995	8,662,631	15.3	12.0	27.3	2.3
1996	9,356,104	14.4	11.4	36.8	2.2
1997	9,424,669	13.5	10.7	37.3	2.1
1998	10,775,797	15.9	12.7	251.8	2.4
1999	9,365,392	12.4	9.9	35.8	1.9
2000	17,878,400	22.4	18.2	-	3.5

자료: 통계청 kosis.nso.go.kr 및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3-6>에서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98년 기준 2.6%로 미국의 2.6%, 일본 3.8%, 독일 1.6% 등으로 OECD평균인 3.3%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 동 비중이 3.8%까지 올라갔음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현재 낮은 수준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00년 들어 법인세수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재무구조 개선의 결과 나타난 구조

적 변화요인일 수도 있고 1999년의 경기호황에 기인한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다.

<표 3-6> GDP 및 총세입 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 (1998년 기준)

(단위: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GDP대비 법인세수	2.6	2.6	3.8	1.6	4.1	2.9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12.2	9.0	13.3	4.4	11.0	5.7

자료: OECD, 2000.

2.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부담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로 보아도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396.3%에서 2001년 상반기 198.3%까지 하락하였다. 미국(27.7%)과 일본(33.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차입금의존도도 위기 이전 평균 45.7%에서 2001년 상반기 42.1%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게 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금융비용 및 인건비 부담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에 비하면 영업수익성은 위기 이전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90~96년 상반기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6%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1999년 7.8%, 2000년 8.9%, 2001년 상반기 6.9%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7.8%이며 소폭 개선된 점은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대비 인건비부담률은 1997년 13.2%에서 2001년 상반기에는 9.5%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도 1990~96년 상반기에는 평균 5.7%에 달하였지만 2001년 상반기에는 동비율이 4.0%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 감소나 금융비용 축소가 영업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들어 법인세수익이 급증한 것은 기업의 전반적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어 세수기반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가능하다.

<표 3-7> 제조업 부문 주요 경영분석지표 추이

(단위 : %)

	1990~96 ¹⁾	1997	1998	1999	2000	2001상	미국 ²⁾	일본 ³⁾
재무구조 관련지표								
부채비율	301.7	396.3	303.0	214.7	210.6	198.3	154.4	174.0
차입금의존도	45.7	54.2	50.8	42.8	41.2	42.1	27.7	33.1
유동비율	94.8	91.8	89.8	92.0	83.2	93.5	124.4	134.0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7.6	7.5	8.8	7.8	8.6	6.9	5.4	2.9
매출액경상이익률	2.6	1.4	-0.4	4.2	5.1	3.7	2.8	2.9
투하자본수익률	9.0	7.6	10.3	6.4	8.7	7.3	-	-
가중평균자본비용	10.1	9.2	14.0	7.9	8.6	6.9	-	-
금융비용부담률	5.8	6.2	9.3	7.4	5.1	4.0	2.4	0.8
인건비부담률	13.2	12.0	9.4	9.6	9.5	9.5	-	-
이자보상비율	-	122.0	94.9	105.3	169.5	170.5	224.9	367.5

주: 1)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 상반기~1996년 상반기 평균이며 투하자본수익률 및 가중 평균자본비용과 인건비부담률은 1992년 상반기~1996년 상반기 평균임.

2) 2001년 상반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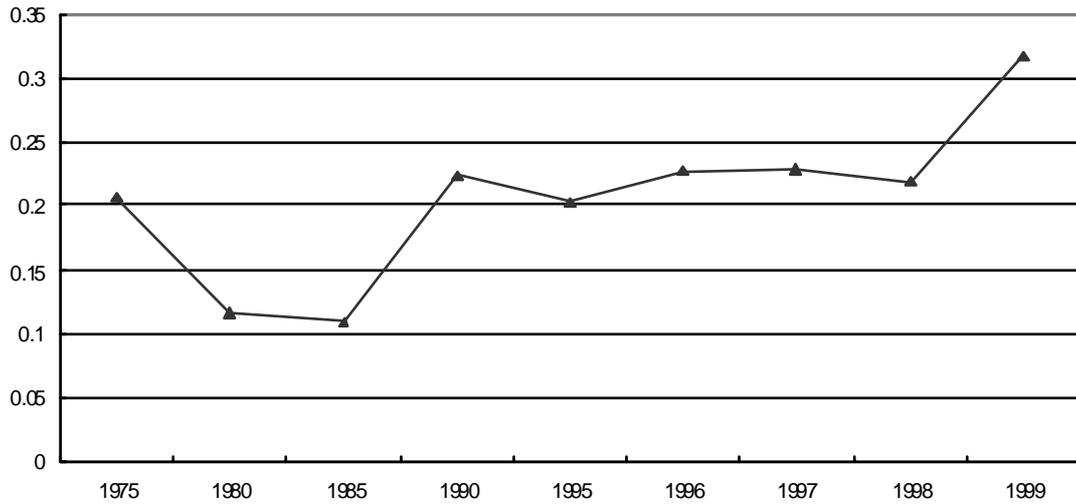
3) 1999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지난해 법인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정세율의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져 논의되어왔으나 사실은 법정세율보다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다. 법인세에 주어지는 각종 감면과 공제와 특별부가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박기백(2001)이 추정 한 바에 의하면 법인의 영업잉여(profit)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법인세/법인영업잉여)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 1980년 전후에는 실효세율이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22~23%로 높아졌고, 1999년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의 법인세부담을 계산 이를 실효세율로 정의해 사용하는 데의 문제점은 영업잉여가 이익과 결손을 합한 것이므로 결손이 많을 경우 영업잉여가 높아져 실효법인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1999년 법인실효세율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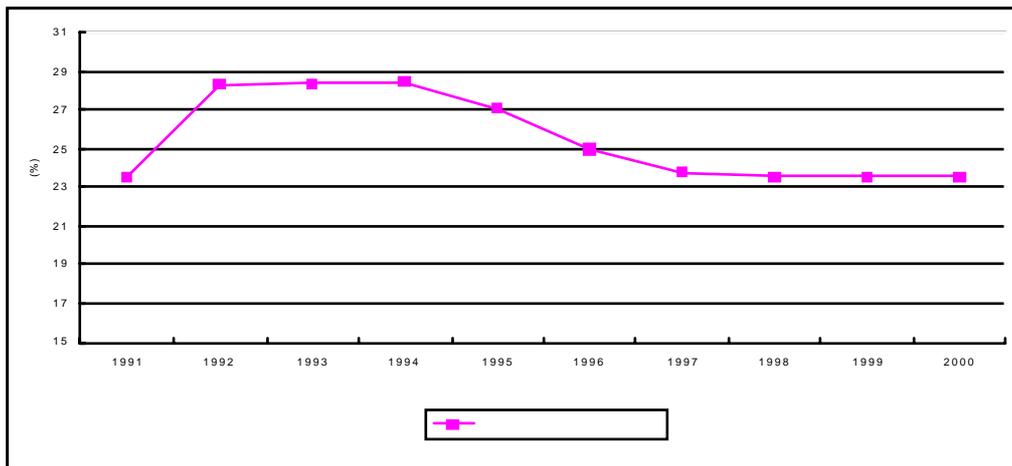
7) 박기백,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 9월호

<그림 3-1>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 추이



따라서 국제 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산정해 보면 은 1994년 25.5%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도에 16.9%로 저하하였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 결정세액기준 유효세율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법인세표

미래의 투자에 대한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효한계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 세율이 낮은 편이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였으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⁸⁾

3.3. 한국의 법인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alsgaard(2000)의 OECD 보고서⁹⁾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세지원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세지원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상 조세 제도 자체가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표 3-8>에서와 같이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수준과 더불어 법인세제 개편 상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기업 형태별, 자금조달별, 자금조달형태별로 세금부담이 다르다는 소위 조세차별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기업규모별 즉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에 따라 차별해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유효세율도 다르다. 또한 투자재원에 있어서도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은 우대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나 사내유보에 의한 투자는 세부담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투자자산 즉 자본재에 대한 세율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대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기계에 대한 세금부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8> 한계 유효세율의 가중평균

(단위: %)

	기업 규모		자본재			투자 재원		
	대기업	중소기업	건축물	기계	비상각자본	대출	유상증자	사내유보
1982	-24.44	-14.47	-14.16	-31.02	-16.08	-51.55	41.56	44.86
1987	-21.80	-19.82	-10.09	-32.76	-9.41	-32.76	27.66	30.17
1992	-25.21	-30.31	-8.47	-43.39	-7.55	-46.46	18.51	22.18
1997	-15.78	-16.56	-2.31	-28.59	-6.04	-32.96	21.75	24.26

자료 : Dalsgaard, 2000.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액은 1998년의 경우 GDP의 0.6%으로 OECD 대부분 국가들의 GDP 대비 조세지출액의 비중이 0.2%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상

8) 현진권,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부담 추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1년 5월호

9) Dalsgaard, Thomas, "The Tax System in Korea; 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71, OECD 2000.

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조세 유인의 축소, 법인세율의 인하 및 조정,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유효세율의 변화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배분상의 왜곡은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은 OECD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른 세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조세 왜곡이 국제기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과세가 투자에 주는 왜곡은 줄었지만 조세유인이 아직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9> 제조업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

(단위: %)

	자금조달 ¹⁾			유형자본 ²⁾			가중 평균	표준 편차
	사내유보	유상증자	부채	기계	건축물	재고		
미국	1.67	4.90	1.43	1.51	2.54	2.02	1.91	1.20
일본	2.66	3.88	0.36	0.97	3.14	2.79	1.98	1.23
독일	1.06	2.21	1.21	0.85	1.40	1.91	1.24	0.48
영국	2.74	2.24	1.46	1.88	2.21	3.09	2.24	0.53
한국(2000)	0.89	2.22	0.46	0.44	1.33	1.26	0.87	0.61
한국(2001) ³⁾	0.61	1.41	1.41	0.64	1.34	1.26	0.97	0.35
멕시코	0.77	1.04	1.04	0.73	0.75	1.43	0.89	0.25
스웨덴	1.73	2.17	0.68	1.14	1.43	1.99	1.41	0.51
OECD 평균	1.72	2.59	0.99	1.17	1.71	2.25	1.55	0.56

주: 1) 기계장치 50, 건축물 28, 재고 22의 가중치로 계산함.

2) 사내유보 55, 유상증자 10, 부채 35의 가중치로 계산함.

3)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반영함.

자료: Dalgaard, 2000.

법인세와 관련 앞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표준 법정 세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이 높아지는 하나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고 해도 부분귀속(partial imputation)제도에 의해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조정 받으며,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소득세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표 3-10> 자본이득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총법인세율	한계 배당세율	금융 자본이득
미국	47	40	68	0~20
일본	20	41	71	26
독일	56	58	50	0
영국	40	31	48	0~40
한국 ¹⁾	24(45)	31	46(45)	0~22
멕시코	40	32	40	0
스웨덴	30	28	50	30

주: 1) 한국의 경우 ()안에서와 같이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됨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고 한계세율이 44.5% 증가함.

자료: Dalsgaard, 2000.

Dalsgaard(2000)의 OECD 보고서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법인세 폐지의사를 피력한 미국 재무장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 개편은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¹⁰⁾ 현재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는 주로 법정세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법정세율이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고, 각종 감면과 공제, 특별부가세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더 적합한 세부담 지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에 앞서 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9~36%이며, 법인세율은 15%와 27%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간 세율이동이 용이하고 자본·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은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해야하는 당위성에 비춰볼 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쟁국보다 유리해야 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더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0)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작년 11월 조선일보와 미래경영연구원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법인세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하였음. 금년들어 상공회의소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대만 수준(25%)으로 인하하고, 2005년까지 23%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음.

<표 3-11> 자본소득과세 과세방법의 국제비교

	과세방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손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 ▶ 특별부가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대권) 주식 등(과점주주주식, 부동산과대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 토지 또는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기타 자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익: 전액이 당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처분손: 3천달러 한도로 당기의 다른 소득과 상쇄가능 ▶ 개인, 신탁, 유산재단의 순자본소득: 최고세율 20%로 과세 ▶ 법인자본소득: 일반세율로 과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산은 50만엔의 기초공제 후 과세양도익을 타원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부동산양도익은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유부동산: 20%(주민세 6%) - 단기보유부동산: 40%(주민세 12%) 혹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00% - 초단기보유부동산: 50%(주민세 15%) 혹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20%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세율이 적용됨 ▶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 ▶ 세액공제를 받는 자본소득은 취득원가를 낮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물, 공장, 기계설비 - 선박, 항공기 - 영업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됨 ▶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의 50%를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동종 신규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경감 - 실현된 자본소득이 대체 자산의 취득에 즉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투자보조금 설정 가능 ▶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매매에 의해 실현된 자본소득은 이연공제할 수 없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이후 일반소득과 같이 부가세를 포함한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 ▶ 경감세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참여지분 - 경영권 인수로 취득한 주식 - 5년 이상 보유한 벤처캐피탈투자기금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중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 이전 및 저당권 설정시 가치증가분 - 세율: 토지가치 증가분 100%까지 40%, 100%초과 200%이하는 50%, 200%초과분 60%

모든 세부담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나, 법인세가 폐지된 국가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법인세를 폐지하여 세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해외투자법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법인소득세가 존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투자·재무·배당결정에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가 또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1/3합산(gross-up)방식'에서 '저세율 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왔다. 1999년에는 '법인세부담율 합산방식'에 의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나, 2002년 들어서는 오히려 '16% 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가 축소되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후퇴하게 되었다.

<표 3-12> 이중과세 제도의 국제비교

	법인단계		개인단계	조정방식
	적용세율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한국	27%/15%	과세소득에 포함 (공제제도 없음)	gross up비율을 19% 또는 실제법인세부담률에 의한 비율(법인세부담율 ² /(1-법인세부담률)중 선택 - 공제율 한도: 38%	임퓨테이션방식
미국	35% (기본세율)	80% 이상 지분소유: 100% 공제 20% 이상 지분소유: 80% 공제 20% 미만 지분소유: 70% 공제	종합과세 (조정제도 없음 ¹)	조정없음
일본	30%	25% 이상 지분소유 : 100% 공제	과세소득 1천만엔 이하: 배당 소득의 10% 세액공제 과세소득 1천만엔 초과: 배당소득의 5% 세액공제	개산배당세액공제방식
영국	30%	전액공제	수취배당액의 1/9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퓨테이션방식
독일	30%	개인주주와 동일	수취배당액이 100/70을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퓨테이션방식
프랑스	33.33%	개인주주와 동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소득에서 공제)	수취배당액의 50%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퓨테이션방식
대만	15%/25%	배당소득의 80% 공제	33.33~48.15%의 값을 갖는 세액공제가능비율을 실제배당수령액에 곱한 금액	임퓨테이션방식

법인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법인의 재무 결정에 있어서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소비처리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법인의 재무 결정에 있어서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소비처리에 따른 혜택도 축소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될 경우에 나타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타인자본 보다는 자기자본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를 다시 확대하고 부동산등에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4. 2001년 세제개편안 평가

법인세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세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다. 특별소비세의 폐지로 자수의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세법의 간소화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법인 분할시 과세이연된 세금의 추징요건을 개선하는 등 상시구조조정체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구조조정시스템 자체가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2001년 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구조조정 감면제도를 대부분 폐지하고 있는 것도 상시 구조조정체제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한 것은 경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되며, R&D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은 새로운 성장 산업인 IT 및 BT 산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라 하겠다. 다만 부품·소재 산업의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으로서 소득 공제율 및 한도가 축소되었는데,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무역수지 개선 및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바

를 고려하여 이미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던 만큼 그대로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법인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그 동안 세계에서 주장해온 세율인하는 제외되었다. 일부 OECD 국가들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고 미국 역시 낮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의 명목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고, 또한 법인의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2000년 기준)로 상당히 큰 편이어서 현시점에서 세율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2~3년 전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3.5. 법인세 폐지 논의의 근거 및 현실적 제약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인세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경제민주화의 기본 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최 광 교수는 ‘재정개혁의 기본시각과 구체적 방안’ 중 법인세 폐지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2001년 11월 예상보다 긴 경기침체로 법인세율의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당겼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1.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이 된 법인세 폐지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설명한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재설의 관점의 차이이다. 즉, 법인세 폐지의 찬성론자의 입장은 법인은 실체가 아닌 허구이기에 세금의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법인은 법인과 구성원과의 대내적 관계에서 볼 때 구성원과 반드시 별개·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그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영리활동을 수행 여기서 취득한 이득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의 소득은 주주의 것이고 법인세는 주주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주주의 부담으

로 귀착시키는 것이다(법인의제설).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과세론은 법인을 법인원천소득(corporate source income)이 주주에게로 흘러가는 도관(conduit)으로 파악한다. 즉,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의 선납액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에서 공제·정산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은 법인원천소득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도관으로서 주주와 별개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대 논리는 법인실재설이다. 법인은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완전히 분리 독립된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다.

둘째, 법인세는 법인과 비법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 세제상 차별을 초래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법인세 폐지의 찬성의 논리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배당소득)를 이중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데 이는 동일 경제적 실체에 대해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조세부담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 반대입장에서 보면 법인은 법인자격으로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법인이어서 누리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과 같은 것으로 다른 조세가 할 수 없는 것을 법인세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독립과세는 개인간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 및 수직적 공평을 침해한다. 소득을 얻는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의 관점에서 보면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나 다른 소득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하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내야한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 차원에서 볼 때도 법인세의 존재로 인해 소득세법상 한계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아 소액주주에게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대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세 폐지를 반대하는 입

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은 이중과세조정제도로 법인세 주주귀속방법(imputation)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금은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므로 법인세 부담액을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법인세 주주귀속방법에서는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가산(Gross-up)하고,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귀속법인세에 기본세율(10%~40%)을 곱한 것만큼 산출세액이 증가하나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차감하면 총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어, 주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¹¹⁾

넷째, 법인세는 자기자본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을 우대하는 결과로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차입이자지급은 손비(損費)로 인정되고 배당지급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존재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선택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을 선호하게 하는 왜곡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논리는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기업부채를 늘릴 수 있음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노벨경제학자 밀러(Miller)의 일반균형 이론인 기업부채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법인세, 주식투자관련 세금, 채권투자관련 이자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기업입장에선 적어도 세금이 부채를 늘이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고 주식투자관련 세율이 매우 적은 환경에서 밀러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이 균형점에선 기업가치가 부채구조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법인세 인하 및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법인세가 초래하는 문제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¹²⁾

다섯째, 법인세는 기업투자의욕을 감소시킨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세후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과 같게 될 때까지 투자를 증가한다. 만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과 같게 되는 수준까지 투자를 확대한다. 법인세가 없었더라면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투자위축현상은 향후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이지 법인세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여섯째, 법인세는 산업의 기술-자본 집약화를 저해한다. 법인세의 과세 소득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요소로서 노동을 고용하는 경우에

11) 2001년 개정된 이 방법은 세무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12) 내외경제신문, “법인세 논쟁의 허구”, 경원대 경영학과 교수 최성섭, 2001.11.26.

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결과 자본집약 산업은 불이익을 당하게되고 산업의 자본집약화를 저해한다. 반대 논리로 이미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세제지원을 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001년부터 시행), 기업의 R&D투자에 대해서는 「연구준비단계, 시설투자단계, 연구비지출 및 연구결과양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을 실시중(2000년 R&D 세금지원 : 9,500억원)이라는 것이다. 금년 세법 개정시 「연구준비, 연구비지출, 연구결과양도」 단계의 세제지원을 확대 연구개발준비금 및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50% 감면 중소기업 등이 제3자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10%)를 납부할 법인세액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법인세는 기업의 과다 광고비, 접대비, 기부금 지출 등 낭비를 조장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제는 소득 또는 수입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광고비, 접대비, 기부금 등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이러한 지출을 법정상한까지 지출하려는 강한 유인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비록 기업이 일련의 지출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전체 국민전체의 경제적인 면에서 낭비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 법제가 악용되어 탈세의 위험이 있는 것 등을 조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주장한다.

여덟째, 법인세는 경기 변동을 심화시킨다고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주장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의 단축 등 특별상각제도에 의해 호황 시에는 사내유보이윤이 더욱 증가되고 이와 같이 증가된 사내유보이윤은 투자될 것이다.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이윤이 적거나 사내유보 이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보자금이 투자될 가능성은 적다. 즉, 호황 기에는 더욱 투자되고 불황기에는 더욱 침체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견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같이 개인돈과 기업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엔 법인세 폐지로 남는 돈을 모두 재투자에 쓴다는 보장이 없다.

아홉째, 법인세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세가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법인세의 부과는 비법인 제품에 비해 법인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므로, 양 제품간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인하나 폐지가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어렵다. 제품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그중 세금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것인데,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은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2. 법인세 폐지의 현실적 문제점

법인세를 폐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정책수단, 그리고 기업경영 투명성 감시수단으로서의 이용가치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2001년 말까지 15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재정적자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법인세 폐지를 논하는 것에 대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즉, 이중과세의 조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조세수입의 결함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적으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세수를 증가시키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내국세에서 부가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이를 다른 수단에 의해 쉽사리 대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식을 자연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세 폐지로 재정수입은 오히려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기관투자자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2000년 기준으로 법인세수가 정부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8%로 법인세를 폐지하게 되면 주세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소득은 배당(의제배당 포함)되고, 배당소득세액(법인세액)이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되기에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세입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세 폐지가 곧 막대한 세입손실로 이어지는 않는다. 물론 현행 세제에서는 실제법인세 부담률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6%로 의제하여 산정한 금액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산정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법인소득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8%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법인세 폐지가 세입에 상

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소득세를 보완한 후 법인세를 도입한다면 세수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며 나아가 세입보전이 법인세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측면은 법인세의 감면조치, 과세소득산정에 있어서의 특혜조치, 사내유보이윤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의해 정부는 유망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등 경제정책수단으로 법인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본다면 법인세 부과에 수반된 조세행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재고 할 수 있는 감시수단이라고 정부는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세 과세를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을 감시하는 것보다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법인세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지나친 활용이 현실에서 큰 왜곡을 초래하였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법인세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인세의 폐지가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법인세는 매출세와 같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전(前轉)되거나 근로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이 후전(後轉)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법인세는 부자에 대한 과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인세의 부담이 그 소유자인 주주에 의해 부담되더라도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의도에 잘 들어맞는 세금은 아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부담을 지우려는 정책의도가 있다면 개인소득세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 달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3.6. 법인세와 자본소득과의 관계

법인세 폐지는 자본소득과세기반이 공고히 구축되어있을 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오랜 기간 자본소득과세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해방이후 신속한 자본축적을 위한 자본과세유예조치에 의해 아직까지 자본소득과세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법인세 폐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과세 특히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소득관련 과세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인세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자본소득세와의 관계이다. 세계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조세정책의 중심적 문제가 자본소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각국 조세개혁의 중심적 과제가 자본소득세이며 자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조세경쟁체제와 관련해서 법인세 개편방향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은 법인세가 부분요소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서 저축을 저해하거나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세계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와 자본소득세 개편논의는 대체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법인세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영국의 대표적인 재정관련 연구소인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자본과세 연구모임에 의해서 1991년에 제안되었던 법인자본충당금(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동 제도에 의하면 법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은 빼는 것이다. 즉, 자기자본과 관련된 수익을 공제하도록 세법상에 정함으로써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부분요소세로서의 왜곡된 부분을 해소하고 나아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자는 것이다. 동 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법인에 투입된 자본 중 자기자본과 차입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과세상의 차별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초 미국 재무성이 제안한 종합기업소득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제도이다. 동 제도도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동 제도에 의하면 현행 법인세에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없애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설명한 법인자본충당금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으로 법인기업의 당기 순이익에 지급이자를 합한 것은 법인세 과세기반으로 하자는 것이다. 즉, 차입자본에 대한 소득에도 과세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중소득과

세(DIT: Dual Income Tax)제도이다. 동 제도는 개인소득에서 자본소득은 저율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법인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자소득은 손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소득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분리하여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은 저율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이들 국가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과세를 완전히 면세해주게 되면 동 제도로도 앞에서 제기된 법인부분 자본에 대한 조세상의 왜곡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유럽의 국가들이 이중소득과세를 채택하게 된 더 중요한 목적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동성이 높은 자본을 자국으로 유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 재무부장관의 언급으로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폐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자본소득세 개편의 최종 완결편은 법인세의 명시적 폐지이다. 앞서 설명한 제도들이 모두 현행 법인소득세의 자원배분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법인세 폐지는 자본소득세의 세부담을 줄여 자본유치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어느 방안을 택할 것인가는 각 국가가 처한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질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재고라는 우리경제의 지상과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의 폐지는 자본소득과세의 정비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한국 응용일반균형(KOCGE) 모형¹³⁾

4.1. KOCGE(한국 계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된 KOCGE모형(Korea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일반적으로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혹은 AGE모형(Appli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알려진 모형의 한 계열이다. 최초의 CGE모형은 Johansen(196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¹⁴⁾ Johansen(1960) 이후 Scarf(1967a, 1967b, 1973)는 이론적으로 균형이 존재함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균형의 해를 푸는 알고리즘(algorithm)을 개발함으로써 CGE모형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⁵⁾ CGE모형은 크게 몇 가지 계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Scarf의 맥을 잇는 Harberger-Scarf-Shoven-Whalley(HSSW)모형으로 알려진 것들인데,¹⁶⁾ 주로 재정정책의 효과 및 귀착에 대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둘째 계보의 CGE모형은 호주경제에 대한 다부문(113개의 산업과 230개의 상품(115개가 국내 생산품이고 115개가 수입품))모형인 ORANI모형이 있다.¹⁷⁾ 그 밖에 세계은행이 개발한 세계은행모형(World Bank Model)도 많이 쓰이는데 주로 개도국의 경제정책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Auerbach & Kotlikoff(1988)와 Jorgenson & Yun(1991)은 기존의 정태적 CGE모형을 동태적 CGE모형으로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용일반균형모형은 Harberger-Scarf-Shoven-Whalley(HSSW)계통인 Ballard-Fullerton-Shoven-Whalley(1985)모형을 기초로 국내 경제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다. 본 모형의 장점은 각종 조세 체계와 세율의 구조의 변화가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 결정 -노동의 공급, 저축 행태, 투자-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와 생산요소 소유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13) 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KOCGE 모형에 대한 설명은 김성태 외(1999)를 참조하여 재구성되었다.

14) 좀더 넓은 의미의 CGE모형은 Leontief의 투입산출 모형이나 수학적 프로그램모형도 포함이 되지만 Dixon과 Parmenter(1996)의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ling for Policy Analysis and Forecasting'에 의하면 Johansen의 모형을 최초의 모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15) Dixon & Parmenter(1996)는 그들의 논문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ling for Policy Analysis and Forecasting'에서 Scarf보다 Johansen이 이미 상대적으로 더 큰 CGE모형을 효율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Scarf의 알고리즘이 1991년 AEA에서 저명한 경제학자로 지명될 정도의 업적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16) Shoven과 Whalley(1972), Fullerton-Shoven-Whalley (1983), Ballard-Fullerton-Shoven-Whalley (1985) 등이 이 계보를 대표한다.

17) ORANI모형에 대한 설명은 Dixon, Parmenter, Sutton, and Vincent(DPSV)(1982)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한 분석과 경제전체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KOCGE모형을 사용하면 그 동안 조세개혁에 관하여 제기되어 온 종합소득세제의 실현,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이 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개편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신중적이면서도 강한 분석력을 갖는 모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세회피율을 모형에 도입하여 조세행정을 고려한 법인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동 모형에서는 법인세제도 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고 여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때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변화와 함께 경제전체의 후생이 변화되며, 가계의 소득이 변화하며, 가계의 노동공급과 저축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제도의 개편은 산업간 자원배분 및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법인세제도의 개편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응용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제도의 개편방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KOCGE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법인세제도의 여러 가지 개편방안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법인세제도 개편이 경제의 후생, 소득분배, 노동공급,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은 물론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2. 모형

1. 모형의 구성

일반균형모형의 4가지 중요 요소는 소비자의 자원부존량 및 수요함수, 생산기술 그리고 균형조건이다. 본 모형에서 경제는 소비부문, 생산부문, 정부부문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계부문은 10개 소득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은 주어진 예산조건하에서 고유의 순차적 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키며 생산부문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이용하여 CES 생산함수에 의해 26개의 생산재와 10개의 소비재를 생산한다. 정부부문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를 징수하여 조세수입을 충당하며 주어진 세입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예산을 집행한다.

2. 생산부문

본 모형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 두 가지로 가정한다. 자본과 노동은 모두 동차적이며 산업부문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한다. 자본(K)은 10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계부문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j 가계에 의해 소유되는 자본은 K_j 로 표기된다($j = 1, \dots, 10$). 자본은 26개 생산부문에서 생산요소로 투입되며 산업 i 에 투입되는 자본은 K_i 로 표기된다($i = 1, \dots, 26$). 가계부문은 부존자원으로써 노동을 E_j 만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l_j ($j = 1, \dots, 10$)는 여가로 사용하고 남은 L_j ($j = 1, \dots, 10$)를 노동으로 공급하여 노동소득을 갖게 된다. 한편 노동은 26개 산업부문에서 생산요소 L_i ($i = 1, \dots, 26$)로 사용되어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E_j = L_j + l_j$ 이며 경제 전체로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4-1) \quad E = \sum_{j=1}^{10} E_j = \sum_{j=1}^{10} L_j + \sum_{j=1}^{10} l_j = L + l = \sum_{i=1}^{26} L_i + \sum_{j=1}^{10} l_j$$

기업은 생산요소 L 과 K 를 구입할 때 한 단위 당 P_L , P_K 의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i 산업 생산자는 세전가격에 노동소득세¹⁸⁾와 법인세인 τ_{L_i} , τ_{C_i} 를 지불하게 되며 이 세율은 산업별로 다르다. 따라서 생산자가 실제로 노동생산요소를 구입 시 지불하게 되는 세후가격은 다음과 같다.

$$(4-2a) \quad P_{L_i}^* = P_L(1 + \tau_{L_i})$$

자본에 대해 지불하는 세후가격은 다음과 같다.¹⁹⁾

$$(4-2b) \quad P_{K_i}^* = P_K \left(1 + \frac{\tau_{C_i}}{1 - \tau_{C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단, 여기서 법인세 세율 $\tau_{C_i} = \frac{CIT_i}{TCCAP_i}$

CIT_i = 산업 i 의 법인세 납부액

18) 노동소득세는 기업이 노동1단위를 고용하는데 지불하는 조세로써, 연금 각출금중 고용자 부담분으로 정의하였다.

19) 자세한 도출과정은 부록 B를 참조

$TCCAP_i$ = 과세 대상 법인소득(taxable corporate income)

$KENC_i$ = i 산업 법인부문의 자본 비중 = i산업 법인부문 자본소득/전체 자본소득

$re_i = \frac{RE_i}{CCAP_i}$ = 법인부문 자본소득($CCAP_i$) 중에서 사내유보(RE_i)가 차지하는 비중

각 산업별 생산자 i는 자본과 노동을 구입하여 다음과 같은 고정대체탄력성을 갖는 부가가치 함수(constant elasticity substitution(CES) value-added function)에 의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43) \quad VA_i = \Phi_i \left[\delta_i L_i^{\frac{\sigma_i-1}{\sigma_i}} + (1-\delta_i) K_i^{\frac{\sigma_i-1}{\sigma_i}} \right]^{\frac{\sigma_i}{\sigma_i-1}} \quad i=1, \dots, 26$$

여기서 Φ_i 와 δ_i 는 생산함수 고유의 파라미터이며 σ_i 는 대체탄력성이다. i 산업에서 산출물 1단위는 부가가치 VA_i 와 중간재가 고정계수로 투입되어 생산된다. 따라서 A로 표시되는 고정계수 투입산출행렬을 통하여 각 산출물 당 중간재 투입과 산출물 1단위가 연결된다. 각 산업당 생산재 Q_i ($i=1, \dots, 26$)를 생산하게 되며 중간재와 부가가치사이에 대체관계는 없다고 가정한다. 각 산업별 생산자 i는 한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요소비용을 극소화하도록 자본과 노동을 구입하게 된다. 식으로 표시하면(산업을 의미하는 i 아래첨자는 식을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생략하였음) 다음과 같다.

$$(44) \quad \min_{L,K} P_L^* L + P_K^* K$$

$$\text{s.t.} \quad VA = \Phi \left[\delta L^{\frac{\sigma-1}{\sigma}} + (1-\delta) K^{\frac{\sigma-1}{\sigma}} \right]^{\frac{\sigma}{\sigma-1}} = 1$$

식(44)를 만족시키는, 즉 한 단위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과 자본 수요는 각각 다음과 같다.

$$(45) \quad R_{L_i} = \Phi_i^{-1} \left[(1-\delta_i) \left(\frac{\delta_i P_{K_i}^*}{(1-\delta_i) P_{L_i}^*} \right)^{(1-\sigma_i)} + \delta_i \right]^{\frac{\sigma_i}{1-\sigma_i}} \quad i = 1, \dots, 26$$

$$(46) \quad R_{K_i} = \Phi_i^{-1} \left[\delta_i \left(\frac{(1-\delta_i) P_{L_i}^*}{\delta_i P_{K_i}^*} \right)^{(1-\sigma_i)} + (1-\delta_i) \right]^{\frac{\sigma_i}{1-\sigma_i}} \quad i = 1, \dots, 26$$

각 산업별 자본과 노동의 수요를 구하기 위해 우선 각 산업이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VA_i 라 할 때 기여율을 var_i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 값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47) \quad var_i \equiv \frac{VA_i}{Q_i}$$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48) \quad L_i = VA_i R_{L_i} = VA_i \Phi_i^{-1} \left[(1-\delta_i) \left(\frac{\delta_i P_{K_i}^*}{(1-\delta_i) P_{L_i}^*} \right)^{(1-\sigma_i)} + \delta_i \right]^{\frac{\sigma_i}{1-\sigma_i}}$$

$$(49) \quad K_i = VA_i R_{K_i} = VA_i \Phi_i^{-1} \left[\delta_i \left(\frac{(1-\delta_i) P_{L_i}^*}{\delta_i P_{K_i}^*} \right)^{(1-\sigma_i)} + (1-\delta_i) \right]^{\frac{\sigma_i}{1-\sigma_i}}$$

위 식에서 사용되어진 자본과 노동의 가격은 세후가격으로 요소소득에 대한 세금은 요소가격을 변화시켜 생산요소 수요결정에 영향을 주게된다. 모든 요소시장과 재화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용한 생산요소 값을 지불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후에 경제적 이윤은 남지 않는다. 이 경우 각 산업별로 경제적 이윤이 영이 되는 재화의 가격은 $P_i (i = 1, \dots, 26)$ 가 된다. 즉, i 재 한 단위의 세전가격은 i 재 한 단위에 투입되는 부가가치 (V_i)와 중간재(a_{ij}) 투입에 대한 요소지불가격을 지불하는 가격(cost-covering price of producer good)이다.

$$(410) \quad V_i = P_{L_i}^* R_{L_i} + P_{K_i}^* R_{K_i} \quad i = 1, \dots, 26$$

$$(411) \quad P = (I - A^T)^{-1} V$$

단, $P(26 \times 1) = \begin{bmatrix} P_1 \\ \vdots \\ P_{26} \end{bmatrix}$ $V(26 \times 1) = \begin{bmatrix} V_1 \\ \vdots \\ V_{26} \end{bmatrix}$, A^T 는 투입계수행렬 A 의 전치행렬

각 산업별로 다른 산업에서 구입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원래 모든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조세부담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정책 또는 기타 이유로 산업별로 다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산업마다 다르게 산정하였다. 본 모형에서 조세행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별 조세 회피율을 모형에 다음과 같이 산입하였다.

$$(4-12) \quad P_i^* = P_i [1 + \tau_{vi} [(1 - a_{vi}) enc_i + ec_i]]$$

여기서 t_{vi} 는 부가가치세율, a_{vi} 는 부가가치세 회피율이며 enc_i 와 ec_i 는 각각 산업별 비법인화율 및 법인화율로 $enc_i + ec_i = 1$ 이다. 또한 조세 회피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4-13) \quad a_{vi} = \frac{\text{실제 부가가치세액} - \text{부가가치세 납부세액}}{\text{실제 부가가치세액}} \quad i = 1, \dots, 26$$

소비재 X_m ($m = 1, \dots, 10$)은 생산재 Q_i 로부터 생산되며 생산·소비 변환행렬(이하 Z행렬)에 의해 구해지게 된다. Z행렬의 요소 Z_{im} 은 소비재 m 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생산재의 양이다. 따라서 소비재 m 의 가격 P_m 은 다음과 같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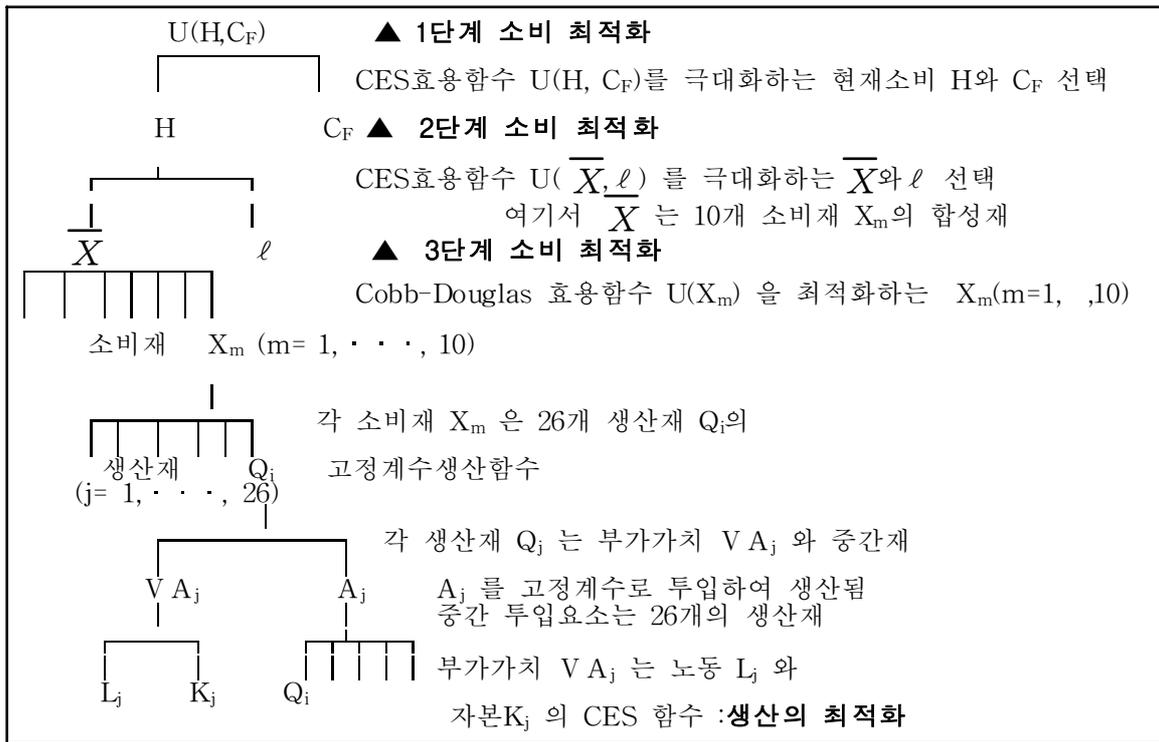
$$(4-14) \quad P_m = \sum_{i=1}^{26} z_{im} P_i^* \quad m = 1, \dots, 9$$

소비자가 소비재 X_m 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물품세 τ_m ($m = 1, \dots, 9$)을 내야 하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당면하는 소비재의 세후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물품세율 τ_m 은 특소세, 전화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개인수준에서 내는 세금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된다.

$$(4-15) \quad P_m^* = P_m (1 + \tau_m)$$

20) 생산재를 소비재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생산자는 이윤이 0이 되므로 식(14)가 성립한다.

<그림 4-1> 모형의 소비 및 생산구조



3. 가계부문

소비자는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 및 자본 노동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각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음이 되지 아니하며 모든 가격수준에 대해 연속적이다. 한 기간 내에서 개인은 미래에 대한 근시안적 예상을 기초로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즉, 현재의 모든 재화가격이 미래에도 불변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저축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가계부문은 순차적 효용함수(nested utility function)의 극대화에 의해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최적화를 하여 소비재의 수요를 결정한다. 첫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아래의 최적화문제를 만족하는 미래소비와 현재소비를 선택한다. 여기서 α 는 가중치이며 σ_2 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이다.

$$(416) \quad \max_{H, C_F} U(H, C_F) = \left[\alpha^{\frac{1}{\sigma_2}} H^{\frac{\sigma_2-1}{\sigma_2}} + (1-\alpha)^{\frac{1}{\sigma_2}} C_F^{\frac{\sigma_2-1}{\sigma_2}} \right]^{\frac{\sigma_2}{\sigma_2-1}}$$

$$\text{s.t.} \quad I = P_H H + \frac{P_C \bar{P}}{P_K \gamma} C_F$$

두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아래의 식과 같이 현재소비 H 를 분배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소비 l 와 상품소비 \bar{X} 를 선택한다(표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 모든 변수 및 파라미터에 대해 소득계층을 나타내는 하첨자 j 는 생략한다).

$$(4-17) \quad \max_{\bar{X}, l} \quad H = \left[(1-\beta) \bar{X}^{\frac{1}{\sigma_1}} + \beta l^{\frac{1}{\sigma_1}} \right]^{\frac{\sigma_1}{\sigma_1-1}}$$

$$\text{s.t.} \quad I - P_s S = \bar{P} \bar{X} + P_l l$$

여기서 β 는 가중치이며 σ_1 은 상품소비군과 여가의 대체탄력성이다. P_l 은 세후 임금 수준과 같다. 즉, $P_l = P_L(1 - \tau_j)$ 이다. 여기서 τ_j 는 소비자 j 계층의 한계개인소득세율이다. 마지막 최적화 단계에서 소비자는 주어진 상품소비군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상품소비량을 $X_m (m=1, \dots, 9)$ 을 결정한다. 여기서 소비자의 효용함수형태는 Cobb-Douglas 효용함수이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8) \quad \max \quad \bar{X} = \prod_{m=1}^9 X_m^{\lambda_m}$$

$$\text{s.t.} \quad I - P_s S - P_l l = \sum_{m=1}^9 X_m P_m^*$$

여기서 λ_m 은 상품별 가중치이다. 제3단계 최적화 문제를 풀면 각 소비자그룹 j 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19) \quad X_{mj} = \frac{\lambda_{mj} (I_j - P_s S_j - P_l^* l_j)}{P_m^*}, \quad m = 1, \dots, 9, \quad j = 1, \dots, 10$$

여기서 CES효용함수 및 Cobb-Douglas 효용함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양적변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가격변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4-20) \quad \bar{P} = \prod_{m=1}^{15} \left(\frac{P_m^*}{\lambda_m} \right)^{\lambda_m}$$

$$(4-21) \quad P_H = [(1 - \beta) \bar{P} (1 - \sigma_1) + \beta P_l^{(1-a)}] \frac{1}{(1-\sigma_1)}$$

$$(4-22) \quad P_U = [a P_H^{(1-\sigma_2)} + (1-a) \left[\frac{P_S \bar{P}}{P_K \gamma} \right]^{(1-\sigma_2)}] \frac{1}{(1-\sigma_2)}$$

4. 정부부문

정부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요소소득세를 징수하여 조세수입을 충당하며 중립적으로 균형예산을 집행한다. 개인소득세는 각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산업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도 산업별로 다르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은 법인화가 다른 산업에 비해 심화되어 있다면 세금부담도 다소 클 것이다. 또한 법인부분에서도 잉여이익이 많은 산업은 배당이나 이자지출이 많은 산업에 비해 중과될 것이다. 식(4-12)에서와 같이 자영업자 등이 주를 이루는 비법인 부문에서 각 산업별로 a_{vi} 만큼의 조세회피(tax evasion)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전 산업에서 지불한 자본소득의 합계와 모든 가계에서 수취한 자본소득의 합계는 같다. 식(4-23)의 오른편은 각 소비자 그룹 j 가 자본을 대여하여 받은 자본소득의 합이며 식의 왼편은 각 산업에서 개인에게 지불한 자본비용의 합이다.

$$(4-23) \quad \sum_{i=1}^{26} CAI_i = \sum_{j=1}^{10} CAI_j$$

소비자 j 그룹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자본소득, 노동소득 모두 포함)에 대한 한계세율은 τ_j ($j = 1, \dots, 10$)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소득은 조세대상이 아니며 노동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j 계층의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4-24) \quad T_j =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B_j 는 일종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기술적으로는 선형조세함수의 절편이며 이 값이 마이너스이면 한계세율이 평균세율을 하회함을 의미한다. 소득은 각 계층의 한계세율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는 반면 동일 계층내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

정하다. j 소득계층의 확장소득 I_j 는 이전소득과 노동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여가의 가치의 합에서 소득세를 뺀 값이다. 따라서 각 그룹($j = 1, \dots, 10$)에 대해

$$(425) \quad I_j = (R - G) d_j - B_j + E_j P_L (1 - \tau_j) + K_j P_K [1 - \tau_j (1 - a_{ij})]$$

여기서 $G = Q^{FIG}$ (정부 고정자본형성) + Q^{FG} (정부소비지출)이며 이 값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정부지출(G)은 크게 둘로 나뉜다. 즉, 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재 및 서비스와 사용자부담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부 조세수입(R) 가운데에 지출(G)을 뺀 나머지를 분배적 차원에서 j 계층 소비자에게 $d_j(R-G)$ 만큼 일시불로 배분하여 준다(사회보장관련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실질개념으로 이전분은 고정적으로 간주). 정부는 요소소득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물품세 징수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입을 정부지출과 가계에의 이전지출을 위해 모두 소진하므로 아래와 같은 균형예산식을 항상 만족시킨다.

$$(426) \quad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 \sum_{i=1}^{26} \left(\tau_{Li} P_L L_i + \frac{\tau_{Ci}}{1 - \tau_{Ci}}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 R = 0 \end{aligned}$$

4.3. 모형의 균형

이상과 같은 응용일반균형모형에서 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동 모형의 균형은 정부의 정책변수들 $\{G, d_j\}$ 및 주어진 파라미터값($enc_i, ec_i, a_{vi}, a_{ij}$)하에서 분배를 결정하는 변수 $\{H_j, C_{Fj}, S_j, \bar{X}, b, X_{mj}, R_{Lj}, R_{Kj}, Q_{ij}, L_j, K_j\}$ 와 가격변수 $\{P_H, P_S, P_L, P_K, P_i, P_m, \bar{P}, P_j\}$ (단, $i=1, \dots, 26, j=1, \dots, 10$)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A. 경제 부문별 최적화조건:
 - A-1. 생산자의 최적화조건: 식(4-4)
 - A-2 소비자의 최적화 조건
 - A-1-1. 1차 최적화조건: 식(4-16)
 - A-1-2. 2차 최적화조건: 식(4-17)
 - A-1-3. 3차 최적화조건: 식(4-18)
- B. 정부의 예산균형조건: 식(4-26)
- C. Feasibility Condition
- D. 시장균형조건
 - D-1. 재화시장 균형조건
 - D-2. 요소시장 균형조건

1. 재화시장 균형조건

재화시장에서 최종생산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소비수요(Q^{FC})와 투자수요(Q^{FI}) 그리고 정부소비지출수요(Q^{FG}) 및 해외수요(Q^{FX})로 나누며 해외수요는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재화시장에서의 균형조건은 최종 생산재의 총수요는 생산부문에서 산출되는 총생산의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이다.

$$(4-27) \quad Q = (I - A)^{-1} (Q^{FC} + Q^{FI} + Q^{FG} + Q^{FX})$$

여기서 최종생산재에 대한 소비수요인 Q_i^{FC}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28) \quad Q_i^{FC} = \left(\sum_{m=1}^9 Z_{im} X_m \right) P_i \quad i = 1, \dots, 26$$

$$(4-29) \quad Q^{FC} = \sum_{i=1}^{26} Q_i^{FC}$$

본 모형에서는 최종생산재에 대한 투자수요인 Q^F 는 가계부문의 저축(Q^{FH}), 법인의 저축(Q^{FI}), 그리고 정부의 저축(Q^{FG})의 합인 총저축과 감가상각(D) 및 재고변화분(IV)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본 모형에서는 정부의 저축과 법인의 저축 그리고 재고변화분은 외생적 변수로 가정하였다.

$$(430) \quad Q^{FI} = Q^{FIH} + Q^{FIC} + Q^{FIG} + D + IV$$

여기서 가계부문의 저축은 가계부문의 최종재에 대한 투자수요와 같다.

$$(431) \quad Q_i^{FIH} = Z_{i10} S_H \quad i = 1, \dots, 26$$

2. 요소시장 균형조건

자본시장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432) \quad \sum_{i=1}^{26} (K_i - D_i) - \sum_{i=1}^{26} Q_i^{FIC} - \sum_{j=1}^{10} K_j = 0$$

노동시장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433) \quad \sum_{i=1}^{26} L_i - \sum_{j=1}^{10} L_j = 0$$

4.4. 모형의 균형 도출

이상에서 설명한 모형의 균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총 565개로 정리되며 변수도 565개이다. 이 방정식체계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 위의 식들을 순차적으로 치환해 나가면 다음의 3개의 방정식과 3개의 변수 (P_L , P_K , R)로 축약할 수 있다.

$$(434) \quad \begin{aligned} F^1 &\equiv \sum_{i=1}^{26} L_i - \sum_{j=1}^{10} L_j \\ &= \sum_{i=1}^{26} \left[\sum_{j=1}^{10} T_{ij} \left(\sum_{m=1}^{10} Z_{im} \left(\sum_{j=1}^{10} \frac{\lambda_m (I_j - P_S S_j - P_L l_j)}{P_m^*} \right) \right) \right] R_{Li} - \sum_{j=1}^{10} L_j \\ &= 0 \end{aligned}$$

$$(435) \quad \begin{aligned} F^2 &\equiv \sum_{i=1}^{26} K_i - \sum_{j=1}^{10} K_j \\ &= \sum_{i=1}^{26} \left[\sum_{j=1}^{10} T_{ij} \left(\sum_{m=1}^{10} Z_{im} \left(\sum_{j=1}^{10} \frac{\lambda_m (I_j - P_S S_j - P_L l_j)}{P_m^*} \right) \right) \right] R_{Ki} - \sum_{j=1}^{10} K_j \\ &= 0 \end{aligned}$$

$$\begin{aligned}
(4-36) \quad F^3 \equiv &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 \sum_{i=1}^{26} \left(\tau_{L_i} P_L L_i + \frac{\tau_{C_i}}{1 - \tau_{C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 R = 0
\end{aligned}$$

4.5. 자료 및 기준측정

1. 생산부문 중간재 생산과 부가가치에 관한 자료

KOCGE 모형의 기준년도는 1993년이다. 기준년도로 1993년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의 한국경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연도로서 모든 필요 자료가 가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연관표는 1993년이 가장 최근 자료가 되고 있다.²¹⁾

여기서는 1993년도 한국경제의 생산부문 자료의 구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생산부문의 자료는 출처가 다양하고 일부 자료는 원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원자료(raw data)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최종 자료로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원자료의 출처와 그 값을 밝히고 원자료의 미세 조정과정에 대하여 밝히게 될 것이다.²²⁾

생산부문은 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에 의해 26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산업을 26개로 구분한 근본적인 이유는 1993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거래행렬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행렬이 (26×26)이기 때문이다. 26개 산업은 <표 4-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4-1> 26개 산업 분류

1. 농림수산물	10. 금속제품	19. 운수 및 보관
2. 광산물	11. 일반기계	20. 통신
3. 식음료품	12. 전기 및 전자계기	21. 금융 및 보험
4. 섬유 및 가죽	13. 정밀기계	2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 종이나무제품	14. 수송기계	23. 공공행정 및 국방
6. 화학제품	15. 기타 제조업제품	24. 교육 및 보건
7. 석유석판제품	16. 전력, 가스, 수도	25. 사회 및 개인서비스
8. 요업토석제품	17. 건설	26. 기타
9. 제1차 금속	18. 도소매	

자료 : 한국은행, 『1993년 산업연관표』, 1996년 발간

21) 단, 본 연구가 시작된 연도인 1996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KOCGE모형의 기준 자료(benchmark data) 구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태 외(1998)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구축 절차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생산부문의 자료는 26개 산업의 중간재의 투입산출거래행렬을 중심으로,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산업별 노동 및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이다.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보수, 자본의 감가상각과 요소소득에 대한 조세를 합한 값이 된다.

(1) 산업별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비중

개별 산업의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의 비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하였다. 법인부문의 비율(e^C)과 비법인부문의 비율(e^{NC})은 각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액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구하였다.

산업별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의 비중은 <표 4-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4-2> 산업별 법인부문 대 비법인부문의 비중

산업	(1) 법인부문 비중(e^C)	(2) 비법인부문비중(e^{NC})	(3) 합계
1	0.01781	0.98219	1
2	0.79514	0.20486	1
3	0.30248	0.69752	1
4	0.80169	0.69752	1
5	0.80169	0.69752	1
6	0.80169	0.69752	1
7	0.80169	0.69752	1
8	0.80169	0.69752	1
9	0.80169	0.69752	1
10	0.80169	0.69752	1
11	0.80169	0.69752	1
12	0.80169	0.69752	1
13	0.80169	0.69752	1
14	0.80169	0.69752	1
15	0.80169	0.69752	1
16	0.99973	0.00027	1
17	0.84410	0.15590	1
18	0.84034	0.15966	1
19	0.90268	0.09732	1
20	0.90268	0.09732	1
21	1.00000	0.00000	1
22	0.66355	0.33645	1
23	1.00000	0.00000	1
24	0.77653	0.22347	1
25	0.74799	0.25201	1
26	0.77653	0.22347	1
합계	0.77653	0.22347	1

(2) 산업별 노동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

산업별 노동에 대한 총보수(gross-of-factor-tax return to labor)는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액 자료를 이용하였다.²³⁾ 노동에 대한 조세는 기업이 노동 1단위를 고용하는 데 지불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연금 중 고용자 부담분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총급여액의 2%에 해당하는 것인데 산업별 자료는 국민연금통계에 근거한다.²⁴⁾ 국민연금의 산업별 표준보수(소득)계층과 가입자 수로부터 산업별 국민연금의 총부담을 구하였다.

(3) 산업별 자본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자본소득은 자본에 대한 보수로서 개별 기업의 법인이윤과 순이자지불 및 순임대지불로 구성되며 법인이윤은 다시 사내유보와 배당으로 구성된다. 산업별 자본소득은 법인부문의 자본소득과 비법인부문의 자본소득으로 구성된다. 비법인부문은 자영업자로 구성되는데 자영업자의 소득은 모두 자본에 대한 보수로 가정하였다. 국가 전체의 자본에 대한 소득은 산업연관표에 있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영업잉여가 된다. 따라서 산업별 자본소득은 산업별 영업잉여가 될 것이다.

산업별 자본소득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하였다.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경제전체의 자본소득 규모를 파악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경영분석』에서 구할 수 있는 산업별 자본소득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업별 자본소득을 구하였다.

산업별 자본소득의 구성은 <표 4-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4-3>의 열 (1)에는 법인부문의 자본소득(CCAP)이 나와 있고 열 (2)에는 총 산업자본소득 중에서 법인부문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KENC)이 나와 있으며, 열 (3)에는 비법인부문의 자본소득(NCCAP)이 정리되어 있고 열 (4)에는 총 산업자본소득 중에서 비법인부문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KNC)이 정리되어 있으며, 열 (5)에는 산업의 총 자본소득(CAP)이 정리되어 있다.

23) 단,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궁극적으로 가계에 그 부담이 전가되므로 노동에 대한 총보수에 간접세를 포함하였다.

24) 여기서는 사용자부담분 2%와 퇴직전환금 2%는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KOCGE 모형에서는 첫 단계에서 개별산업의 자본소득을 <표 4-3>에서와 같이 법인 부문과 비법인부문으로 분해한 뒤, 둘째 단계에서 법인부문의 영업잉여를 순이자지불, 순임대지불, 배당 및 사내유보로 분해하였다.

<표 4-3> 산업별 자본소득의 구성

(단위: 10억원)

산업	(1) 법인부문 자본소득 (CCAP)	(2) 법인부문 자본소득 비중 (KENC)	(3) 비법인부문 자본소득 (NCCAP)	(4) 비법인부문 자본소득 비중 (KNC)	(5) 산업전체 자본소득 (GAP)
1	-65.299	-0.0050	12,882.665	1.0050	12,817.366
2	228.820	0.2524	677.500	0.7475	906.320
3	284.416	0.1970	1,159.247	0.8029	1,443.663
4	765.052	0.4601	897.455	0.5398	1,662.507
5	326.565	0.3916	507.271	0.6083	833.836
6	1,923.378	0.5371	1,657.109	0.4628	3,580.487
7	847.629	0.5301	751.083	0.2736	1,598.712
8	1,050.648	0.7263	395.788	0.2878	1,446.436
9	1,917.442	0.7121	774.859	0.4864	2,692.301
10	625.867	0.5135	592.926	0.3422	1,218.793
11	1,253.279	0.6577	652.254	0.4173	1,905.533
12	2,405.646	0.5826	1,723.284	0.6788	4,128.930
13	64.652	0.3211	136.662	0.3406	201.314
14	752.020	0.6593	388.498	0.4781	1,140.518
15	418.852	0.5218	383.827	0.0000	802.679
16	2,017.795	1.0000	0.000	0.0000	2,017.795
17	4,121.679	0.6438	2,280.193	0.3561	6,401.872
18	6,784.600	0.6154	4,239.364	0.3845	11,023.964
19	674.729	0.2377	2,163.214	0.7622	2,837.943
20	1,070.545	0.8860	137.624	0.1139	1,208.169
21	3,654.567	1.0000	0.000	0.0000	3,654.567
22	7,264.177	0.3678	12,485.039	0.6321	19,749.216
23	0.000	0.0000	0.000	0.0000	0.000
24	448.913	0.5154	422.004	0.4845	870.917
25	1,829.191	0.8232	392.617	0.1767	2,221.808
26	2,112.791	-2.4271	-2,983.267	3.4271	-870.476
합계	42,777.954	0.4996	42,717.954	0.5003	85,495.170

단, 법인부문의 영업잉여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각 산업의 자본소득의 구성요인이 <표 4-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4-4> 산업별 법인부문 자본소득의 구성요인

(단위: 10억원)

산업	(1) 순이자지불 (<i>INT</i>)	(2) 순임대지불 (<i>RENT</i>)	(3) 배당 (<i>DIV</i>)	(4)사내유보 (<i>RE</i>)	(5)합계 (<i>CCAP</i>)
1	237.899	6.079	0.034	-309.311	-65.299
2	368.380	20.337	2.040	-161.937	228.820
3	158.329	8.472	40.726	76.889	284.416
4	628.863	23.432	25.840	86.917	765.052
5	385.583	11.783	11.923	-82.724	326.565
6	1,308.255	30.802	85.363	498.958	1,923.378
7	567.923	11.080	26.838	241.788	847.629
8	276.632	16.930	76.140	680.946	1,050.648
9	665.369	10.448	95.776	1,145.849	1,917.442
10	369.653	13.143	6.807	236.264	625.867
11	466.889	12.311	14.862	759.217	1,253.279
12	1,178.360	37.417	70.502	1,119.367	2,405.646
13	102.177	2.076	2.169	-41.770	64.652
14	339.418	12.227	67.986	332.389	752.020
15	191.372	11.636	2.364	213.480	418.852
16	374.562	2.245	416.656	1,224.332	2,017.795
17	1,431.065	145.489	78.713	2,466.412	4,121.679
18	3,474.323	136.724	38.612	3,134.941	6,784.600
19	383.336	167.661	6.059	117.673	674.729
20	10.142	4.903	207.477	848.023	1,070.545
21	0.000	0.000	174.102	3,480.465	3,654.567
22	2,105.899	453.976	5.483	4,698.819	7,264.177
23	0.0	0.0	0.0	0.0	0.0
24	245.444	10.493	0.0	192.976	448.913
25	407.248	34.145	12.728	1,375.070	1,829.191
26	-241.121	-10.309	0.0	2,364.221	2,112.791
합계	15,436.000	1,173.500	1,469.200	24,699.250	42,777.954

주: 합계는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과 사내유보의 합계를 나타냄.

<표 4-4>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re_i = \frac{RE_i}{CCAP_i} = \text{법인부문 자본소득}(CCAP)$

중에서 사내유보(*RE*)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열(4)를 열(5)로 나눈 값이 될 것이다.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는 기업의 법인소득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산업별 법인세 수입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1993년도 법인세 총수입은 6조 3,413억원으로 1994년도 『국세통계연보』에서 구한 후 『기업경영분석』에서 추계한 개별 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전 산업의 법인세 납부액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개별 산업의 법인세 납부액을 추계하였다.

산업별 법인세 납부액과 유효세율은 <표 4-5>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표 4-5> 산업별 법인세세수 및 유효 법인세율

산업	(1) 법인세	(2) 과세 자본소득	(3) 유효 법인세율 = (1) ÷ (2)
1	13.519	254.303	0.0531
2	45.173	530.609	0.0851
3	33.303	339.835	0.0979
4	164.048	1,100.565	0.1490
5	102.418	614.370	0.1667
6	286.077	2,466.075	0.1160
7	71.902	913.582	0.0787
8	140.434	849.002	0.1654
9	143.546	1,619.933	0.0886
10	42.161	627.589	0.0671
11	112.056	1,141.603	0.0981
12	212.212	2,055.230	0.1032
13	9.859	129.149	0.0763
14	142.434	1,197.026	0.1189
15	20.137	320.377	0.0628
16	285.875	2,364.529	0.1209
17	1,160.403	3,372.944	0.3440
18	1,400.169	5,403.207	0.2591
19	272.663	1,110.757	0.2454
20	241.048	1,648.521	0.1462
21	405.824	1,219.942	0.3326
22	164.866	4,192.547	0.0393
23	0	0	0.0000
24	15.168	658.754	0.0230
25	856.035	1,603.827	0.5337
26	0	-251.430	0.0000
합계	6,341.330	34,575.688	0.1834

2.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거래 자료

KOCGE 모형은 산업간 거래에 대한 자료를 근간으로 구축된다. 1993년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 의해 1996년 작성되어 발표되었는데 거래표는 생산자가격 평가표,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로 구분된다. 각 거래표는 기본적으로 405기본부문 수준에서 작성되었으며, 부문통합과정을 거쳐 다시 163부문(통합소분류)과 75부문(통합중분류) 및 26부문(통합대분류)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KOCGE 모형에서는 통합대분류에 의해 26개 부문의 거래표 중 생산자가격 평가표에 있는 산업간 거래표를 이용하였다.

3. 생산재와 소비재의 변환행렬: Z 행렬

26개 7산업에서 생산된 생산재는 가계에 의해 소비되는 10개 소비재와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가계는 광공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거의 직접 구입하여 소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재화 분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재를 소비재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상정하여야 한다. KOCGE모형에서는 BFSW(1985) 모형을 따라 생산재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 합쳐져 소비재로 변환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생산재 벡타는 변환행렬(Transition Matrix) Z에 의해 소비재로 변환된다.

$$QZ = X$$

여기서 Q는 (1 × 26) 생산재 벡타, Z는 (26 × 10) 변환행렬, X는 (1 × 10) 소비재 벡타를 나타낸다.

Z행렬의 추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였다. 첫째, 1993 산업연관표의 (405 × 405) 거래표를 이용하여 투입부문의 405개 부문을 26개 생산재 부문으로 정리하고, 산출부문은 405개 부문을 10개 소비재부문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405개 부문을 26개 부문으로 정리·통합하는 것은 1993 산업연관표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둘째, 이상의 분류방법에 의해 (26 × 10) 거래표를 작성한다. 셋째, (26×10) 거래표에서 각 행의 원소를 해당 행의 원소의 합으로 나누는 정규화과정(normalization)을 거쳐 Z-행렬을 완성한다.

4. 가계소득, 지출, 투자 및 기타 자료

(1) 최종수요의 구성

KOCGE모형에서 26개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는 4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즉,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지출(C), 기업투자(I), 정부지출(G) 및 수출(E)로 구성된다. 중간재 수요벡타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계수행렬(A)와 국내 총산출고 벡타(X)의 곱에 의하여 구해진다. 한편 특정 재화의 총공급은 국내 총산출고(X)와 수입(M)의 합이 된다. 개별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은 총공급=총수요가 되므로 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437) \quad X + M = AX + C + I + G + E \quad (\text{총공급} = \text{총수요})$$

식(437)을 정리하면 총산출고 벡터(X)는 다음과 같다.

$$(438) \quad X = (I^* - A)^{-1}(C + I + G + E - M)$$

여기서 I^* 는 항등행렬을 나타낸다. 주어진 26개의 재화의 가격벡터에 대해 식(438)의 우변의 값은 총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국내의 총산출고가 된다.

1993년도의 26개 생산재에 대한 최종수요에 대한 자료는 『1993년 산업연관표』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3년의 국내총생산(GDP)은 272조 5,792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각 경제주체의 최종수요에 대한 지출은 각 경제주체의 예산제약하에서 결정된다.

(2) 가계 소득 원천 및 납세액

노동과 자본의 공급주체는 가계이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얻는다.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의 합계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된다. 노동과 자본의 단위는 모두 1원어치의 보수를 가져다주는 서비스 단위(service unit)로 측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계층별 가계의 생산요소의 부존량을 추정하여야 된다. 계층별 가계소득은 계층별 소비지출과 납세액 및 저축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된다.

소득계층별 가계소득과 납세액 지출을 추정하는데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된 『도시가계연보』와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국민소득계정』 및 『산업연관표』이다. 문제는 각기 다른 자료 출처에 의해 추정된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준칙하에 자료를 조정하였다. 자료 조정을 위해 채택된 준칙은 첫째, 미시자료(micro data)와 거시자료(macro data)가 병존하는 경우 거시자료를 기준으로 미시자료를 조정하였다. 둘째, 조세자료는 가능한 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모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조정하였다. 생산요소의 이용(수요)에 대해 지불하는 기업과 정부의 요소소득 지불액의 합계는 생산요소 공급의 대가로 수취한 가계의 요소소득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된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일치하여야 되며, 해외부문은 항상 균형상태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출과 수입은 항상 일치하여야 된다. 소득계층별 가계의 조세 납부액 합계와 정부의

관련 조세수입은 일치하여야 하며, 소득계층별 가계저축의 합계와 국민소득계정 가계부분의 저축이 일치하여야 된다. 이상과 같은 준칙하에 가계소득과 납세액에 대한 추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소득계층별 가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및 이전소득

KOCGE모형에서 가계소득은 노동소득, 자본소득 및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KOCGE모형에서 가계는 동일한 가구수로 구성된 10개 소득계층으로 구성되는데 편의상 1개 소득계층이 하나의 대표적 가계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우선 소득계층별 노동소득에 대해 추정하기로 한다. 소득계층별 노동소득의 추정을 위해 가용한 자료는 『도시가계연보』와 『산업연관표』인데 계층별 노동소득의 총계는 거시자료인 피용자보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층별 노동소득의 분포는 미시자료인 『도시가계연보』에 따라 가계의 노동소득을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한 가계의 노동소득 총계는 피용자보수액 126조 1,153억원에 간접세 24조 261억원이 포함된 150조 1,414억원이 된다. 가계 자본소득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본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내재이자소득(imputed interest)이 자본소득의 구성요인이 된다.²⁵⁾

소득계층별 가계 자본소득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원천별 자본소득의 총계는 『국민소득계정』 및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뒤, 계층별 자본소득은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나 있는 계층별 자본소득의 비중을 따라 배분하였다. 1993년의 『국민소득계정』의 이자소득은 5조 1,970억원, 배당소득은 1조 1,735억원, 순임대소득은 1조 1,735억원, 내재이자소득은 10조 2,390억원이다.²⁶⁾

한편 소득계층별 사업소득의 총계는 산업별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으로 추계하였다. 전체 산업에서 지불되는 자본소득은 『산업연관표』의 영업잉여와 같으므로 비법인부문의 자본소득은 전체 산업의 영업잉여(91조 8,365억원)에서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을 차감하여 총계 42조 7,192억원을 구하였다.²⁷⁾

25) 내재이자소득은 금융부문에서 발생하는 음(-)의 순지불이자(공급적으로 가계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는 몫)를 의미한다.

26) 내재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순수취이자소득으로서 추계되었다. 1994년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음(-)의 순지불이자)은 수취이자(57조 9,668억원)에서 지급이자(47조 6,318억원)를 차감한 10조 2,390억원이다.

27) 소득계층별 가계 자본소득의 분포는 『도시가계연보』에 근거한다. 소득계층별 유형에 따른 자본

가계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외에 외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이 있다. KOCGE 모형에서는 해외로부터 받는 순이전소득이나 국내 경제주체간에 이전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수혜금만을 가계의 이전소득으로 포함시켰다. 1993년 사회보장수혜금은 6,803(1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다음 도시가계연보에서 구한 특정 소득계층별 사회보장수혜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에 사회보장수혜금의 총계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된 소득계층별 사회보장수혜금을 구하였다.

② 소득계층별 납세액

1993년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합계는 8조 9,723억원을 소득계층별 소득세 납부액으로 배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는 각각 소득 계층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부과세액을 배분하였으며,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는 계층별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한편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국세통계연보』에 있는 소득누적구성비와 납부세액 누적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0분위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구해진 소득계층별 소득세 납부액은 <표 4-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4-6> 소득계층별 소득세 납부액(1993년)

(단위: 10억원)

소득계층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기타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합계
I	6.7	54.4	1.0	103.8	4.6	14.7	185.1
II	6.2	50.8	1.4	168.9	4.6	21.3	253.2
III	10.7	820	2.3	201.8	6.8	45.3	353.8
IV	13.1	106.9	3.6	229.7	8.3	46.1	407.8
V	16.2	1432.3	4.0	258.3	10.1	132.5	553.4
VI	19.3	157.7	5.6	290.2	11.9	150.8	635.5
VII	28.4	232.0	6.0	330.0	14.5	259.4	870.4
VIII	42.0	342.6	10.2	375.1	19.9	312.7	1,102.4
IX	44.9	366.1	12.4	450.5	23.2	607.3	1,504.4
X	103.1	841.0	19.3	637.6	40.2	1,465.1	3,106.3
합계	290.6	2,370.8	65.9	3,045.9	144.0	3,055.2	8,972.3

소득은 유형별 자본소득의 총계에 『도시가계연보』에 있는 계층별 가구의 점유율을 곱하여 구하였다.

이상에서 KOCGE 모형의 기초연도인 1993년의 소득계층별 노동소득, 자본소득 및 소득세 등을 도출하였는데 종합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득세(1993년)

(단위: 10억원)

소득계층	(1) 노동소득	(2) 자본소득	(3) 총소득 (=(1)+(2))	(4) 소득세	(5) 유효평균 소득세율 (=(4)/(3))
I	5,114.5	1,932.3	7,046.8	185.1	0.02626
II	8,327.0	1,953.1	10,280.2	253.2	0.02462
III	9,946.8	2,864.7	12,811.6	353.8	0.02761
IV	11,322.2	3,496.1	14,818.3	407.8	0.02751
V	12,732.7	4,246.7	16,979.4	553.4	0.03259
VI	14,303.2	5,017.8	19,321.0	635.5	0.03289
VII	16,268.5	6,118.9	22,387.5	870.4	0.03887
VIII	18,487.9	8,409.2	26,897.2	1,102.4	0.04098
IX	22,207.1	9,786.5	31,993.6	1,504.4	0.04702
X	31,431.0	16,970.2	48,401.3	3,106.3	0.06417
합 계	150,141.3	60,795.9	210,937.3	8,972.3	0.04253

(3) 가계 소득의 처분

① 가처분 소득, 저축 및 소비지출

가계는 총소득에 사회보장수혜금을 더한 후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Tax)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에서 저축을 차감한 나머지가 소비로 쓰인다. 계층별 가계저축의 총계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총계 206조 4,393억원에서 『1993년 산업연관표』의 민간부문의 최종 순소비지출(C) 147조 4,050억원과 소비세 24조 261억원을 차감한 나머진 35조 82억원으로 추계되었다.²⁸⁾ 계층별 가계저축의 분포는 『도시가계연보』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각 소득계층이 모든 가계저축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구한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DI), 저축(S) 및 소비지출(C)은 <표 4-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KOCGE 모형에서 소비자인 가계는 『도시가계연보』의 분류에 따라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의 9개 소비재를 소비한다. 소득계층별 가계의 9개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8>

28) 1993년 『국민소득계정』의 제도부문별 자본조달과정과 축적과정 자료에 나타나 있는 가계부문의 저축은 32조 7,452억원으로 여기서 구한 값과 상당히 근사한 값을 갖는다.

의 7열에 나와있는 계층별 총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다음,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소득계층의 가계가 9개 소비재에 대해 각각 지출한 비율을 구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계층별 소비지출에 개별 소비재의 지출비율을 곱하여 특정 계층의 특정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구하였다.

<표 4-8> 소득계층별 가계소득의 처분(1993년)

(단위: 10억원)

소득 계층	(1) 총소득	(2) 사회보장수혜금	(3) 소득세	(4) 사회보장부담금	(5) 가처분소득	(6) 저축	(7) 총소비지출
I	7,046.8	81.3	185.1	75.5	6,867.5	-1,195.3	8,062.8
II	10,280.2	150.9	253.2	128.4	10,049.6	140.5	9,909.0
III	12,811.6	267.0	353.8	158.6	12,566.2	1,188.7	11,377.4
IV	14,818.3	290.2	407.8	179.7	14,521.0	1,035.0	13,486.0
V	16,979.4	441.2	553.4	194.8	16,672.4	2,498.2	14,174.2
VI	19,321.0	429.5	635.5	213.7	18,901.4	2,308.0	16,593.4
VII	22,387.5	801.0	870.4	246.2	22,071.9	4,144.9	17,927.0
VIII	26,897.2	1,021.6	1,102.4	293.7	26,522.7	4,758.3	21,764.3
IX	31,993.6	905.5	1,504.4	348.1	31,046.6	6,618.3	24,428.2
X	48,401.3	2,414.7	3,106.3	490.1	47,219.6	13,511.2	33,708.3
합 계	210,937.3	6,803.0	8,972.3	2,328.7	206,439.3	35,008.2	171,431.0

주: (1) 총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5) 가처분소득=(1)+(2)-(3)-(4), (7) 총소비지출=(5)-(6)

② 소비세

1993년 우리나라 소비관련세제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는 국세에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 등은 지방세에 포함된다. KOCGE모형에서는 소비세를 크게 부가가치세와 물품세로 구분하여 모형에 반영시켰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최초 생산재가격에 부과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격에 전가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최종 소비재에 대한 과세는 물품세 성격을 갖는 나머지 조세가 된다. 소비세 자료출처는 『국세통계연보』와 『지방재정연감』이다.

모형에서 소비재 m 의 지출에 대한 소비세율은 τ_m (단, $m = 1, \dots, 9$)인데 τ_m 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m 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주세는 주류에 과세되므로 식료품 소비지출에 대한 물품세로 볼 수 있으며, 인지세와 전화세는 교통 통신 소비지출에 대한 물품세로, 증권거래세는 기타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세로 간주하였다.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식료품에 대한 물품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 등록

세 및 면허세는 교통·통신에 대한 물품세로 간주하였다.

단지 특별소비세는 다양한 재화에 대해 1종에서 4종까지 분류하여 차등적인 세율로 과세되므로 9개 소비재에 부합되게 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9개 소비재에 대한 물품세를 구한 다음 개별 소비재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 τ_m 을 구하였다.

5. 조세회피율 자료

조세회피율은 부가가치세 회피율, 개인소득세 회피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성태 외(1999)에서 추정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26개 산업의 부가가치세 회피율(a_{vi})은 <표 4-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각 산업은 법인부문(corporate sector)과 비법인부문(non-corporate sector)으로 구성되는데 KOCGE모형에서는 법인부문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없으며 비법인부문에서만 부가가치세 탈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4-9> 산업별 비법인부문의 부가가치세 탈루율(a_{vi})

산 업	부가가치세 탈루율(%)	산 업	부가가치세 탈루율(%)
1. 농림수산물	47.8	14. 수송기계	19.5
2. 광산품	47.8	15. 기타제조업제품	19.5
3. 식음료품	70.0	16. 전력·가스·수도	0
4. 섬유 및 가죽	19.5	17. 건설	54.4
5. 종이나목제품	19.5	18. 도소매	45.3
6. 화학제품	19.5	19. 운수 및 보관	57.9
7. 석유석탄제품	19.5	20. 통신	57.9
8. 요업토석제품	19.5	21. 금융 및 보험	0
9. 제1차금속	19.5	2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7.6
10. 금속제품	19.5	23. 공공행정 및 국방	0
11. 일반기계	19.5	24. 교육 및 보건	0
12. 전기 및 전자기계	19.5	25. 사회 및 개인서비스	49.9
13. 정밀기계	19.5	26. 기타	47.8

KOCGE모형에서는 개인소득세 가운데 임금소득은 탈루율이 전혀 없으며 탈세는 모두 자본소득의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배준호·홍충기(1998)에서 제시한 근로자계층별 세부담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 계층별 세부담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계층별 소득세 회피율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소득세 회피율 추

정치는 <표 4-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4-10> 소득계층별 개인소득세 회피율

(단위: %)

소득계층	소득세 회피율	소득계층	소득세 회피율
I	17	VI	64
II	42	VII	71
III	38	VIII	72
IV	21	IX	77
V	58	X	80

4.6. KOCGE 모형의 기준측정과 균형 값의 도출

조세개혁과 같은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서 먼저 비교의 기준이 되는 1993년도의 한국경제를 KOCGE 모형을 이용하여 다시 그대로 재생(replicate) 하였다. 즉, 주어진 외생변수 벡터 값과 파라미터 값 하에서 565개의 구조방정식체계의 해(solution)가 1993년 현재 한국경제를 나타내는 실제변수 값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소위 기준측정 (Benchmark Calibration)이라고 하는데, 주로 생산함수, 효용함수, 및 Z-변환행렬의 계수 값 등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여 수행된다.

일단 1993년 한국경제를 그대로 재생시키는 파라미터 값이 구해지면, 각종 정책변수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모형의 균형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균형은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과 비교되는 균형으로 소위 비교균형(Counter-factual Equilibrium)이라고 한다.

CGE 모형에서 기준균형을 구하기 위해 가계의 효용함수와 기업의 생산함수의 각종 파라미터 값을 선택하는 기준측정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방법(Calibration Method)이 이용되었다. 효용함수와 생산함수의 파라미터 값은 가계가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원리에 의해 소비 의사결정을 하고 생산자는 이윤극대화의 행동원리에 의해 생산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 하에 재생된 내생변수 값이 기준경제인 1993년도 한국경제에 가장 근접하도록 설정되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CES 효용함수와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극소화와 효용극대화에 근거하여 파라미터 값을 구할 때 하나의 파라미터는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생산의 대체탄력성이나 소비의 대체탄력성은 계량경제학 문헌으로부터 추정값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함수와 효용함수의 파라미터 값에 대하여 기준측정을 하였다.²⁹⁾

KOCGE 모형은 26개의 생산재를 생산하는 26개의 산업과 저축과 9개의 소비재를 소비하는 10개의 소득계층 및 정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외생변수의 값과 파라미터 값이 주어지면 565개의 연립방정식을 565개의 내생변수에 대하여 풀어 균형 값을 구할 수 있다.

4.7. KOCGE 모형에서 사용한 알고리즘(algorithm) 및 프로그램

기준측정과 정책 모의실험 과정에서 565 개의 내생변수에 대하여 풀어야 하므로 비선형연립방정식체계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KOCGE 모형은 GAUSS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모형의 균형해벡터를 구하였다. GAUSS에서 비선형 연립방정식체계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準뉴턴 방법(quasi-Newton method)을 이용하는데 hook step방법과 line search방법이 있다.³⁰⁾ 두 방법을 이용하여 KOCGE 모형의 균형해 벡터를 구한 결과 두 방법 모두 매우 안정적인 균형값을 구할 수 있었다.³¹⁾

29) 자세한 기준측정 절차와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는 김성태 외(1998)을 참조하기 바람.

30) 자세한 방법은 Aptech System, Inc(1994) 의 『Gauss Application Nonlinear Equations』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31) KOCGE 모형의 균형해를 구하는 GAUSS프로그램은 독자 요청에 따라 저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V.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1. 법인세 개편 방안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감소된 세수를 개인소득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수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를 여타 조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항상 다음 식과 같은 실질세수 동등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것이다.

$$(5-1) \quad R(1) = R(0) \quad Q_L \quad \text{여기서} \quad Q_L = \frac{\sum_m^9 P_m^*(1) x_m^D(0)}{\sum_m^9 P_m^*(0) x_m^D(0)}$$

괄호 안이 0인 변수들은 모두 외생변수로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 값을 넣으면 되고 $P_m^*(1)$ 은 내생변수로서 새로운 균형에서 그 값이 구해져야 될 것이다.

예시를 위해 조세 모의실험(tax simulation)의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최초 기준균형 하에서는 모든 법인세 $\tau_{Ci}(0)$ 가 존재한다($i=1, 26$). 법인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개인소득세에 통합하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변화 후 균형에서는 다음 식이 성립할 것이다.

$$(5-2) \quad \tau_{Ci}(1)=0 \quad i=1, 26.$$

단, 괄호 안에서 0은 최초 값을, 1은 변화 후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에서 해당 번호의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27)-(A52) \quad P_{K_i}^* = P_K \quad i=1, 26.$$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초 기준균형에서는 $\tau_j(0)$ $j=1, 10$ 의 값을 갖다 세제개편 후 균형에서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x)로 인상되므로 새로운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5-3) \quad \tau_j(1) = \tau_j(0) (1 + x) \quad j=1, 10.$$

따라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의 해당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여가의 가격을 나타내는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A212)-(A221) \quad P_{L_j}^* = P_L(1 - \tau_j(0) (1 + x)) \quad j=1, 10$$

따라서 가계의 예산식 역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232)-(A241)

$$I_j = (R(1) - G)d_j - B_j + E_j P_L(1 - \tau_j(0) (1 + x)) + K_j P_K[1 - \tau_j(0) (1 + x)(1 - a_{ij})]$$

여기서 주의할 세제가 개편되는 경우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R(1) - G)$ 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정식체계에서는 $R(0)$ 가 외생변수가 되고 대신 개인소득세율 증가율 x 가 내생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³²⁾

(A565)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1+x) P_L L_j + \tau_j(1+x)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sum_{i=1}^{26} (\tau_{L_i} P_L L_i) \\ & - R(0) Q_L = 0 \end{aligned}$$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

법인세 개편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의 세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 세율 인하는 곧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B와 법인세 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C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32) 실제로 새로운 균형값을 구하는 경우 Q_L 은 식(6-11)으로 대체하여 넣는 것이 새로운 방정식을 추가하지 않아 좋을 것 같다.

(1) 법인세 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상

방안 B는 실질 동일세수 조건하에서 법인세 세율(τ_{Ci})의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τ_j)을 인상시키는 세제개편 방안이다. 방안 B는 현실적으로 법인세 개편이 세율인하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부분적인 조세대체(tax substitution)가 있는 경우에 대한 조세 모의실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단히 모의실험 절차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최초 기준균형 하에서 법인세율은 $\tau_{Ci}(0)$ 가 된다($i=1, 26$). 변화 후 균형 하에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tau_{Ci}(1) = \tau_{Ci}(0) (1 - y)$$

단, 여기서 $y =$ 법인세인하율. 법인세율 인하 폭은 10%, 20%, 30%, 40%, 50%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y = 0.1, 0.2, 0.3, 0.4, 0.5$.

따라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에서 해당 번호의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27)-(A52) \quad P_{Ki}^* = P_K \left(1 + \frac{\tau_{Ci}(1)}{1 - \tau_{Ci}(1)}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초 기준균형에서는 $\tau_j(0)$ ($j=1, 10$)의 값을 갖다가 세제개편 후 균형에서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x)로 인상되므로 새로운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tau_j(1) = \tau_j(0) (1 + x) \quad j=1, 10.$$

따라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의 해당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여가의 가격을 나타내는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A212)-(A221) \quad P_{L_j}^* = P_L(1 - \tau_j(0) (1 + x)) \quad j=1, 10$$

따라서 가계의 예산식 역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232) - (A241)

$$I_j = (R(1) - G)d_j - B_j + E_j P_L(1 - \tau_j(0) (1 + x)) + K_j P_K[1 - \tau_j(0) (1 + x)(1 - a_{ij})]$$

여기서 주의할 세제가 개편되는 경우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R(1) - G)$ 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정식체계에서는 $R(0)$ 가 외생변수가 되고 대신 개인소득세율 증가율 x 가 내생변수가 될 것이다.³³⁾

따라서 정부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³⁴⁾

(A565)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1+x) P_L L_j + \tau_j(1+x)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sum_{i=1}^{26} (\tau_{L_i} P_L L_i) \\ & - R(0) Q_L = 0 \end{aligned}$$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방안 C는 동일세수 조건하에서 법인세 세율(τ_{vj})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τ_{vi})을 인상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세율을 일정 비율(10%, 20%, 30%, 40%, 50%) 인하시키는 대신 부가가치세 세율이 동일세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상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초 기준균형에서는 $\tau_j(0)$ ($j=1, 10$)의 값을 갖다가 세제개편 후 균형에서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x)로 인상되므로 새로운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이

33) 소득세의 증가율 x 의 초기 값은 법인세 인하율 y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로서 $y=0.1$ 인 경우 $x=0.09572$ 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인세 세수 감소분/소득세 세수= $858.8858 / 8972.3 = 0.09572$ 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수 감소분은 각 산업마다 세수 감소분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4) 실제로 새로운 균형값을 구하는 경우 Q_L 은 식(5-1)으로 대체하여 넣는 것이 새로운 방정식을 추가하지 않아 좋을 것 같다.

바뀌게 될 것이다.

$$(A157)-(A182) \quad P_i^* = P_i[1 + \tau_{vi}(0)(1+x)[(1-a_{vi})enc_i + ec_i]] \quad i = 1, \dots, 26$$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의 가계의 예산식과 정부의 균형예산식이 적절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3.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보통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데 따른 세수의 감소를 기타 조세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은 해당 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제계층으로부터 심한 조세저항을 받게되므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법인세 인하 방안은 세율 인하에 따라 정부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지출은 일반적인 정부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안 D와 정부가 가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방안 E가 있다.

법인세를 여타 조세로 대체하는 방안 B와 C는 동일 세수조건하에서 추진되는 반면,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D와 E는 균형예산조건하에서 추진되는 개편방안이 된다.

(1)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소비지출 감소

방안 D는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그에 따른 세수의 감소분만큼 정부지출(G)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균형예산조건 하에서의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의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법인세 세율을 일정 비율(10%, 20%, 30%, 40%, 50%) 인하시키고 균형예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만큼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최초 기준균형 하에서 법인세율은 $\tau_{Ci}(0)$ 가 된다($i=1, 26$). 변화 후 균형 하에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tau_{Ci}(1) = \tau_{Ci}(0)(1-y)$$

단, 여기서 $y =$ 법인세인하율. 법인세율 인하 폭은 10%, 20%, 30%, 40%, 50%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y = 0.1, 0.2, 0.3, 0.4, 0.5$.

따라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에서 해당 번호의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27)-(A52) \quad P_{Ki}^* = P_K \left(1 + \frac{\tau_{Ci}(1)}{1 - \tau_{Ci}(1)}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은 다음 식을 만족시켜야 될 것이다.

$$(5-4) \quad R - G = R(0) - G(0)$$

여기서 R 은 새로운 균형의 조세수입으로 내생변수이며, G 는 새로운 균형의 정부지출인데 이제는 조세수입에 따라 변하므로 내생변수가 될 것이다. 단, 위의 예산균형방정식을 항상 만족하여야 되므로 다음이 성립할 것이다.

$$R - G = R(0) - G(0) = 44175.423 - 37372.423 = 6803$$

또한 가계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³⁵⁾

$$(A232)-(A241)$$

$$I_j = (R(0) - G(0))d_j - B_j + E_j P_L (1 - \tau_j) + K_j P_K [1 - \tau_j (1 - a_{ij})]$$

정부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³⁶⁾

35) 실제로 가계의 예산식에서는 $R(0) - G(0) = 6803$ 을 그대로 대입하면 될 것이다.

36) R 은 내생변수가 될 것이다. G 역시 내생변수이나 모의실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A565)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 \sum_{i=1}^{26} \left(\tau_{L_i} P_L L_i + \frac{\tau_{C_i}(1)}{1 - \tau_{C_i}(1)}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 R = 0
 \end{aligned}$$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방안 E는 법인세율 인하와 그에 따른 정부수입의 감소분만큼 가계를 위한 이전지출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인세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방안이 된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R)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R-G)$ 가 감소하므로 가계 j 에 대한 이전지출 $(R-G) d_j$ 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일정 비율(10%, 20%, 30%, 40%, 50%) 인하시킨다. 최초 기준균형 하에서 법인세율은 $\tau_{C_i}(0)$ 가 된다($i=1, 26$). 변화 후 균형 하에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tau_{C_i}(1) = \tau_{C_i}(0) (1 - y)$$

단, 여기서 y = 법인세인하율. 법인세율 인하 폭은 10%, 20%, 30%, 40%, 50%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y=0.1, 0.2, 0.3, 0.4, 0.5$.

따라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KOCGE 방정식체계에서 해당 번호의 식들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27)-(A52) \quad P_{K_i}^* = P_K \left(1 + \frac{\tau_{C_i}(1)}{1 - \tau_{C_i}(1)}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가계의 예산식은 불변이다.

정부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565)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 \sum_{i=1}^{26} \left(\tau_{L_i} P_L L_i + \frac{\tau_{C_i}(1)}{1 - \tau_{C_i}(1)}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 R = 0 \end{aligned}$$

4. 산업별 법인세 세율 동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 방안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법인세 유효세율을 단일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의실험을 하는 목적은 산업별로 법인세의 우대 내지 차별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최초 법인세율 $\tau_{C_i}(0)$ 은 법인세 단일화 후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³⁷⁾

$$(5-5) \quad \tau_{C_i}(1) = x \quad i = 1, \dots, 26.$$

자본가격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A27)-(A52) \quad P_{K_i}^* = P_K \left(1 + \frac{x}{1-x}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quad i = 1, \dots, 26$$

가계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A232) - (A241)

$$I_j = (R(1) - G) d_j - B_j(0) + E_j P_L (1 - \tau_j) + K_j P_K [1 - \tau_j (1 - a_{ij})]$$

정부의 예산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37) 법인세의 통일 세율 x 의 초기 값은 경제 전 산업의 법인세 세수의 과세대상 법인 소득 비중이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x = 6341.33/34575.688 = 0.183404$ 여기서

법인세 총액=6341.33, 전산업 세후 자본소득 총계($\sum_{i=1}^{26} TCCAP_i = 34575.688$).

(A565)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 \sum_{i=1}^{26} \left(\tau_{L_i} P_L L_i + \frac{x}{1-x}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 R(0) Q_L = 0
 \end{aligned}$$

5.2. 개별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

1. 법인세 개편에 의한 후생변화 측정

특정 조세개혁이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분석은 기본적으로 후생의 동등변화(Equivalence Variation; EV)와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를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icks의 보상변화 추정을 택하였으며 보상변화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5-6) \quad CV = E(U^N, P^N) - E(U^0, P^0)$$

여기서 함수 $E(\cdot)$ 는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를 의미하며, U^0, P^0 는 각각 최초 조세체계 하에서의 균형인 기준균형에서의 효용수준과 가격벡터를 나타내며 U^N, P^N 은 각각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조세체계 하에서의 균형인 비교균형의 효용수준과 가격벡터를 나타낸다. $E(U^N, P^N)$ 은 새로운 가격벡터 P^N 하에서 효용수준 U^N 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상변화는 가격벡터 변화시 소비자가 최초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보상분을 나타낸다.

소비자선호가 同調的(homothetic)인 경우 보상변화 CV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7) \quad CV = \frac{u^N - u^0}{u^N} \cdot I^N$$

여기서 I^N 은 비교균형의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다수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경제의 총후생보상변화(CV)는 소득계층별 보상변화의 합이다. 즉,

$$(5-8) \quad CV = \sum_{j=1}^H CV_j$$

여기서 CV_j 는 소득계층 j 의 보상변화를 나타내며 H 는 총 계층의 수로 본 분석의 경우 $H=10$ 이다.

또한 참고지표로 가계의 효용수준 및 확장소득(expanded income; I_j)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2.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득분배효과의 측정

법인세개편이 경제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의 10분위 배분율과 Gini계수로서 추정하였다. 10분위 배분율은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총계에 대한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총계의 비율로 측정되며, 10분위 배분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한 것을 나타내며 Gini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한 것을 나타낸다.

3. 법인세 개편이 노동의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노동 및 경제 전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가 가계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거나 아니면 고취시키거나에 따라서 경제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가계별 노동공급(L_j , $j=1, \dots, 10$)과 경제전체의 노동공급($L = \sum_{j=1}^{10} L_j$)의 변화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저축 및 경제 전체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38) 가계 확장소득(expanded income or full income) I_j 는 노동소득($P_L L_j$)과 자본소득($P_K K_j$) 및 이 전지출($(R-G)d_j$)의 합계에 여가 소비에 대한 지출($p_l l_j$)을 합한 후 세금을 뺀 소득이다.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가 가계의 저축의욕을 감퇴시키는
 가 아니면 고취시키는가에 따라서 경제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가계별 저축(S_j ,
 $j=1, \dots, 10$)과 경제전체의 저축($S = \sum_{j=1}^{10} S_j$)의 변화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4. 법인세 개편이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개편이 산업별 생산(Q_i , $i=1, 26$)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한다.

5. 기타 법인세 개편이 생산요소소득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개편이 생산요소별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법인세의 부담이 자
 본과 노동 중 어느 생산요소에 더 지워지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생산요
 소가격($P_L(0)$, $P_K(0)$)과 개편 후 생산요소가격($P_L(1)$, $P_K(1)$)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법인세 개편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3. 모의실험 결과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의 모의실험 결과

(1) 후생 효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방안의 후생효과는 보상변화(CV)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
 다. 기준군형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경우의 가계효용을 비교하여
 구할 수 있는 보상변화는 가계효용의 총합이 증가하는 경우 양(+)¹의 값을 갖는다. 후생
 을 비교하고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경우 보상변화(CV)는 -1조 2,586억원으로
 경제전체의 후생은 GDP(264조 7,817억원)의 0.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따라 <표 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Gini계수 값은 낮아지고 십분위배분율은 커져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그 부담이 일부는 자본에 귀착되고 일부는 노동에 귀착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통합되는 경우 법인세의 부담이 소득세로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큰 고소득계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표 5-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A)의 소득분배효과

	기준 균형	방안 A
Gini계수	0.27858	0.27340
십분위배분율	60.05	61.53

주: 십분위배분율=하위40%소득/상위20%소득

(3) 노동공급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이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표 5-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5-2>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소득계층	기준 균형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후	
		수준	변화율(%)
I	5,104.472	5,065.129	-0.771
II	8,319.681	8,278.595	-0.494
III	9,940.492	9,892.815	-0.460
IV	11,313.266	11,286.751	-0.464
V	12,726.966	12,662.370	-0.508
VI	14,294.197	14,211.905	-0.576
VII	16,264.932	16,167.774	-0.597
VIII	18,479.472	18,344.207	-0.732
IX	22,199.218	22,214.022	-0.663
X	31,433.149	31,485.422	-0.906
합계	150,075.828	149,085.693	-0.660

주: 1) 노동 1단위 공급은 1원으로 계산됨.

2) 변화율은 기준균형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체로는 0.66%의 노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가 폐지되고 개인소득세로 통합되면 소득세율이 인상되므로 세후 노동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계의 노동의욕이 감퇴되고 결국 노동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 경제전체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이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표 5-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5-3>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소득계층	기준 균형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후	
		수준	변화율
I	-484.302	-488.637	0.895
II	57.053	57.897	1.480
III	482.701	489.901	1.471
IV	420.399	427.613	1.716
V	1,014.462	1,024.801	1.019
VI	937.698	948.444	1.146
VII	1,683.513	1,691.911	0.499
VIII	1,933.032	1,942.133	0.471
IX	2,689.343	2,676.692	-0.470
X	5,486.023	5,346.162	-2.549
합계	14,219.922	14,116.817	-0.725

주: 변화율은 기준균형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안은 하위소득계층 I부터 소득계층 VIII까지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반면 최고 상위 두 소득계층 IX과 X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상위계층의 저축 감소규모가 하위계층의 저축 증가규모를 압도하여 경제전체로는 저축이 0.7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의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아 법인세 폐지에 따른 소득세율 인상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대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가계의 노동과 저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산업별 생산효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전체산업의 생산량을 0.3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수산물, 건설산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의 모의실험 결과

(1) 후생 효과

<표 5-4>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의 후생 효과

(단위: 10억원, %)

		보상변화	비고
방안 B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108.2	후생 증가
	20% 인하	-75.2	후생 감소
	30% 인하	-249.9	후생 감소
	40% 인하	-416.3	후생 감소
	50% 인하	-574.6	후생 감소
방안 C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211.4	후생 감소
	20% 인하	-705.4	후생 감소
	30% 인하	-1,183.5	후생 감소
	40% 인하	-1,646.4	후생 감소
	50% 인하	-2,095.0	후생 감소

법인세를 기타 조세로 대체하는 것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기타 조세의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성이 높은 법인세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B의 경우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 인하하는 방안만이 후생을 증가시키고 20% 이상 50%까지 인하하는 나머지 방안들은 모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모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후생 감소의 규모는 법인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방안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하는 방안 중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 5-5>에 나타나 있듯이 법인세의 인하와 소득세의 인상은 세율 인하 폭에 관계없이 Gini계수를 감소시키고 십분위배분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법인세 인하와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세율 인하 폭에 관계없이 Gini계수를 증가시키고 십분위배분율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이유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누진적이기 때문이며, 법인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표 5-5>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의 소득분배효과

기준균형		Gini계수	십분위배분율	소득분배
		0.27858	60.05	
방안 B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0.27795	60.23	소득분배개선
	20% 인하	0.27736	60.40	소득분배개선
	30% 인하	0.27679	60.56	소득분배개선
	40% 인하	0.27625	60.72	소득분배개선
	50% 인하	0.27573	60.86	소득분배개선
방안 C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0.27899	59.94	소득분배악화
	20% 인하	0.27938	59.84	소득분배악화
	30% 인하	0.27975	59.74	소득분배악화
	40% 인하	0.28010	59.65	소득분배악화
	50% 인하	0.28042	59.57	소득분배악화

주: 십분위배분율=하위40%소득/상위20%소득

(3) 노동공급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이 경제전체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표 5-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첫째 방안 B와 C 모두 노동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규모로 보아서는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B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 C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소득세 인상은 세후 노동소득을 직접 감소시키는 데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실질소득의

감소에 의해 간접적으로 세후 임금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규모는 세율의 인하 폭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6>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노동공급 수준	노동공급 변화율
기준균형		150,075.620	
방안 B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149,954.744	-0.081
	20% 인하	149,840.551	-0.157
	30% 인하	149,732.099	-0.229
	40% 인하	149,628.620	-0.298
	50% 인하	149,529.520	-0.304
방안 C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149,973.229	-0.068
	20% 인하	149,878.002	-0.132
	30% 인하	149,788.886	-0.191
	40% 인하	149,705.014	-0.247
	50% 인하	149,625.720	-0.300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공통된다. 단, 노동공급의 감소율은 약간의 변이는 있으나 소득계층이 상위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데 <표 5-7>에는 법인세 세율인하가 20%인 경우를 예로 들어 소득계층별 노동공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5-7> 방안 B와 방안 C의 소득계층별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소득계층	기준 균형	방안 B: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인상		방안 C: 법인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수준	변화율(%)	수준	변화율(%)
I	5,104.472	5,094.716	-0.191	5,098.646	-0.114
II	8,319.681	8,309.560	-0.121	8,312.155	-0.090
III	9,940.492	9,929.104	-0.113	9,930.624	-0.099
IV	11,313.266	11,300.193	-0.116	11,301.948	-0.100
V	12,726.966	12,711.200	-0.124	12,713.092	-0.109
VI	14,294.197	14,274.157	-0.140	14,280.376	-0.097
VII	16,264.932	16,241.590	-0.144	16,241.378	-0.145
VIII	18,479.472	18,446.965	-0.176	18,449.492	-0.162
IX	22,199.218	22,148.535	-0.156	22,177.515	-0.098
X	31,433.149	31,368.380	-0.206	31,372.776	-0.192
합계	150,075.828	149,840.551	-0.157	149,878.002	-0.132

- 주: 1) 법인세 인하율은 20%임.
 2) 노동 1단위 공급은 1원으로 계산됨.
 3) 변화율은 기준균형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한편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이 경제전체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표 5-8>에 정리한 바와 같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B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C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의 변화규모는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B, C)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저축 수준	저축 변화율
기준균형		14,220.103	
방안 B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14,207.186	-0.091
	20% 인하	14,195.158	-0.173
	30% 인하	14,183.800	-0.256
	40% 인하	14,173.007	-0.331
	50% 인하	14,162.703	-0.404
방안 C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14,305.183	0.598
	20% 인하	14,386.045	1.167
	30% 인하	14,463.216	1.710
	40% 인하	14,537.081	2.229
	50% 인하	14,607.962	2.728

이와 같이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저축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세율의 인상이 미래소비의 가격을 상승시켜 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상은 현재소비-미래소비에 대해 중립적이므로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우 법인세 인하만큼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산업별 생산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B와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C는 모두 산업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여 산업 총생산의 감소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생산효과는 몇몇 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일반기계, 정밀기계, 건설산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은 양(+)의 생산량효과를 일관되게 보인 산업들이다.

<표 5-9>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산업총생산 수준	산업총생산 변화율
기준균형		580,432.0	
방안 B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580,237.2	-0.034
	20% 인하	580,038.7	-0.068
	30% 인하	579,838.6	-0.102
	40% 인하	579,638.7	-0.137
	50% 인하	579,440.1	-0.171
방안 C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율 10% 인하	580,292.2	-0.024
	20% 인하	580,149.0	-0.049
	30% 인하	580,004.2	-0.074
	40% 인하	579,859.7	-0.099
	50% 인하	579,716.4	-0.123

결국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동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타 조세의 세율을 인상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채택하기 용이한 조세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본 절에서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는 굳이 법인세를 기타 조세로 대체하여야 한다면 후생효과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의 관점에서 법인세를 현행 수준의 10% 정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최적으로 보인다.

3.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방안의 모의실험 결과

3절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기타 조세를 인상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혜택보다는 개인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의 증가가 더 큰 부담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우 여타 조세의 증가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두 가지 대안을 모의실험의 방안으로 고려한다.

방안 D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수의 감소분만큼 정부의 소비지출(G)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정부의 소비지출은 공공재의 공급이나 기타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지출이다.

방안 E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수의 감소분만큼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정부는 원래 세수(R)에서 정부의 소비지출(G)을 뺀 나머지를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로 지급한다. 따라서 가계 j 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은 $d_j(R-G)$ 가 될 것이다. 단, 여기서 $\sum_{j=1}^{10} d_j = 1$ 이 성립한다. 방안 E는 법인세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방안과 동일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절에서 분석한 법인세의 기타 조세로의 대체 방안들(B, C)이 동일세수조건 하에서 추진되는 방안인 반면, 3절에서 분석하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들(D, E)은 균형예산조건 하에서 추진되는 방안들이다.

(1) 후생효과

<표 5-10>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D, E)의 후생효과

(단위: 10억원, %)

		보상변화	비고
방안 D 법인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1,108.9	후생 증가
	20% 인하	1,687.2	후생 증가
	30% 인하	2,231.9	후생 증가
	40% 인하	5,374.1	후생 증가
	50% 인하	3,238.9	후생 증가
방안 E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119.4	후생 증가
	20% 인하	-53.0	후생 감소
	30% 인하	-217.2	후생 감소
	40% 인하	-373.2	후생 감소
	50% 인하	-521.4	후생 감소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하는 방안 D는 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로 보아서는 가장 우월한 방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 인하와 정부소비지출의 감소에 따른 후생증대규모는 법인세 세율의 인하 폭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40% 인하할 때 보상변화가 5조 3,741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 정부의 이전지출을 감소하는 방안 E는 법인세 세율 인하가 현행 세율의 10% 인하할 때 보상변화가 1,194억 원으로 후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세율 인하규모가 현행 20% 이상일 때 후생효과는 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중 가계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반면,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에 나타나 있듯이 법인세의 인하와 이전지출의 감소는 세율 인하 폭에 관계없이 Gini계수를 감소시키고 십분위배분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법인세 인하와 정부 소비지출의 감소는 세율 인하 폭에 관계없이 Gini계수를 증가시키고 십분위배분율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법인세 인하와 이전지출의 감소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이유는 가계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의 비중이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즉 $d_1 < d_2 < \dots < d_{10}$ 이기 때문에, 이전지출의 감소는 고소득층의 혜택을 저소득층의 혜택에 비해 더 많이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정부의 소비지출은 그 혜택이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돌아가므로 정부 소비지출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표 5-11>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D, E)의 소득분배효과

		Gini계수	십분위배분율	소득분배
기준균형		0.27858	60.05	
방안 D 법인세율 인하와 정부소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0.27885	59.98	소득분배악화
	20% 인하	0.27901	59.94	소득분배악화
	30% 인하	0.27916	59.89	소득분배악화
	40% 인하	0.28931	59.86	소득분배악화
	50% 인하	0.28944	59.82	소득분배악화
방안 E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0.27834	60.11	소득분배개선
	20% 인하	0.27811	60.17	소득분배개선
	30% 인하	0.27789	60.22	소득분배개선
	40% 인하	0.27768	60.27	소득분배개선
	50% 인하	0.27747	60.32	소득분배개선

주: 십분위배분율=하위40%소득/상위20%소득

(3) 노동공급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이 경제전체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표 5-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안 D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정부 소비지출의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균형 총생산을 감소시켜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임금을 하락시켜 가계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노동공급의 변화규모는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한다.

<표 5-12>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D, E)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노동공급 수준	노동공급 변화율
기준균형		150,075.620	
방안 D 법인세율 인하와 정부소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149,914.406	-0.108
	20% 인하	149,820.135	-0.170
	30% 인하	149,731.725	-0.228
	40% 인하	149,648.352	-0.285
	50% 인하	149,569.384	-0.337
방안 E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150,227.817	0.101
	20% 인하	150,371.897	0.197
	30% 인하	150,509.065	0.289
	40% 인하	150,639.982	0.376
	50% 인하	150,765.220	0.459

법인세 인하와 정부 소비지출의 감소 방안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공통된다. 단, 노동공급의 감소율은 약간의 변이는 있으나 소득계층이 상위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데 <표 5-13>에는 법인세 세율인하가 20%인 경우를 예로 들어 소득계층별 노동공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소득계층 I의 노동공급만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은 증가시키는데 <표 5-13>에서 볼 수 있듯이 규칙적인 양상을 보인다.

<표 5-13> 방안 D와 방안 E가 소득계층별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소득계층	기준 균형	방안 D: 법인세 인하 정부소비지출 감소		방안 E: 법인세 인하 이전지출 감소	
		수준	변화율(%)	수준	변화율(%)
I	5,104.472	5,091.605	-0.252	5,096.394	-0.158
II	8,319.681	8,307.873	-0.144	8,319.732	0.001
III	9,940.492	9,926.176	-0.144	9,948.251	0.078
IV	11,313.266	11,295.210	-0.160	11,318.441	0.046
V	12,726.966	12,708.310	-0.147	12,745.008	0.142
VI	14,294.197	14,271.190	-0.161	14,305.743	0.081
VII	16,264.932	16,248.255	-0.156	16,307.067	0.259
VIII	18,479.472	18,443.280	-0.196	18,525.628	0.250
IX	22,199.218	22,184.137	-0.158	22,237.027	0.170
X	31,433.149	31,372.979	-0.191	31,568.536	0.431
합계	150,075.828	149,820.135	-0.170	150,371.897	0.197

- 주: 1) 법인세 인하율은 20%임.
 2) 노동 1단위 공급은 1원으로 계산됨.
 3) 변화율은 기준균형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한편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가 경제전체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표 5-14>에 정리한 바와 같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 모두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저축의 증가 규모는 방안 D가 방안 E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축의 변화규모는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4>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D, E)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원, %)

		저축 수준	저축 변화율
기준균형		14,220.103	
방안 D 법인세율 인하와 정부소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14,317.043	0.682
	20% 인하	14,399.380	1.261
	30% 인하	14,477.919	1.313
	40% 인하	14,553.060	2.341
	50% 인하	14,625.136	2.848
방안 E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14,263.214	0.303
	20% 인하	14,304.103	0.591
	30% 인하	14,343.008	0.864
	40% 인하	14,380.128	1.125
	50% 인하	14,415.632	1.375

(4) 산업별 생산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는 산업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는 산업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여 산업 총생산의 변화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생산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방안 D의 경우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계기와 건설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여 법인세 인하 방안에 관계없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보는 업종으로 드러났다.

방안 E의 경우 반대로 산업별 생산효과는 거의 모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가죽, 도소매, 통신, 사회 및 서비스산업들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표 5-15>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방안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

		산업총생산 수준	산업총생산 변화율
기준균형		580,432.0	
방안 D 법인세율 인하와 정부 소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580,146.7	-0.049
	20% 인하	579,993.3	-0.076
	30% 인하	579,838.6	-0.102
	40% 인하	579,684.2	-0.129
	50% 인하	579,531.1	-0.155
방안 C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580,863.2	0.072
	20% 인하	581,256.9	0.138
	30% 인하	581,620.1	0.199
	40% 인하	581,957.7	0.256
	50% 인하	581,273.5	0.308

(5) 세수효과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D, E)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표 5-1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세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가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보다 동일 세율인하에 대해 조금 더 세수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현행 세율의 10%를 인하할 때 방안 D의 경우

세수가 2.1% 감소되는 반면 방안 E의 경우 세수가 1.7% 감소된다. 법인세를 현행 세율의 50%를 인하할 때 방안 D의 경우 세수가 8.9% 감소하는 반면 방안 E의 경우 세수가 7.8%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16>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의 세수에 미치는 효과

	개편방안 D 법인세율 인하 ^(a) 정부지출 감소	개편방안 E 법인세율 인하 ^(a) 이전지출 감소
세수효과	세수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세수 2.1%감소 법인세율 20% 인하: 세수 3.9%감소 법인세율 30% 인하: 세수 5.7%감소 법인세율 40% 인하: 세수 7.3%감소 법인세율 50% 인하: 세수 8.9%감소	세수감소 법인세율 10% 인하: 세수 1.7%감소 법인세율 20% 인하: 세수 3.3%감소 법인세율 30% 인하: 세수 4.9%감소 법인세율 40% 인하: 세수 6.3%감소 법인세율 50% 인하: 세수 7.8%감소

4.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종합

<표 5-17>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종합

	개편방안 A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개편방안 B 법인세율 인하 ^(a) 개인소득세 인상	개편방안 C 법인세율 인하 ^(a) 부가가치세 인상	개편방안 D 법인세율 인하 ^(a) 정부지출 감소	개편방안 E 법인세율 인하 ^(a) 이전지출 감소
효율성 CV	CV 감소	10% 인하시 CV 증가 20~50% 인하시 CV 감소	모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CV 감소: CV 감소폭은 세 율인하폭에 비 례하여 커짐	모든 법인세율 인 하에 대해 CV 증 가: 40% 인하시 CV 증가규모가 극대 화됨	10% 인하시 CV 증가 20~50% 인하시 CV 감소
형평성 소득분배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악화	소득분배 악화	소득분배 개선
세수효과	세수 불변	세수 불변	세수 불변	세수 감소 법인세율 10% 인 하시 총세수 2.1% 감소 법인세율 50% 인 하시 총세수 8.9% 감소	세수 감소 법인세율 10% 인 하시 총세수 1.7% 감소 법인세율 50% 인 하시 총세수 7.8% 감소
산업별 생산효과	총생산량 증가	총생산량 감소 ^(c)	총생산량 감소 ^(c)	총생산량 감소 ^(c)	총생산량 증가 ^(d)
생산요소별 법인세 귀착 ^(b)	노동가격 상승 (1.046%) 자본가격 상승 (7.977%)	노동가격 상승 (0.570%) 자본가격 상승 (4.494%)	노동가격 상승 (0.502%) 자본가격 상승 (4.500%)	노동가격 하락 (1.346%) 자본가격 상승 (2.501%)	노동가격 상승 (0.184%) 자본가격 상승 (5.327%)
노동공급	노동공급 감소	노동공급 감소 ^(c)	노동공급 감소 ^(c)	노동공급 감소 ^(c)	노동공급 증가 ^(d)
저축	저축 감소	저축 감소 ^(c)	저축 증가 ^(d)	저축 증가 ^(d)	저축 증가 ^(d)

주: (a) 10%, 20%, 30%, 40%, 50% 인하

(b) 노동가격(P_L)과 자본가격(P_K)의 변화율은 법인세율을 50% 인하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c) 단, 감소규모는 법인세율 인하 폭에 비례함.

(d) 단, 증가규모는 법인세율 인하 폭에 비례함.

(1) 후생효과

다섯 가지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후생효과를 보상변화를 중심으로 측정한 결과는 <표 5-18>에 정리된 바와 같다. 첫째, 법인세를 인하하고 후속 수단으로 기타 조세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정부지출을 감소하는 방안 중에는 후자가 경제의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E)보다는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D)이 더 큰 후생의 증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세율을 현재 수준의 40% 인하하고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5조 3,741억 원(GDP의 2.02%)의 후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법인세 개편 방안의 후생효과: 보상변화(CV)를 중심으로

(단위: 10억원)

개편방안 A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법인세율 인하폭	개편방안 B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인상	개편방안 C 법인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개편방안 D 법인세율 인하 정부지출 감소	개편방안 E 법인세율 인하 이전지출 감소
-1,258.6	10% 인하	108.2	-211.4	1,108.9	119.4
	20% 인하	-75.2	-705.4	1,687.2	-53.0
	30% 인하	-249.9	-1,183.5	2,231.9	-217.2
	40% 인하	-416.3	-1,646.4	5,374.1	-373.2
	50% 인하	-574.6	-2,095.0	3,238.9	-521.4

셋째, 2001년 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편방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은 경제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경우 보상변화(CV)는 -1조 2,586억 원으로 경제전체의 후생은 GDP(264조 7,817억 원)의 0.47%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시키는 방안들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모든 경우 경제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현재 수준의 10%를 인하시키는 방안만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타 조세의 인상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조세저항의 문제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후생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추후 법인세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을 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표 5-19>에는 법인세 개편방안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Gini계수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준균형의 Gini계수 값과 비교하여 작은 값을 갖게 되면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큰 값을 갖게 되면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법인세를 인하시키는 것은 고소득 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세후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의 부담이 법인세보다는 더 누진적이므로 소득분배는 개선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법인세 개편 방안의 소득분배효과: Gini계수를 중심으로

(기준균형 Gini계수=0.27858)

개편방안 A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법인세율 인하 폭	개편방안 B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인상	개편방안 C 법인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개편방안 D 법인세율 인하 정부지출 감소	개편방안 E 법인세율 인하 이전지출 감소
0.27340	10% 인하	0.27795	0.27899	0.27885	0.27834
	20% 인하	0.27736	0.27938	0.27901	0.27811
	30% 인하	0.27679	0.27975	0.27916	0.27789
	40% 인하	0.27625	0.28010	0.27931	0.27768
	50% 인하	0.27573	0.28042	0.27944	0.27747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악화	소득분배 악화	소득분배 개선

흥미로운 것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정부수입의 감소분만큼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반면,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은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혜택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더 심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반면에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법인세 인하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고소득계층에 누진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이다.

(3)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경우에는 모두 노동과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인세 폐지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B의 경우 역시 노동의 공급과 저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 C와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하는 방안 D의 경우 노동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반면 저축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저축을 모두 증가시키는 개편방안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의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도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이라는 개편방안보다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이 더욱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4) 산업별 생산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B와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C는 모두 산업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여 산업 총생산의 감소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생산효과는 몇몇 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일반기계, 정밀기계, 건설산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은 양(+)의 생산량효과를 일관되게 보인 산업들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는 산업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는 산업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여 산업 총생산의 변화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생산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방안 D의 경우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계기, 정밀계기와 건설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여 법인세 인하 방안에 관계없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보는 업종으로 드러났다.

방안 E의 경우 반대로 산업별 생산효과는 거의 모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가죽, 도소매, 통신, 사회 및 서비스산업들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5) 세수 효과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하는 방안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수가 동일하여야 되므로 세수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세수의 변화가 있는 방안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들이다. 법인세를 현행 수준에서 10%, 20%, 30%, 40%, 50%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각각 세수는 2.1%, 3.9%, 5.7%, 7.3%, 8.9%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의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의 경우에는 약간 세수 감소규모가 방안 D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법인세의 귀착

법인세의 귀착(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은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노동과 자본 중 어느 생산 요소에 귀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이는 법인세 세율(τ_c) 단순 인상이 자본가격과 노동가격 및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인세 귀착을 분석하기 위한 모의실험은 여타 조세체계는 불변인 채 법인세의 산업별 유효세율을 일정 비율(10%) 인상시킨 다음 노동가격과 자본가격의 변화를 살핀 후식 (5-5)와 같은 전가 요인(shift factor)을 계산하는 것이다.

$$(5-5) \quad \text{shift factor} = 1 + \frac{\Delta P_K K}{\Delta R}$$

단, 여기서 ΔR = 명목세수 변화분, K = 부존 자본량, ΔP_K = 자본가격 변화분.

만약 shift factor = 0 이면 자본이 100% 세 부담을 지게되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작으면 자본이 100%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게되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크면 노동이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 세율을 10% 인상하는 경우 shift factor=1.5712로 추정되어 법인세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노동에도 부분적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법인세의 부담이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도 부분적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법인세를 인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자본소유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6.1. 법인세 개편 파급효과 분석의 중요성

법인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 하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효율성의 증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의 증진이 기대했던 대로 달성된다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보전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기대했던 만큼 촉진시키지 못하고 투자가 촉진되더라도 투자가 생산의 증대로 이어져 국민소득의 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세수감소와 함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외환위기이후 재정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가져올 효율성과 세수 그리고 형평성에의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실제 법인세율의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인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이 통과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더구나 법인세율의 인하효과에 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 폐지에 대한 논의도 국회 외부에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도 진행될 바 있다.

앞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듯이,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법인세 폐지는 그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안정적 세수의 세 가지 목표에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기란 어렵다. 아직까지 법인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의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짜여진 분석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게 법인세법 개정을 단행해 왔다. 더구나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평가도 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법인세법 개편의 파급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의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6.2.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결과를 통한 정책시사점

본 연구의 시도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법인세법 모의실험결과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는 있다. 첫째,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후생 측면에서 우월하다. 이는 세금인상이 가져오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지출감소가 가져오는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1년 법인세율의 인하가 정당화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출의 억제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2년 예산심의 당시 건전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세출억제 노력없이 단지 법인세만 인하한 것은 법인세 인하로 발생한 정책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지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는 점 또한 모의실험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효율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저축이 증진되지만 세수보전을 위한 소득세의 인상은 개인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러한 감소가 증대된 기업저축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조세의 왜곡효과가 한국에서도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효율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보전을 세금인상으로 대처하는 경우 형평성의 측면에서 소득세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우월하다. 누진적인 세목인 소득세의 인상이 역진적인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형평성차원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 조세제도 하에서 다른 세제에 대한 개혁이 없이 법인세를 소득세로 흡수하는 식의 통합, 즉 법인세의 폐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을 따를 경우, 효율성과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의 증진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는 법인세 폐지의 논거가 본 연구에서의 모의실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법인세 폐지가 자본소득세에 대한 전반적 정비와 더불어 논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3. 법인세 개편의 과제

지금까지 논의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은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KOCGE 모형을 사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해석하면서 도출된 것으로서 본 모형이 설정한 가정과 모수 값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본 모의실험에서 얻은 결론과 정책 시사점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민감도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시사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세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한국적 기업환경과 세계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

앞서 논의하였듯이 최근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율 폐지 내지는 인하 등 조세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³⁹⁾.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9~ 36%이며, 법인세율은 15%와 27%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세경쟁을 당장에 우려할 염려는 없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조세경쟁차원의 세계 개혁과 후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현 위치를 감안할 때 조세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후퇴한 측면이 있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1/3 합산방식(gross-up)’에서 ‘저세율(18%) 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

39) 상공회의소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대만 수준(25%)으로 인하하고, 2005년까지 23%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또한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음.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지난 2월 한국(서울)의 비즈니스 환경이 경쟁상대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 5개 국제도시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업환경조사(Business Environment Survey)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음. AMCHAM은 개선사항으로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최고 40%와 30%에 달하는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는 5개 경쟁도시 가운데 3위 수준이지만,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정착을 위해 세율(稅率)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소득세율의 경우 홍콩·싱가포르 수준인 20%대로 낮출 것을 건의하였음.

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1999년에는 ‘법인세부담률 합산방식’에 의해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오히려 저세율(16%) 합산방식’으로 복귀함으로써 배당세액공제가 축소되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후퇴되었다. 법인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법인의 재무결정에 있어서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에 따른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될 경우에 나타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를 다시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인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논의가 주로 법정세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세율이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으며, 각종 감면과공제, 특별부가세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더 적합한 세부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에 앞서 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법인세 개편 방안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법인세 세율인하나 법인세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법인세제가 처해 있는 복잡하고 폭넓은 조세감면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의 법인세제는 각종 감면으로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이윤의 폭이 좁아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금경감의 폭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세금감면이 14.6%에 이르고 이는 GDP의 2.5%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세금감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세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세금의 중립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 우리의 중소기업은 각종 세금감면이 워낙 복잡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세금감면에 대해 그때그때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세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국과 세법에 있어서 효율성 경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감면에 대한 재검토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복잡한 세금감면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하고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복적이고 유사한 감면이 있으면 과감히 통폐합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는 시한을 두고 폐지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개발연대부터 존치되고 있어 감면의 기득권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수출산업,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산업지원제도들을 축소·정비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양도세 감면,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일몰법제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감면관리의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OECD보고서에서 Dalsgaard(2000)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관련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원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1998년의 경우 GDP의 0.6%인데 이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동 비중이 0.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⁴⁰⁾ 조세지원 또는 조세유인(tax incentives)은 투자 세액 공제, 면세, 소득 공제, 공공기업 등에 대한 낮은 세율, 그리고 일종의 조세이연에 속하는 가속상속제도, 비과세 적립금 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는 조세지원 일몰제도가 도입되어 조세혜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 소멸되도록 되었다.

40) 참고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는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출이 2조 5,386억 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4조3,286억원이며 2001년에는 4조9,4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 10억원)

	세목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계	
중소기업	89	197		286	0.1
설비투자	14	349		362	0.1
기술 및 인력개발	17	354		370	0.1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242	299		541	0.1
도시·농촌 균형발전	385	62	32	479	0.1
저축 및 금융기관	2,621	231		2,852	0.6
사회보험	249	302		551	0.1
근로자	1,192	14		1,206	0.3
교육문화	156	467	5	629	0.1
기타	4	451		455	0.1
총계	4,967	2,726	38	7,731	1.7

자료 : Dalsgaard(2000)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와 부채조달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조세감면은 간접적인 형태의 정부지출이라는 점에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에 대해 세출예산의 분류에 맞도록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법인세율 인하와 이중과세조정

법인세율은 본 연구결과가 설명하는 것처럼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20% 인하(최고 한계세율 기준으로 2.7~5.4% 포인트)시키고 세수 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효율성측면에서나 국민전체의 후생측면에서 최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법인의

재무결정에 있어서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에 따른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될 경우에 나타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를 다시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1999년에 도입되었던 법인세 부담률 합산방식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제의 단일세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단일세율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없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도모하고,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누적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상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장애가 된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일반원리에 따라 세계각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공제기간이 짧으면 사업년도간의 소득-비용 상계가 불충분해 진다.

<표 52> 결손금 공제제도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멕시코	스웨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년)	20	7	무제한	무제한	5	10	무제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년)	2	1	1	1	0(2 ¹⁾)	0	0

주: 1)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2년간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우리 기업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짧아 IMF('97년) 이후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99~2000년간 소폭 흑자를 낸 기업들이 과거의 결손을 해소하는데 제약을 받게될 전망이다. 따라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1년간)할 필요가 있다.

소급공제는 경기후퇴로 다수 기업들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과거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불황기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있으나 현행 세제는 1회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에 대한 양도세 50% 감면제도는 주식스와핑방식에 의한 우호적 M&A로 활용중인 바 과세이연방식으로 전환해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교환·이전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역시 2003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고 있는데 주식의 명목만 바뀌는 데 대한 지원이므로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최근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세제의 미비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분할 전에는 사업부문간의 물품이동에 해당하여 손익을 계산할 이유가 없다. 한편 분할 후에는 회사간 거래에 해당하여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로부터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분할 전에는 적자사업과 흑자사업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나 분할 후에는 회사단위가 달라져 상계가 불가능하여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인 바 첫째,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의 적정수준 책정문제, 둘째, 적자회사 인수 등에 의한 조세회피에 대한 차단 방법, 셋째, 제도도입의 시기의 세 가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은 중장기 검토과제로만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내년부터 제도도입방침을 사전에 밝히고 입법추진 중에 있다.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은 독일의 입법례(50% 이상)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0% 이상이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확실하고,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저지분율이 상장회사 30%, 비상장

회사 50%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적자회사 인수시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불허할 수 있을 것이다.

7)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⁴¹⁾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법인세 체계는 복잡하여 공제, 감면, 비과세혜택을 100%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법인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지만 법인의 세부담은 법인세율 외에 공제 및 감면, 비과세, 특별부과세, 결손금이월 및 소급, 최저한계세율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법인세부담의 완화 및 방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세제의 간소화, 행정적 부담,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여부, 경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율보다는 특별부가세를 축소, 폐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경우 세율 1% 인하는 대략 과세표준 0.01의 세수감소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세표준이 약 61.6조원이므로 세율 1% 인하가 약 6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별부가세를 축소, 폐지하는 것은 세제의 단순화, 행정부담의 감소,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 세수 감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존재하고, 최저한계세율이 높아 각종 세제상의 유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낮추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준조세의 정비

세율인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세금을 통해 경제하려는 의욕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세금 비슷한 형태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들 이른바 준조세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 준조세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

41) 박기백, 최근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2001,9 재정포럼

업들은 세금보다 준조세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세금 이외에 특별부담금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사회보장성 부담금, 기부금, 성금, 행정요금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부담은 우리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준조세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부담금들을 통합 관리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담금 중에서 세금의 성격이 강한 것은 세금으로 전환하고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법적 강제성에 의한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이 아닌 많은 부분을 조세로 흡수하여 일반 조세화하고 동시에 정부지원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자발성을 가장한 반강제적 부담금 등을 과감히 없애는 등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금 등에 대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관련 법제정에 앞서 작은 정부의 원칙 하에 각종 공단 및 협회 등 산하 단체·기관들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부담금 등은 편익세제 성격은 없이 예산의 경직성 만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갖고있다. 따라서 설령 부담금들을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징수액은 일반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부담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은 매년 예산 배정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개선방안은 첫째 유사한 취지의 법정준조세와, 존치 필요성이 퇴색된 법정준조세를 폐지 및 정비해야 한다. 둘째, 부담요율을 경감하고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셋째, 부과근거, 부과기준의 사용 및 운영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준조세의 종류가 많고 부담도 큰데 비해 정부가 생각하는 준조세의 범위는 너무 엄격히 한정해서 부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 각종 준조세가 많이 생기는 것은 징수 및 부과가 편하고,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⁴²⁾. 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42) 그동안 많은 준조세가 부과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전경련 등 경제계에서는 경제부처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준조세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2000.10.5), 준조세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준조세 정비방안을 마련 확정해 발표하였음(2000.12.4). 또한 준조세정비방안에 따라 관련 후속 입법안도 마련되어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2001.12.21), 동법 시행

한다.

첫째, 부과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유사, 또는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 등은 통합합시키고 징수 목적과 용도간의 괴리가 큰 경우 조세로 전환하고 부과실적이 미미한 부담금 등을 폐지시켜야 한다.

둘째, 부담금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기금백서 수록내용의 내실화 각종 기금의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 공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특별회계, 기금 신설을 가능한 억제하고, 아울러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부처의 재원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

넷째, 부담금과 관련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비용이 미리 결정되어야 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담금 징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부담금을 중심으로 한 준조세의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면서 경제의욕을 커지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자금이나 부패에 연루된 자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음성적인 자금부담 또한 기업에게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준조세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음성적인 기업비용으로서의 준조세를 양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화방안은 음성적 정치자금과 부패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정치사회적 풍토가 자리잡지 않는 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고비용정치와 부패구조의 척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령이 함께 공표되었음(2001.12.31). 이에 따라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시행됨(2002.1.1)에 따라 각 해당기관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부담금 신설 시에는 사전심사를 받고, 부담금 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 등 제재를 받게된다.

VI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최선의 법인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을 살펴보고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제안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욱이 최선의 법인세 개편을 위하여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25개 산업, 10개 소득계층의 가계와 정부부문으로 구성된 한국의 응용일반균형모형인 KOCGE 모형을 이용한 조세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방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법인세 개편 대안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법인세 개편방안이 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노동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생산에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룹의 방안 A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이며, 둘째 그룹의 방안 B와 C는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방안인데, 방안 B는 소득세 인상방안이며 방안 C는 부가가치세 인상방안이다. 셋째 그룹의 방안 D와 E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방안인데, 방안 D는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며 방안 E는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조세 모의실험 분석 결과 첫째,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 방안보다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개별 방안마다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들 중 정부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반면 가계를 위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과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상방안은 노동공급과 저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인세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방안은 노동공급과 저축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편 방안 중 후생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20% 인하(최고 한계세율 기준으로 2.7~5.4% 포인트)시키고 세수 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방안은 조세저항에 따른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폐지론은 결국 정부로 하여금 세수 감소분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인상으로 보전하게 할 경우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이전지출을 줄여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과세를 정비하게 되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구, 1995, 『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과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곽태원, 1994,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 1999a, 「한국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조화로운 개혁방안」, 『경제학연구』 제47집 제3호, pp. 23-63.
-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 1999b, 「한국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3호, pp. 45-72.
- 김유찬, 1995,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
- _____, 「최근 독일의 세제개혁」,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1월.
- 김종웅, 1996, 「법인소득세와 개인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 『논문집』 제14집, 경산대학교, pp. 17-33.
- 노현섭·김태수, 1996,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pp. 157-188.
- 대한상공회의소,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2001.5.18
- 박기백,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2001년9월
- _____, 이명현, 2000,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0-03.
- 박정우·이현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을 위한 법인세감면제도의 효과분석」,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1998년 6월
- 산업자원부, 「UNCTAD, 2000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2001년
- 손원익, 1999,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8-06,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안종석, 1996, 「개방경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 원윤희, 1996, 「유효한계세율의 측정을 통한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 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pp. 111-156.
- 유병훈, 1993, 「한국 법인기업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영남경상논총』 제11권, 영남경상학회, pp. 245-264.
- 유시권, 1997, 『기업회계 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09.

- 이만우, '2001년 세계개편안의평가', 『재정포럼』, 2001년10월
- 이장규, '일본의 세계개혁 방향',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1월
- 이두기·김영락, 1998, 「조세 혜택법인의 내재적 조세와 법인세 부담률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p. 451-478.
- 이명훈, 1993, 「법인세의 무변명 지급이자 과세」,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pp. 31-60.
- 이우택, 1999, 「법인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한국세무학회, pp. 67-100.
- 이준규, 1991, 「법인과세의 공평과 법인세부담의 측정방법」, 『사회과학논총』 제9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239-258.
- 정문현, 1993,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부산상대논집』 제64집,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pp. 69-90.
- 정재호,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 6월
- 조계근, 1996, 「우리 나라 제조업의 유효한계세율 분석」, 『재정논집』 제11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pp. 185-214.
- 최광, 나성린, 박대근, 안종범, 윤건영, 한경동, 허찬국,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8. 12
- 한경동·하정훈, 「조세의 공공부담과 재정」, 한국경제연구원, 1999. 7
- 한도숙,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조세연구원 2001년
- 홍범교, '2001년 세계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재정포럼』, 2001년10월
- 현진권,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OECD평가', 『재정포럼』, 2001년2월
- AMCHAM, Business Environment Survey, 2002. 2
- OECD대표부, '유해조세관행 공동대응'
- OECD, Tax Burdens; Alternative Measures, 2000
- Koe Lu and Charles and Charles Swenson, "Tax burdens around the world : How do Asia Pacific Companies and Countries Compare?", Asia-Pacific Journal of Taxation, 2000
- Auerbach, A., 1983, Corporate Taxation in the U.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 _____, 1989, "The Deadweight Loss from 'Non-Neutral Capital Income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0, pp. 1-36.
- _____ and Laurence Kotlikoff, 1987,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Joel Slemrod, 1997,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pp. 589-632.
- Ballard, Charles, Don Fullerton, John Shoven, and John Whalley, 1985,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skin, Michael, 1978, "Taxation, Saving, and the Role of Intere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2), Part 2, pp. S3-27.
- Bradford, David, 1978, "Factor Prices May be Constant, but Factor Returns are Not," *Economics Letters*, 1, (No. 3), pp. 199-203.
- _____, 1995, *Distributional Analysis of Tax Policy*, Washington D.C. : The AEI Press.
- Colm, G., 1955, "The Corporation and Corporation Income Tax", *Essays in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pp. 88-90.
- Feldstein, Martin, 1980, "Imputing Corporate Tax Liabilities to Individual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 90, pp. 314-329.
- Feldstein, M. and L. Summers, 1979,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 *National Tax Journal*, 32, pp. 445-470.
- Fuchs, Victor, Alan Krueger, and James Poterba, 1997, "Why Do Economists Disagree about Policy? The Role of Beliefs About Parameters and Values," *NBER Working Paper* 6151.
- Goulder, Laurence, John Shoven, and John Whalley, 1983, "Domestic Tax Policy and the Foreign Sector : The Importance of Alternative Foreign Sector Formulations to Results from a General Equilibrium Model," *Behavioral Simulation Methods in Tax Policy Analysis*, edited by Martin Feldste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BER.
- _____, and Barry Eichengreen, 1989, "Saving Promo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rade Polic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dited by Robert C. Feenstr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velle, Jane, 1994, "Corporate Tax Incidence in an Open Economy," Proceedings of the 86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Columbus, Ohio : National Tax Association.

- _____, 1994, *The Economic Effects of Taxing Capital Income*, Cambridge : MIT Press.
- _____ and Laurence Kotlikoff, 1989,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Costs of Corporate Taxation When Corporate and Noncorporate Firms Produce the Same Goo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pp. 749-90.
- _____ and Laurence Kotlikoff, 1995, "Corporate Taxation and the Efficiency Gains of the 1986 Tax Reform Act," *Economic Theory* 6, pp. 51-81.
- Harberger, Arnold, 1962,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pp. 215-24.
- Harbereger, A. C., 1966, "Efficiency Effects of Income from Capital", *Effects of Corporation Income Tax*, ed. M. Krzyzaniak, Wayne State Univ. Press.
- _____, 1995, "The ABC's of Corporate Tax Incidence: Insights into the Open Economy Case," *Tax Policy and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
- Hines, James, Jr. and Eric Rice, 1994,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 pp. 149-82.
- King, M. A. and D. Fullerton (eds.), 1984,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U.K., Sweden and West German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4.
- Kotlikoff, Laurence and L. H. Summers, 1987, Tax Incidence,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edited by Alan J. Auerbach and Martin S. Feldstein, Amsterdam : North-Holland.
- Mutti, John and Harry Grubert, 1985,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an open Economy : The Importance of Resident-Nonresident Tax Trea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7, pp. 291-309.
- Sibert, Anne, 1990, "Taxing Capital in a Large Open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pp. 297-319.
- Slemrod, Joel, 1988, "Taxation With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Uneasy Compromise : Problems of a Hybrid Income-Consumption Tax*, edited by Henry J. Aaron, Harvey Galper, and Joseph A. Pechman,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 _____, 1995a, "Free Trade Taxation and Protectionist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 pp. 471-89.

_____, 1995b, "Professional Opinions About Tax Policy," *National Tax Journal*
48, pp. 121-47.

부록 A: KOCGE 방정식 체계

(A1)-(A26) 산업 i 의 세후 노동가격(after tax labor price)

$$P_{L_i}^* = P_L (1 + \tau_{L_i}) \quad i = 1, \dots, 26$$

(A27)-(A52) 산업 i 의 세후 자본가격(after tax capital price)

$$P_{K_i}^* = P_K \left(1 + \frac{\tau_{C_i}}{1 - \tau_{C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quad i = 1, \dots, 26$$

(A53)-(A78) 산업 i 의 부가가치 1단위 생산을 위한 노동 투입량

$$R_{L_i} = \Phi_i^{-1} \left[(1 - \delta_i) \left(\frac{\delta_i P_{K_i}^*}{(1 - \delta_i) P_{L_i}^*} \right)^{(1 - \sigma_i)} + \delta_i \right]^{\frac{\sigma_i}{1 - \sigma_i}} \quad i = 1, \dots, 26$$

(A79)-(A104) 산업 i 의 부가가치 1단위 생산을 위한 자본 투입량

$$R_{K_i} = \Phi_i^{-1} \left[\delta_i \left(\frac{(1 - \delta_i) P_{L_i}^*}{\delta_i P_{K_i}^*} \right)^{(1 - \sigma_i)} + (1 - \delta_i) \right]^{\frac{\sigma_i}{1 - \sigma_i}} \quad i = 1, \dots, 26$$

(A105)-(A130) 산업 i 의 부가가치(value-added)

$$V_i = P_{L_i}^* R_{L_i} + P_{K_i}^* R_{K_i} \quad i = 1, \dots, 26$$

$$V(26 \times 1) = \begin{bmatrix} V_1 \\ \vdots \\ V_{26} \end{bmatrix}$$

(A131)-(A156) 생산자 세전 가격(before tax producer price) 벡터

$$P = (I - A^T)^{-1} V$$

$$P(26 \times 1) = \begin{bmatrix} P_1 \\ \vdots \\ P_{26} \end{bmatrix}$$

단, A 는 (26×26) 투입산출 계수행렬

(A157)-(A182) 산업 i 의 세후 생산자 가격

$$P_i^* = P_i [1 + \tau_{vi} [(1 - a_{vi}) enc_i + ec_i]]$$

단, τ_{vi} = 부가가치세율, a_{vi} = 조세 회피율

$$a_{vi} = \frac{V_i}{Q_i} - \text{국제청 부가가치율} \quad i = 1, \dots, 26$$

(A183)-(A191) 재화 m 의 세전 소비자 가격(before tax consumer price)

$$P_m = \sum_{i=1}^{26} z_{im} P_i^* \quad m = 1, \dots, 9$$

단, z_{im} 은 변환행렬 Z 의 (i, m) 원소

(A192)-(A200) 재화 m 의 세후 소비자 가격(after tax consumer price)

$$P_m^* = P_m (1 + \tau_m) \quad \text{여기서 } \tau_m \text{ 은 특소세임.}$$

$$m = 1, \dots, 9$$

(A201) 저축 가격(price of saving)

$$P_s = \sum_{i=1}^{26} Z_{im} P_i^* \quad \text{단, } m = 10$$

(A202)-(A211) 가계 j 의 구성소비재 가격(price of composite consumption good)

$$\bar{P}_j = \prod_{m=1}^9 \left(\frac{P_m^*}{\lambda_{mj}} \right)^{\lambda_{mj}} \quad j = 1, \dots, 10$$

(A212)-(A221) 가계 j 의 여가가격(price of leisure)

$$P_{l_j}^* = P_L (1 - \tau_j) \quad j = 1, \dots, 10$$

$$P_l^* = P_L (1 - \bar{\tau})$$

(A222)-(A231) 가계 j 의 현재소비 가격(price of present consumption)

$$P_{H_j} = [(1 - \beta_j) \bar{P}_j^{(1 - \sigma_j)} + \beta_j P_{l_j}^{*(1 - \sigma_j)}]^{\frac{1}{(1 - \sigma_j)}} \quad j = 1, \dots, 10$$

(A232)-(A241) 가계 j 의 총 소득(full income)

$$I_j = (R - G) d_j - B_j + E_j P_L (1 - \tau_j) + K_j P_K [1 - \tau_j (1 - a_{ij})] \quad j = 1, \dots, 10$$

단, $G = Q^{FIG}$ (정부 고정자본형성) + Q^{FG} (정부소비지출) \Rightarrow 外生

(A242)-(A251) 가계 j 의 저축과 미래소비

$$S_j = \frac{\bar{P}_j}{\gamma P_K} C_{F_j}$$

$$C_{F_j} = \frac{(1 - \alpha_j) I_j}{\left(\frac{P_S P}{P_K \gamma}\right)^{\sigma_{2j}} \Delta_{2j}} \quad j = 1, \dots, 10$$

$$\text{여기서 } \Delta_{2j} = \alpha_j (P_{H_j})^{(1 - \sigma_{2j})} + (1 - \alpha_j) \left(\frac{P_S \bar{P}_j}{P_K \gamma}\right)^{(1 - \sigma_{2j})}$$

(A252)-(A261) 여가 수요(leisure demand)

$$l_j = \frac{\beta_j (I_j - P_S S_j)}{(P_{l_j}^*)^{\sigma_{1j}} \Delta_{1j}} \quad j = 1, \dots, 10$$

$$\text{단, } \Delta_{1j} = (1 - \beta_j) (\bar{P}_j)^{(1 - \sigma_{1j})} + \beta_j P_{l_j}^*{}^{(1 - \sigma_{1j})}$$

(A262)-(A351) 가계 j 의 소비재 m 에 대한 수요

$$X_{mj}^D = \frac{\lambda_{mj} (I_j - P_S S_j - P_{l_j}^* l_j)}{P_m^*}, \quad m = 1, \dots, 9, \quad j = 1, \dots, 10$$

(A352)-(A360) 소비재 m 에 대한 총수요

$$X_m^D = \sum_{j=1}^{10} X_{mj}^D \quad m = 1, \dots, 9$$

(A361) 총저축

$$S_h = \sum_{j=1}^{10} P_S S_j$$

(A362)-(A370) 소비재 m 의 시장균형조건

$$X_m^S = X_m^D \quad m = 1, \dots, 9$$

(A371)-(A396) 생산재로 표시된 최종 소비에 대한 수요

(final consumption demand in terms of producer good)

$$Q_i^{FC} = \left(\sum_{m=1}^9 Z_{im} X_m^S \right) P_i \quad i = 1, \dots, 26$$

$$\text{주: } Q^{FC} = \sum_{i=1}^{26} Q_i^{FC}$$

(A397)-(A422) 기업부문에 의한 최종 투자 수요

(final investment demand by business sector)

생산재로 표시된 가계 저축과 동일함.

(≡household savings in terms of producer good)

$$Q_i^{FIH} = Z_{i10} S_H \quad i = 1, \dots, 26$$

(A423)-(A448) 산업 i 의 최종 총투자 (= 순투자 + 감가상각 + 재고투자 변화분)

final gross investment(=net investment + depreciation + inventory changes)

$$Q_i^{FI} = Q_i^{FIH} + Q_i^{FIC} + Q_i^{FIG} + D_i + IV_i$$

$$\text{주: } Q_i^{FIC} = S_{C_i}(\text{법인저축}) \Rightarrow \text{外生} \quad i = 1, \dots, 26$$

$$Q_i^{FIG} = S_{G_i}(\text{정부저축}) \Rightarrow \text{外生}$$

$$IV_i = 0$$

(A449)-(A474) 총산출고 벡터(total output vector)

$$Q = (I - A)^{-1} (Q^{FC} + Q^{FI} + Q^{FG} + Q^{FX})$$

$$\text{주: } Q^{FG} = \text{government consumption (정부소비지출)} \Rightarrow \text{外生}$$

$$Q^{FX} = \text{net export (순수출)} \equiv X(\text{수출}) - M(\text{수입}) \Rightarrow \text{外生} = 0$$

$$i = 1, \dots, 26$$

(A475)-(A500) 산업 i 부가가치 (value-added by industry)

$$VA_i = Q_i \cdot var_i$$

$$i = 1, \dots, 26$$

$$\text{단, } var_i \equiv \frac{VA_i}{Q_i} \Rightarrow \text{外生}$$

(A501)-(A526) 산업 i 의 노동수요(Labor demand in industry I)

$$\begin{aligned}
L_i &= VA_i R_{L_i} & i = 1, \dots, 26 \\
&= VA_i \Phi_i^{-1} \left[(1 - \delta_i) \left(\frac{\delta_i P_{K_i}^*}{(1 - \delta_i) P_{L_i}^*} \right)^{(1 - \sigma_i)} + \delta_i \right]^{\frac{\sigma_i}{1 - \sigma_i}}
\end{aligned}$$

(A527)-(A552) 산업 i 의 자본수요(Capital demand in industry i)

$$\begin{aligned}
K_i &= VA_i R_{K_i} & i = 1, \dots, 26 \\
&= VA_i \Phi_i^{-1} \left[\delta_i \left(\frac{(1 - \delta_i) P_{L_i}^*}{\delta_i P_{K_i}^*} \right)^{(1 - \sigma_i)} + (1 - \delta_i) \right]^{\frac{\sigma_i}{1 - \sigma_i}}
\end{aligned}$$

(A553)-(A562) 가계 j 의 노동공급(labor supply)

$$L_j = E_j - l_j \quad j = 1, \dots, 10$$

(A563) 노동시장 균형조건(labor market equilibrium condition)

$$\sum_{i=1}^{26} L_i - \sum_{j=1}^{10} L_j = 0$$

(A564) 자본시장 균형조건(capital market equilibrium condition)

$$\sum_{i=1}^{26} (K_i - D_i) - \sum_{i=1}^{26} Q_i^{FIC} - \sum_{j=1}^{10} K_j = 0$$

(A565) 정부 예산 균형조건(government balanced budget condition)

$$\begin{aligned}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sum_{i=1}^{26} \left(\tau_{L_i} P_L L_i + \frac{\tau_{C_i}}{1 - \tau_{C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R = 0
\end{aligned}$$

단, G (정부지출) = Q^{FG} (정부투자지출) + Q^{FG} (정부소비지출) \Rightarrow 外生

$$B_j = SST_j \text{ (Social Security Tax)}$$

$$\tau_{vi}^* = \tau_{vi} \cdot (1 - a_{vi}) enc_i + ec_i$$

$$d_j = \frac{SSB_j}{\sum SSB_j}$$

변수명 설정

<내생변수>

- (1)-(26) $P_{L_i}^*$ (산업별 노동의 가격) $i = 1, \dots, 26$
 단, $P_L = PLAB$
- (27)-(52) $P_{K_i}^*$ (산업별 자본의 가격) $i = 1, \dots, 26$
 단, $P_K = PCAP$
- (53)-(78) R_{L_i} (i재 1단위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i = 1, \dots, 26$
- (79)-(104) R_{K_i} (i재 1단위생산에 필요한 자본량) $i = 1, \dots, 26$
- (105)-(130) V_i (부가가치액)
- (131)-(156) P (세전 생산재가격 벡터)
- (157)-(182) P_i^* (생산재가격) $i = 1, \dots, 26$
- (183)-(191) P_m (세전 최종소비재 가격) $m=1, \dots, 9$
- (192)-(200) P_m^* (세후 최종소비재 가격) $m=1, \dots, 9$
- (201) P_S (저축의 가격)
- (202)-(211) \bar{P}_j (가계별 구성소비재의 가격)
- (212)-(221) $P_{l_j}^*$ (여가의 가격) $j=1, \dots, 10$
- (222)-(231) P_{H_j} (현재소비의 가격)
- (232)-(241) I_j (총소득)
- (242)-(251) S_j (저축) $j = 1, \dots, 10$
 C_{F_j} (미래소비) $j = 1, \dots, 10$
- (252)-(261) l_j (여가) $j = 1, \dots, 10$
- (262)-(351) X_{mj}^D (소득계층별 최종소비재(9×10)) $j = 1, \dots, 10$ $m=1, \dots, 9$
- (352)-(360) X_m^D (소비재 m의 총수요)
- (361) S_h (총저축)
- (362)-(370) X_m^S (소비재 m의 총 공급)
- (371)-(396) Q_i^{FC} (i 산업의 법인 저축)
- (397)-(422) Q_i^{FH} (i 산업의 가계 저축)

(423)-(448)	Q_i^{FI} (i 산업의 총 투자)	
(449)-(474)	Q_i (i 산업의 생산량)	$i = 1, \dots, 26$
(475)-(500)	VA_i (i 산업의 부가가치)	
(501)-(526)	L_i (i 산업의 노동수요량)	
(527)-(552)	K_i (i 산업의 자본수요량)	
(553)-(562)	L_j (j그룹의 부존노동량 = 노동공급)	
(563)	P_L (노동의 가격)	
(564)	P_K (자본의 가격)	
(565)	R (정부의 조세수입)	

<파라미터>

-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α_j	CES생산함수에서 현재소비의 비중
σ_{1j}	소비재와 여가간의 대체탄력성
σ_{2j}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대체 탄력성
β_j	여가의 비중 또는 가중치
λ_{mj}	Cobb-Douglas 효용함수에서 저축재를 제외한 소비재의 가중치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σ_i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탄력성
ϕ_i	C. E. S. 생산함수의 정규화 파라미터
δ_i	노동과 자본의 합에서 노동의 비중

- 조세 부문

enc_i	i산업의 비법인부문 비율
---------	---------------

enc_i i산업의 법인비율 비중 = $(1 - enc_i)$ 로 처리

a_{vi} i산업의 조세회피율

τ_{vi} i산업의 유효부가가치세율

τ_{L_i} 근로소득세율

τ_{K_i} 자본소득세율

τ_{C_i} 법인세 세율

$KENC_i$ i산업 법인부문의 자본 비율

= i산업 법인부문 자본소득 / i산업 전체 자본소득

re_i i산업의 사내유보비율

= 사내유보액 / 법인부문 자본

τ_m 특별소비세율

τ_j 소득계층별 종합소득세율

$$\bar{\tau} = \frac{\sum_{j=1}^{10} \tau_j}{10}$$

<기타 외생 변수>

γ 자본재 가격 = '저축-투자'를 자본재로 전환시켜주는 고정된 상수
(모든 j에 대해 동일한 값을 적용) = 0.04

Z_{in} 생산소비변환 행렬 (26×10)

부록 B: 법인세 세율과 세후 자본가격의 관계

산업별 자본소득 과세(τ_{Ki})와 법인세(τ_{Ci})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자본소득(K_i)의 구성을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산업별 자본소득 과세 구조(KOCGE99 모형)

산업 i 총자본은 산업 i 자본(K_i)과 자본소득세(법인세: CIT_i)로 구성되어 있다.

$$(B1) \quad \text{산업 } i \text{ 총자본 } (1 + \tau_{Ki}) K_i = K_i \text{ (산업 } i \text{ 자본)} \\ + \\ CIT_i \text{ (산업 } i \text{ 자본소득세 납부액)}$$

주: 수는 모두 산업 합계를 나타낸다. 예로서 $\sum_{i=1}^{26} K_i = 105,792.066$

산업 i의 자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산업 i의 자본소득(K_i)이다. 자본소득세 세율(τ_{Ki})은 다음 식 (B2)와 같이 정의된다.

$$(B2) \quad \tau_{Ki} = \frac{CIT_i}{K_i} \quad \text{단, } CIT_i = \text{산업 } i \text{ 자본소득세(법인세) 납부액}$$

산업 i의 자본(K_i)은 산업 i 자본소득(CAP_i)과 산업 i 감가상각(D_i)으로 구성된다.

$$(B3) \quad K_i = CAP_i \text{ (산업 } i \text{ 자본소득)} \\ + \\ D_i \text{ (산업 } i \text{ 감가상각)}$$

산업 i의 자본소득(CAP_i)은 산업 i의 비법인부문(Non-Corporate Sector) 자본소득($NCCAP_i$)과 산업 i의 법인부문(Corporate Sector) 자본소득($CCAP_i$)으로 구성된다.

$$(B4) \quad CAP_i = NCCAP_i \text{ (비법인부문 자본소득)} \\ + \\ CCAP_i \text{ (법인부문 자본소득)}$$

산업 i의 법인부문 자본소득($CCAP_i$)은 산업 i의 사내유보(RE_i : Retained Earning)와 이자소득(INT_i), 임대소득($RENT_i$) 및 배당소득($DIVID_i$)으로 구성된다.

$$(B5) \quad CCAP_i = RE_i \text{ (사내유보)} \\ + INT_i \text{ (이자소득)} \\ + RENT_i \text{ (임대소득)} \\ + DIVD_i \text{ (배당)}$$

산업별 법인세 과세 구조

본 simulation의 목적은 조금 더 우리나라 현실의 법인세에 근접한 모형을 만들어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세전 자본소득이 되어야 할 것이다.

$$(B6) \quad \text{법인세 세율 } \tau_{Ci} = \frac{CIT_i}{TCCAP_i}$$

여기서 CIT_i = 산업 i의 법인세 납부액

$TCCAP_i$ = taxable corporate income(과세 대상 법인소득)

주: $TCCAP_i$ 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가정)

(가정 1) 식 (7)과 같이 산업 i의 자본(K_i)은 법인부문 자본과 비법인부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B7) \quad K_i = KNC_i \times K_i \quad \text{비법인부문 자본} \\ + KENC_i \times K_i \quad \text{법인부문 자본}$$

여기서

$$\begin{aligned} \text{(B8)} \quad KENC_i &= i \text{ 산업 법인부문의 자본 비중} \\ &= i \text{ 산업 법인부문 자본소득} / I \text{ 산업 전체 자본소득} \\ &= \frac{CCAP_i}{CAP_i} \end{aligned}$$

$$\begin{aligned} \text{(B9)} \quad KNC_i &= i \text{ 산업 비법인부문의 자본 비중} \\ &= i \text{ 산업 비법인부문 자본소득} / i \text{ 산업 전체 자본소득} \\ &= \frac{NCCAP_i}{CAP_i} \end{aligned}$$

당연히 다음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⁴³⁾

$$KENC_i + KNC_i = 1$$

(가정 2) 산업 i의 감가상각(D_i) 역시 비법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자본 비중과 비례하여 배분된다. 따라서 식 (B10)과 같이 산업 i의 총 감가상각은 법인부문 감가상각과 비법인부문 감가상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begin{aligned} \text{(B10)} \quad D_i &= KENC_i \times D_i + KNC_i \times D_i \\ \text{총 감가상각} &= \text{법인부문 감가상각} + \text{비법인부문 감가상각} \end{aligned}$$

그러면 산업 i의 총자본을 분해하여 보자. 산업 i의 총자본은 식 (B11)과 같이 산업 i의 자본(K_i)과 산업 i의 법인세 납부액(CIT_i)으로 구성되어 있다.

$$\begin{aligned} \text{(B11)} \quad \text{산업 } i \text{ 총자본} &= K_i \quad (\text{산업 } i \text{ 자본}) \\ &+ \\ &CIT_i \quad (\text{산업 } i \text{ 법인소득 과세}) \end{aligned}$$

비법인부문의 자본($KNC_i \times K_i$)과 법인부문 자본($KENC_i \times K_i$)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43) 최초 법인부문 비중(enc_i)은 부가가치 기준인데 반해 위는 자본 소득 기준이다.

$$(B12) \quad KNC_i \times K_i = NCCAP_i + KNC_i \times D_i$$

비법인부문 자본 = 비법인부문 자본소득 + 비법인부문 감가상각

$$(B13) \quad KENC_i \times K_i = CCAP_i + KENC_i \times D_i$$

법인부문 자본 = 법인부문 자본소득 + 법인부문 감가상각

다른 각도에서 법인부문의 자본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 법인소득과 비과세 대상 법인소득으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부문 자본 중 이자소득(INT_i), 임대소득($RENT_i$), 배당소득($DIVD_i$) 및 감가상각($KENC_i \times D_i$)은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사내유보(RE_i)는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은 세전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부액(CIT_i)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식 (B14)가 성립한다.

$$(B14) \quad \text{과세 대상 법인소득 } TCCAP_i = INT_i + RENT_i + DIVD_i + KENC_i \times D_i + CIT_i$$

$$(B15) \quad \text{비과세 대상 법인소득 } NTCCAP_i = RE_i \text{ (사내유보)}$$

여기서 법인부문 자본($KENC_i \times K_i$) 중에서 사내유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re_i 라고 정의하자. 즉,

$$(B16) \quad re_i = \frac{RE_i}{KENC_i \times K_i} \\ = \frac{RE_i}{CCAP_i + D_i \times KENC_i}$$

그러면 과세대상 법인소득($TCCAP_i$)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B17) \quad TCCAP_i = K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 CIT_i$$

식 (B17)을 식 (6)에 대입하면

$$(B18) \quad \begin{aligned} CIT_i &= \tau_{Ci} \times TCCAP_i \\ &= \tau_{Ci} \times (K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 CIT_i) \end{aligned}$$

식 (B18)을 CIT_i 에 관하여 풀면

$$(B19) \quad CIT_i = \frac{\tau_{Ci}}{1 - \tau_{Ci}} \times (K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결론적으로 법인세 세율은

$$(B20) \quad \tau_{Ci} = \frac{CIT_i}{TCCAP_i}$$

단, 여기서 CIT_i = 산업 i의 법인세 납부액,

$TCCAP_i$ = taxable corporate income(과세 대상 법인소득)

τ_{Ki} (산업별 자본소득 과세)와 τ_{Ci} (산업별 법인소득 과세)의 관계

두 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요약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자본소득 과세의 과세대상은 산업 i의 자본(K_i)인데 반해, 산업별 법인소득의 과세대상은 산업 i의 과세대상 법인소득($TCCAP_i$)이다.

식 (B2)와 식 (B19)로부터 식 (B21)을 구할 수 있다.

$$(B21) \quad \tau_{Ki} \times K_i = CIT_i = \frac{\tau_{Ci}}{1 - \tau_{Ci}} \times (K_i \times KENC_i \times (1 - re_i))$$

식 (B21)로부터

$$(B22a) \quad \tau_{Ki} = \frac{\tau_{Ci}}{1 - \tau_{Ci}} \times KENC_i \times (1 - re_i)$$

혹은

$$(B22b) \quad \tau_{Ci} = \frac{\tau_{Ki}}{KENC_i \times (1 - re_i) + \tau_{Ki}}$$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별 자본과세 세율(τ_{Kj})로부터 법인세 세율(τ_{Ci})을 추계한 다음 분석을 하여야 될 것이다.

$KENC_i$ (= i산업 법인부문의 자본 비중)과 re_i (법인부문 자본소득($CCAP$) 중에서 사내유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는 본문에 제공되어 있는 바와 같다.

원래 방정식 체계에서 바뀌는 것은 식 (27)-(52)과 정부예산식 (565)가 될 것이다.

원래 KOCGE 방정식 (27)-(52) $P^*_{Ki} = P_K (1 + \tau_{Ki})$

새로운 방정식 (27)-(52)

$$P^*_{Ki} = P_K \left(1 + \frac{\tau_{Ci}}{1 - \tau_{Ci}}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따라서 정부의 균형예산식도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새로운 방정식 (565)

$$\begin{aligned} & \sum_{j=1}^{10} [B_j + \tau_j P_L L_j + \tau_j (1 - a_{ij}) P_K K_j] + \sum_{m=1}^9 \left(\sum_{j=1}^{10} \tau_m P_m X_{mj} \right) \\ & + \sum_{m=1}^9 \left[\left(\sum_{i=1}^{26} Z_{im} P_i \tau_{vi}^* \right) \left(\sum_{j=1}^{10} X_{mj} \right) \right] \\ & + \sum_{i=1}^{26} \left(\tau_{Li} P_L L_i + \frac{\tau_{Ci}}{1 - \tau_{Ci}} \times KENC_i \times (1 - re_i) P_K K_i \right) \\ & - R = 0 \end{aligned}$$

Abstract

Reform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ation: using the KOCGE Model

Insill Yi, Sung Tai Kim, Chong-Bum An, and SangDon Lee

Globalization of economic environment has accelerated the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n particular, globalization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makes major countries lower the statutory tax rate on capital income, in order to induce capital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Reform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is becoming one of the key subjects to raise the national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Korea, there are tax reform efforts relating to corporate income taxation to meet the international trends several times. The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has been lowered. The various reductions and exemptions relating to corporate income taxation have been consolidated. Howev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system has been outdated, compared with fast mov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ight direction of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reform.

The discussions on Korean corporate income tax reform have been lop-sided to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ax reform appropriateness. There are not much studies explaining how corporate income tax affects the income distribution by classes and production in each industry. Using the Kore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KOCGE) model, we try to analyze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on the production in 25 industries respectively and over all and on the welfare of the economy.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KOCGE model, Korean corporate income tax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strengthen the tax base and constitution of Korean economy. One of the way to improve the welfare and efficiency of the economy is to lower the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reduce the government expenditure simultaneously, under the equal

tax revenue constraints. Korean government lowered the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by 1%p in 2001. However, our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re still be a room to lower an extra 4~5% of the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to improve both efficiency and income distribution.